

환경서비스부문 주요 교역국의 양허현황 조사연구

2002년 5월

연구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 경 부

제 출 문

환경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용역과제인 「환경서비스부문 주요 교역국의 양허현황 조사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2년 5월

연구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책임자 : 강상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참여자 : 최대승(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 장 윤 서 성

<목 차>

[연구결과요약]	vi
----------------	----

I. WTO 환경서비스협상 동향 1

1. GATS 환경서비스협상 개요	1
1.1 협상 동향(2000-2001)	1
1.2 2002년 제1차 CTE 회의 및 제12차 GATS 환경서비스협상	2
1.3 UR-GATS 환경서비스 양허현황	3
1.4 우리나라 양허현황 및 협상대응 입장	6
2. 주요국 협상제안 분석	8
2.1 협상범위	9
2.2 양허제안	10
2.3 환경서비스 교역장벽 예시	10
2.4 각국 시장개방 지지논거	11
2.5 제안내용의 평가	13

II. 세계 환경시장 현황 및 서비스 교역장벽 15

1. 세계 환경서비스시장 동향	15
1.1 세계 환경시장 개황	15
1.2 주요 지역시장 현황	19
2. 유형별 환경서비스 교역 장벽	26
2.1 국경간 공급과 해외소비 규제	26
2.2 법인설립과 외국인 투자 규제	29

2.3 서비스 공급자의 입국과 일시적 체류 규제	31
2.4 서비스 공급자의 국적 및 거주지 관련 제한	33
2.5 사업자와 전문서비스 공급자의 등록·면허 관련 규제	36
2.6 독점과 배타적 공급에 의한 규제	37
2.7 정부 보조금 지급에 의한 차별	38
2.8 토지 소유 및 기타 규제	39
III. 주요국별 환경규제 및 제도적 진입장벽	41
1. 미국	41
1.1 환경관련 규제	41
1.2 투자진출상의 제한	43
1.3 정부조달 시장의 장벽	44
2. 캐나다	45
2.1 환경관련 규제	45
2.2 투자진출상의 제한	47
2.3 정부조달 시장의 장벽	50
3. EU	51
3.1 환경관련 규제	51
3.2 투자진출상의 제한	55
3.3 정부조달 시장의 장벽	56
4. 스위스	58
4.1 환경관련 규제	58
4.2 투자진출상의 제한	59
4.3 정부조달 시장의 장벽	60
5 일본	61

5.1 환경관련 규제	61
5.2 투자진출상의 제한	61
5.3 정부조달 시장의 장벽	61
6. 중국	62
6.1 환경관련 규제	62
6.2 투자진출상의 제한	63
6.3 정부조달 시장의 장벽	64
7. 태국	65
7.1 환경관련 규제	65
7.2 투자진출상의 제한	67
7.3 정부조달 시장의 장벽	68
8. 인도네시아	71
8.1 환경관련 규제	71
8.2 투자진출상의 제한	71
8.3 정부조달 시장의 장벽	72
9. 말레이시아	75
9.1 투자진출상의 제한	75
9.2 정부조달 시장의 장벽	76
10. 필리핀	78
10.1 환경관련 규제	78
10.2 투자진출상의 제한	78
10.3 정부조달 시장의 장벽	80
11. 싱가포르	82
11.1 환경관련규제	82
11.2 투자진출상의 제한	82

11.3 정부조달 시장의 장벽	83
12. 멕시코	85
12.1 환경관련 규제	85
12.2 투자진출상의 제한	85
12.3 정부조달 시장의 장벽	86
13. 브라질	87
13.1 환경관련규제	87
13.2 투자진출상의 제한	87
13.3 정부조달 시장의 장벽	88
14. 폴란드	89
14.1 환경관련규제	89
14.2 투자진출상의 제한	89
14.3 정부조달 시장의 장벽	91
 IV. 결론	 93
 [참고문헌]	 96
 <부록 1> 1차 환경서비스 시장개방요구서 (국문시안)	 99
<부록 2> 1차 환경서비스 시장개방요구서 (영문시안)	107
<부록 3> 주요국 환경서비스 양허 현황	110
<부록 4> 주요국 수평 양허 현황	133

[표 차례]

<표 I-1> 서비스협상 가이드라인 요지	2
<표 I-2> UR-GATS 양허현황 종합(1999년 기준, 40개국 대상)	5
<표 I-3> 우리나라 UR 환경서비스 양허계획	7
<표 I-4> DDA 환경협상대책단 구성도	8
<표 I-5> 각국 제안 협상범위	9
<표 I-6> 각국 양허제안	10
<표 I-7> 각국 예시 진입장벽	11
<표 II-1> 지역 및 부문별 세계 환경서비스시장 규모(단위: 십억 US\$) ...	16
<표 II-2> 주요국 환경시장 발전단계비교	17
<표 II-3> 주요국 환경산업 무역수지(1992기준, 백만 US\$)	18
<표 II-4> 서유럽 환경시장의 매체별 성장추세 (단위: 10억(US\$), %) ...	21
<표 II-5> 동아시아 주요국 경제 및 환경시장 현황 비교	22
<표 II-6> 동아시아 환경시장의 국별, 부문별 구성 및 성장을	24
<표 II-7> 환경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에 대한 양허현황 분석(I)	28
<표 II-8> 환경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에 대한 양허현황 분석(II)	29
<표 II-9> 법인설립 및 외국인 투자관련 양허현황(I)	30
<표 II-10> 법인설립 및 외국인 투자관련 양허현황(II)	31
<표 II-11> 자연인 이동과 체류에 대한 양허 현황	33
<표 II-12> 국별 보조금 관련 스케줄 내용	38
<표 II-13> 유형별 외국인의 상업용 토지취득 제한	39
<표 III-1> 중국 정부조달시장 및 관리부문	65

[연구결과 요약]

1. 연구목적

- 2단계(2001.4-2002.3) 환경서비스협상 관련 주요국 협상제안서 검토 및 정부대응 입장 검토
- 주요 교역국 환경서비스 양허현황 및 유형별, 국별 시장진입 장벽 조사
- WTO 서비스이사회 특별회의 제출을 위한 환경서비스 시장개방요구서안 작성
- 2단계 환경서비스 협상의제 검토 및 정부대표단 지원
- 후속 추진과제 발굴

2. 연구기간

- 2001.11 ~ 2002.5

3. 연구배경

- 2000년 1월 이후 우르과이라운드 후속 서비스협상 일정(Built In Agenda)에 따라 환경서비스 시장의 추가적 개방에 대한 협상이 WTO 서비스이사회 산하 특별양허위원회(CSC)와 이사회 특별회의(special session)를 중심으로 진행중임.
- 2001년 3월까지의 1단계 협상에서 환경서비스 분류문제를 논의하고 서비스 협상 가이드라인 채택 및 2단계(2001.5~2003.3)협상계획 합의.
- 2002년 5월 현재 진행중인 2단계 협상에서 협상범위, 방식 등 기본 협상 틀에 대하여 미국, EC, 캐나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이 제출한 협상제안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중이며, 2002년 11월 WTO 제4차각료선언(도하개발아젠다:DDA)의 세부 협상일정은 2002년 6월 30일로 1차시장개방제안서를 제출토록 결정.
- 2단계 양허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동 협상을 국내 환경산업의 대외 진출여건 개선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주요국가를 대상으로 시장개방 현황을 분석하는 등, 해당국 환경시장의 제도적 진입장벽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게 됨.

4. 선행 및 후속연구와의 관계

- 우르과이라운드(UR) 후속 환경서비스 협상과 관련하여 1999년 이후 2차례의 선행 연구가 수행되었는 바, 1999년 “환경보호목적의 무역규제에 대한 대응방안 조사연구(1999)”에서는 환경서비스 협상을 포함한 뉴라운드 예상 의제에 대한 종합검토, 뉴라운드 환경서비스 협상관련 예상의제 검토 및 후속 추진과제를 점검하였음.
- “환경서비스 시장개방 확대의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2000)”에 대한 연구에서는 1단계 환경서비스 협상에 대한 대책수립을 위해 환경서비스 분류체계 개정에 대한 선진국들의 입장을 분석하고, 분류체계 개선 및 현안 환경서비스 협상에 대한 기본 대응입장과 국내외 환경시장 현황 및 대외진출 가능성 등을 중점 검토함.
- 본 연구는 상기 선행연구의 후속사업으로 시장개방요구서 및 시장개방제안서를 마련해야 하는 2단계 환경서비스 협상의 전반부인 시장개방요구서 준비를 위한 협상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됨.
- 후속 조사연구 작업은 2003년 3월로 예정된 시장개방제안서 작성과 제출된 시장개방요구서를 중심으로 전개될 양자 및 다자간 환경서비스 협상대책 수립·시행에 집중되어야 함.

5. 주요 연구내용

○ 환경서비스 협상동향

- 1994년 우르과이라운드(UR) 서비스협상에서의 합의에 따라 환경서비스를 포함한 12개 서비스 부문에 대한 후속 시장개방 협상이 2000년 1월부터 재개됨.
- 2001년 3월 제7차 회의까지 1단계 협상작업은 서비스이사회 특별양허위원회(CSC) 소관으로 진행됨.
- 1단계 협상에서 논의된 환경서비스 분류체계 개선 논의(2000.2 ~ 2001.3)에서는

EU를 비롯한 선진국(스위스, 캐나다, 호주)의 분류확대 주장과 인도 등 개도국 대부분의 반대입장이 대립됨.

- 이후 논의에서 환경서비스 협상은 EU 제안 7개 핵심서비스 분류목록을 고려한 핵심서비스부문에 한정하고, 연관서비스 부문에 대한 협상과 양허는 해당서비스 분야 협상에서 정한다는 합의가 도출됨.
- 제7차 서비스협상(2001. 3.28 ~ 30)에서 협상가이드라인이 채택됨으로써, 더 높은 수준의 환경서비스 교역자유화와 이에 대한 개도국 입장이 폭넓게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등 본격적인 서비스 협상의 기초가 마련됨.
- 2001년 5월 개최된 제8차 회의부터는 2단계 협상으로 서비스이사회 특별회의소 관하에 각국 협상제안서에 대한 토의가 진행중임.
-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WTO 제4차 각료회의 선언 도하개발아젠다(DDA)는 환경협상 의제를 다수 상정하였으며, 환경서비스 협상에 관련된 1차 서비스시장 개방요구서(request list) 제출시한을 2002년 6월 30일로 정하고, 이에 대한 1차 개방제안서(offer list)를 2003년 3월 31일까지 제출토록 함.

○ 주요국 양허현황 종합

- 1994년 종결된 우르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제한된 부분의 환경서비스에 대한 소수의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 양허가 이루어져, 서비스 일반의 교역에 대한 진입 규제를 의미하는 수평적 무역장벽과 환경서비스 부문에 한정된 서비스 교역 장벽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 총 48개 WTO 회원국들이 4개 서비스공급방식(modes of supply)의 각각에 대해서 폐수, 폐기물처리, 위생 및 유사 서비스, 기타 환경서비스 등 1개 이상의 환경서비스항목을 양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대부분의 양허계획서에서 확인되는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에 적용되는 주요 조건이나 제한으로는, 폐수, 폐기물처리, 위생서비스 공급자의 임시이동 등 국경간 공급의 제한, 현지 주재법인 설립에 따르는 제한, 영업면허요건(operating license requirements)을 통한 규제, 특정 서비스부문에 대한 정부독점의 허용, 서비스공급자에 대한 국적과 거주지 요건 등이 있음.

○ 우리나라 대응현황

- 우리나라는 UR 협상 당시 “산업폐수 수탁처리”, “산업폐기물 수집처리”, “배기 가스정화 및 소음방지”, “환경영향평가서비스” 등 4개 업종을 개방한 바 있음.
- UR 환경서비스 시장개방에도 불구하고 국내 민간 환경서비스 시장수익 기반의 불확실성과 영세성으로 인하여 그 파급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됨.
- 국내 시장에 대한 외국 기업의 진출은 국내 기존 서비스 공급업체와의 기술계약 등을 통한 수직적인 분업구조 분담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를 기반으로 한 주변국가로의 우회진출 가능성을 염두에 둔 진출 노력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2000년 개시된 1단계 환경서비스협상에서 우리나라는 UR 당시 사용된 GATS 환경서비스 분류체계의 개선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을 견지하였으나, 협상의 효율적 진행과 기존 양허계획 이행과 후속 협상결과 간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환경서비스 협상은 환경핵심서비스 항목에 국한하되, 환경연관서비스 목록을 관련 서비스협상에 참조자료(check list)로 활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함.
- 2단계 협상에서도 환경서비스 개방이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므로 추가적 자유화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추가적인 시장개방에 적극적인 협상입장을 정립한 가운데, 각 국의 상이한 발전정도 및 민영화 수준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환경서비스의 공공성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전략적 유연성을 함께 견지하고 있음.
- 1단계 서비스협상을 기점으로 환경서비스 협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연구기관, 학계전문가가 참여하는 “환경서비스협상대책반”을 구성하고, 관련 협상에 참여하면서 필요한 조사연구 및 정책대응 방안을 수립·시행중에 있음.
- 2002년 1월 도하라운드 출범 이후에는 정부 유관부처 및 기 운영중인 “환경·무역연계대책협의회”와 “환경서비스 협상대책반”을 통합한 “DDA 환경협상대책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음.

○ 1차 시장개방요구 시안 작성

- 2단계 협상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본 연구는 주요 선진국 및 향후 교역 대상국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개발도상국의 환경규제 현황 및 제도적 시장진입 장벽의 조사분석에 초점을 두어 진행되었으며, 그 최종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환경서비스 부문에 대한 1차 시장개방요구시안을 작성함(부록 1참조).

- UR 서비스협상에서 환경서비스 부문이 중요한 협상대상으로 부각되지 않았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진행 중인 후속서비스 협상에서도 환경서비스 부문은 협상 당사국의 참여한 이해관계가 대립되어있는 당면문제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음.
- 이는 선진국 환경서비스 시장의 경우 민간부문의 역할이 50%에 이를 정도의 상당한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나, 시장자체는 성숙단계 도달해 있어 잘 짜여진 수직분업 체계를 구성하고 있고, 또 대부분 개방상태에 있어 추가적인 협상 쟁점을 내포하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됨.
- 개도국의 경우에도 아직 필요한 환경규제가 일정 수준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고, 관련 시장 또한 형성단계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자세히 분화되어 있지 않아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시장활동 영역이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환경서비스 시장에 대한 양허계획을 제시할 수 없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
- 현재 진행 중인 환경서비스 협상의 주된 목표가 일차적으로 선진국 시장에 잔존하는 일부 진입장벽 특히 자연인인 환경서비스 공급자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제약의 제거가 될 수 있으나, 이는 해당국가의 이민제도 등, 비 상업적인 영역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호혜적 입장에서 시장진입 제약을 추구해야 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이 있음.
- 결국, 이번 협상의 주된 목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형성단계에 있는 개발도상국 환경서비스 시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제도적 진입장벽의 선제적 감축에 두어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동아시아 개도국 환경시장을 1차 시장개방요구서 작성 대상국으로 선정함.
- 부록에 제시될 시장개방 양허요구 시안작성을 위해 먼저 진행중인 협상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국내 관련부문에 전파하고 협상대책 관련 산업계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한다는 입장에서 관련 업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협상동향 및 조사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시장개방요구서 작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함.
- 2002년 1월 이후, 본 조사연구 수행 및 협상대책논의를 위해 협상 대책협의회(2002.1.31, 2002.5.9)와 관련 업체 간담회(2002.3.15, 2002.4.29)가 각 2회 씩 개최

- 되었음. 본 연구결과 도출된 환경서비스 시장개방요구 시안은 세부협상에 참여하는 소관부처 협의(2002.5.21)를 거쳐 관련 협상기구에 제출될 예정임.
- 이 과정에서 금번 서비스협상을 국내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기회로 활용한다는 기본 대응방침이 정리되었고, 이를 위해 관계부처, 연구기관, 업계, NGO 등이 참여하고 있는 “DDA환경협상대책단” 활동을 활성화하며 필요한 적극적인 대외 협력 사업을 전개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됨.
 - 중국을 포함한 9개 동아시아 국가(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를 대상으로 작성한 시장개방요구서안 작성 원칙에 있어 개방요구서 작성 기준이 되는 환경서비스 분류체계의 경우 EC 환경핵심 서비스 항목의 이용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었으므로, UN 서비스 협상당시 사용된 협상문서(W/120) 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세부분류 항목들 가운데 W/120 A항의 폐수, B항 폐기물, C항 위생 및 유사서비스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환경서비스 항목은 W/120 D항 기타 환경서비스부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함.
 - 1차 시장개방요구 대상국가의 선정은 먼저 선진국 환경시장이 세계시장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나 이미 포화상태에 있다는 점, 총 점유율이 7% 미만인 개도국시장의 경우 그 성장성이 연평균 10-15% 내외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타 지정학적인 인접성을 고려하여 동아시아 일부 개도국에 한정함.
 - 여기에는 또한 전반적으로 국내 환경산업의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60-70% 수준이나 핵심부문의 해외 의존도는 여전히 심한 것으로 나타난 국내 환경서비스산업의 대외 경쟁력 및 해외진출 가능성에 대한 고려도 포함됨.
 - 9개 시장개방요구서 대상국가의 수는 실질적인 양자간 양허협상 진행 여력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결정함.
 - 9개국에 대하여 작성한 시장개방 요구서의 내용은 다음의 표에 요약 정리함.

○ 1차 시장개방요구안 요약

양허영역	중국	홍콩	인도
수평적 양허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 형태 제한, 외국인 지분 참여한도, 외국기업의 지사설립불허제한과 대표사무소 활동제한 의 폐지		차별적인 법인세의 철폐
1.사업서비스 A.전문직서비스 d. 건축 (CPC 8671)	- Mode 1: MA ⇒개방폭 확대 - Mode 3: NT ⇒전면 개방(none) - AC ⇒ 외국 건축사도 공동업무수행 가능하도록 개방 - 기타 장벽 ⇒건축사 자격취득의 국적제한 폐지	- Mode 1 : MA ⇒개방 - Mode 1 : NT ⇒전면 개방(none) - Mode 2, 3 : MA, NT ⇒전면 개방(none) - Mode 4 : MA, NT ⇒수평적 양허에 명기된 내용 개방 - AC ⇒ 외국 건축사도 공동업무수행 가능하도록 개방	- Mode 1 : MA ⇒개방 - Mode 1 : NT ⇒전면 개방(none) - Mode 2, 3 : MA, NT ⇒전면 개방(none) - Mode 4 : MA, NT ⇒수평적 양허에 명기된 내용 개방 - AC ⇒ 외국 건축사도 공동업무수행 가능하도록 개방
e.엔지니어링(CPC 8672)	- Mode 1 : MA ⇒ 전면 개방(none) - Mode 3 : NT ⇒ 전면 개방(none) - 기타사항 : 관련 자격취득에 있어 국적·거주 제한이 있을 경우 폐지	- Mode 1, 2, 3 : MA, NT ⇒ 전면 개방(none) - Mode 4 : MA, NT - 수평적 양허에 명기된 내용 개방	- Mode 1,2 : MA, NT ⇒ 전면 개방(none) - Mode 3 : MA ⇒지분상한 제한 삭제
f.통합엔지니어링(CPC 8673)	(CPC 8672와 동일)	(CPC 8672와 동일)	- Mode 1, 2, 3 : MA, NT - 전면 개방(none) - Mode 4 : MA, NT - 수평적 양허에 명기된 내용 개방
g.도시계획 및 조경(CPC 8674)	- Mode 1 : MA ⇒ 전면 개방(none) - Mode 3 : NT ⇒ 전면 개방(none) - 기타사항 : 관련 자격취득에 있어 국적·거주 제한이 있을 경우 폐지	- Mode 1, 2, 3 : MA, NT ⇒ 전면 개방(none) - Mode 4 : MA, NT - 수평적 양허에 명기된 내용 개방	- Mode 1, 2, 3 : MA, NT ⇒ 전면 개방(none) - Mode 4 : MA, NT - 수평적 양허에 명기된 내용 개방
F. 기타사업서비스 t. 기타	환경관련 컨설팅분야에 대한 mode 1, 2, 3를 none으로 양허	환경관련 컨설팅분야에 대한 mode 1, 2, 3를 none으로 양허	환경관련 컨설팅분야에 대한 mode 1, 2, 3를 none으로 양허
3. 건설서비스 (CPC 511~518)	- Mode 3 : MA ⇒ 전면 개방(none) - 기타장벽 ⇒ 입찰관련 차별 폐지	CPC 511~517에 대하여 - Mode 2, 3 : MA, NT ⇒ 전면 개방(none) - Mode 4 : MA, NT ⇒수평적 양허에 명기된 내용 개방	CPC 511~517에 대하여 (홍콩과 동일한 수준의 개방) 기타장벽 : 외국업체 지사설립이 제한 등 3개 제한사항의 폐지
6. 환경서비스	W/120 상 환경서비스 A, B, C, D 전 분야에 대한 mode 1(국경간 공급), mode 3(상업적 주재)를 none으로 양허	W/120 상 환경서비스 A, B, C, D 전분야, 공급양식 1, 2, 3에 대하여 none으로 양허	W/120 상 환경서비스 A, B, C, D 전분야, 공급양식 1, 2, 3에 대하여 none으로 양허

양허영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수평적 양허	- Mode3의 NT ⇒ 토지 취득에 대한 제한 삭제 - Mode3의 NT ⇒ '일정자격'에 대한 구체적 기술 - 외국인 단독투자의 허용	- Mode 3 : NT ⇒ 토지 취득의 제한 삭제 -bumiputera정책에 의거한 내국민 우대 조치 구체화 -정부조달시 내국민 우대 조치의 범위 구체화	Mode 3 : NT ⇒ 토지 취득의 제한 사항 삭제
1.사업서비스 A.전문직서비스 d. 건축 (CPC 8671)	- Mode 1 : MA ⇒ 개방 - Mode 1, 2 : NT ⇒ 전면 개방(none) - Mode 3 : MA, NT ⇒전면 개방(none) - Mode 4 : MA, NT ⇒수평적 양허에 명기된 내용 개방 - AC ⇒ 외국건축사도 자국건축사와 공동으로 업무수행 가능하도록 개방	- Mode 1, 2 : NT ⇒ 전면 개방(none) - Mode 3 : MA ⇒ 전면 개방(none) - Mode 4 : MA ⇒ 제한 삭제 - AC ⇒외국건축사도 자국건축사와 공동으로 업무수행 가능하도록 개방 - 기타장벽 ⇒건축사 등록에 있어 시민권 또는 영주권 소지 의무 폐지	- Mode 1 : MA ⇒ 개방 - Mode 1 : NT ⇒ 전면 개방(none) - Mode 2, 3 : MA, NT ⇒ 전면 개방(none) - Mode 4 : MA, NT ⇒ 수평적 양허사항에 명기된 내용 개방 - AC ⇒ 외국건축사도 자국건축사와 공동으로 업무수행 가능하도록 개방
e.엔지니어링 (CPC 8672)	CPC 8672 전분야에 대하여 - Mode 1, 2, 3 : MA, NT ⇒전면 개방(none) - Mode 4 : MA, NT -수평적 양허에 명기된 내용 개방	- Mode 1, 2 : NT ⇒ 인증 제한 삭제 - Mode 3 : MA ⇒ 제한 삭제	CPC 8672 전분야에 대하여 - Mode 1, 2, 3 : MA, NT ⇒ 전면 개방(none) - Mode 4 : MA, NT ⇒ 수평적 양허사항에 명기된 내용 개방
f.통합엔지니어링(CPC 8673)	- Mode 1, 2 : MA, NT ⇒ 전면 개방(none) - Mode 2 : NT ⇒ 전면 개방(none) - Mode 3 : MA, NT ⇒설립형태 제한 삭제	- Mode 1, 2 : NA ⇒ 인증 제한 삭제 - Mode 3 : MA ⇒ 주체 제한 삭제	- Mode 1, 2 : MA, NT ⇒ 전면 개방(none) - Mode 3 : MA ⇒ 합작형태 제한 삭제 - Mode 4 : NT ⇒ 수평적 양허에 명기된 내용 개방
g.도시계획 및 조경(CPC 8674)	- Mode 1, 2, 3 : MA, NT ⇒ 전면 개방(none) - Mode 4 : MA, NT ⇒ 수평적 양허에 명기된 내용 개방	- Mode 1, 2, 3 : MA, NT ⇒ 전면 개방(none) - Mode 4 : MA, NT ⇒ 수평적 양허에 명기된 내용 개방	- Mode 1, 2, 3 : MA, NT ⇒ 전면 개방(none) - Mode 4 : MA, NT ⇒ 수평적 양허에 명기된 내용 개방
F. 기타사업서비스 t. 기타	환경관련 건설팅분야에 대한 mode 1, 2, 3를 none으로 양허	환경관련 건설팅분야에 대한 mode 1, 2, 3를 none으로 양허	환경관련 건설팅분야에 대한 mode 1, 2, 3를 none으로 양허
3. 건설서비스 (CPC 511~518)		- Mode 3 : MA ⇒ 전면 개방(none) - 기타장벽 : 현지 기자재 사용의무의 제한사항 폐지	CPC 511~517에 대하여 - Mode 2, 3 : MA, NT ⇒ 전면 개방(none) - Mode 4 : MA, NT ⇒ 수평적 양허사항에 명기된 내용 개방
6. 환경서비스	W/120 상 환경서비스 A, B, C, D 전분야, 공급양식 1, 2, 3에 대하여 none으로 양허	W/120 상 환경서비스 A, B, C, D 전분야, 공급양식 1, 2, 3에 대하여 none으로 양허	W/120 상 환경서비스 A, B, C, D 전분야, 공급양식 1, 2, 3에 대하여 none으로 양허

양허영역	필리핀	태국	싱가폴
수평적 양허	- Mode 3 : MA ⇒ 토지 취득 제한사항 삭제 - 자본금 20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 사항의 제거 - 업종별 투자지분 소유제한 사항 제거 - 외국인투자금지 제한의 제거 - 국내인력 우선고용의무 사항 제거 - 외국인 전문면허 자격 제도 제한 사항 제거	- Mode 3, 4 : MA ⇒ 토지 취득 제한 삭제 - Mode 3 : NT ⇒ 개방 - 외국인 지분 참여 제한 철폐	Mode 3 : NT ⇒ 현지인 관리자 고용의무 사항의 삭제
1.사업서비스 A.전문직서비스 d. 건축 (CPC 8671)	- Mode 1 : MA ⇒ 개방 - Mode 1 : NT ⇒ 전면 개방(none) - Mode 2, 3 : MA, NT ⇒ 전면 개방(none) - Mode 4 : MA, NT ⇒ 수평적 양허에 명기된 내용 개방 - AC ⇒ 외국건축사도 자국건축사와 공동으로 업무수행 가능하도록 개방	- Mode 1 : MA ⇒ 개방 - Mode 1 : NT ⇒ 전면 개방(none) - Mode 3 : MA ⇒ 제한 삭제 - Mode 3 : NT ⇒ 전면 개방(none) - Mode 4 : MA, NT ⇒ 수평적 양허에 명기된 내용 개방 - AC ⇒ 외국건축사도 자국건축사와 공동으로 업무수행 가능하도록 개방 - 기타장벽 ⇒ 국적요건 폐지 및 외국 사업실적 인정(환경부요청)	- Mode 3 : MA ⇒ 전면 개방(none) - Mode 4 : NT ⇒ 수평적 양허사항에 명기된 내용 개방 - AC ⇒ 외국건축사도 자국건축사와 공동으로 업무수행 가능하도록 개방
e. 엔지니어링 (CPC 8672)	- Mode 1, 2, 3 : MA, NT ⇒ 전면 개방(none) - Mode 4 : MA, NT ⇒ 수평적 양허에 명기된 내용 개방	- Mode 1 : MA, NT ⇒ 전면 개방(none) - Mode 3 : MA ⇒ 제한 삭제 - Mode 3 : NT ⇒ 전면 개방(none) - Mode 4 : MA ⇒ 제한 삭제 - 기타장벽 ⇒ 국적요건 폐지 및 외국 사업실적 인정(환경부요청)	- Mode 1, 2, 3 : MA, NT ⇒ 전면 개방(none) - Mode 4 : MA, NT ⇒ 수평적 양허에 명기된 내용 개방
f. 통합 엔지니어링 (C P C 8673)	(CPC 8672와 동일)	- Mode 1, 2, 3 : MA, NT ⇒ 전면 개방(none) - Mode 4 : MA, NT ⇒ 수평적 양허에 명기된 내용 개방 - 기타장벽 ⇒ 국적요건 폐지 및 외국 사업실적 인정(환경부 요청)	(CPC 8672와 동일)
g. 도시계획 및 조경 (C P C 8674)	- Mode 1, 2, 3 : MA, NT ⇒ 전면 개방(none) - Mode 4 : MA, NT ⇒ 수평적 양허에 명기된 내용 개방	- Mode 1 : MA, NT ⇒ 전면 개방(none) - Mode 3 : MA ⇒ 제한 삭제 - Mode 3 : NT ⇒ 전면 개방(none) - Mode 4 : MA, NT ⇒ 수평적 양허에 명기된 내용 개방 - 기타장벽 ⇒ 국적요건 폐지 및 외국 사업실적 인정(환경부 요청)	- Mode 1, 2, 3 : MA, NT ⇒ 전면 개방(none) - Mode 4 : MA, NT ⇒ 수평적 양허에 명기된 내용 개방

<계속>

양허영역	필리핀	태국	싱가폴
F. 기타사업서비스 t. 기타	환경관련 컨설팅분야에 대해 mode 1,2 3를 none으로 양허		환경관련 컨설팅분야에 대해 mode 1,2 3를 none으로 양허
3. 건설서비스 (CPC 511~518)	CPC 511~517에 대하여 · Mode 2, 3 : MA, NT ⇒ 전면 개방(none) · Mode 4 : MA, NT ⇒ 수평적 양허에 명기된 내용 개방 · 기타장벽 ⇒ 입찰참여제한과 특별면허 요구 사항 폐지	CPC 511~517의 전분야에 대하여 · Mode 2, 3 : MA, NT ⇒ 전면 개방(none) · Mode 4 : MA, NT ⇒ 수평적 양허에 명기된 내용 개방 · 기타장벽 ⇒ 외국의 사업실적도 인정	
6. 환경서비스	· W/120 상 환경서비스 A, B, C, D 전분야, 공급양식 1, 2, 3에 대하여 none으로 양허	· W/120 상 환경서비스 A분야 Sewage Services, B, C, D 분야 국경간 공급(mode 1)에 대해 none으로 양허 · 내국민대우제한 중 mode 3(상업적 주재)를 none으로 양허	· W/120 상 환경서비스 A, B, C, D 전분야, 공급양식 1, 2, 3에 대하여 none으로 양허

I. WTO 환경서비스협상 동향

1. GATS 환경서비스협상 개요

1.1 협상 동향(2000-2001)

1994년 우르과이라운드(UR) 서비스협상에서의 합의에 따라 후속 서비스 시장 개방 협상이 2000년 2월 제1차 회의를 개기로 환경서비스를 포함한 12개 서비스 부문에 대해 시작되었다. 서비스이사회 특별양허위원회(CSC) 소관으로 지난 2001년 3월 제7차 회의까지 1단계 협상작업이 완료되었으며, 2001년 5월 개최된 제8차 회의부터는 2단계 협상으로 서비스이사회 특별회의소관하에 각국 협상제안서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고 있다.

1단계 환경서비스협상에서 제기되었던 환경서비스 분류체계 논의(2000.2 ~ 2001.3)는 UR 환경서비스 분류체계(W/120 분류)의 개선 필요성을 확인한 것으로, EU를 비롯한 선진국(스위스, 캐나다, 호주)이 환경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주장을 펼친 반면, 인도 등 개도국 대부분은 반대 입장을 피력하였다. 현재, 분류논의는 환경보호활동에 직접 관련된 “핵심환경서비스(core service)”와 핵심서비스에 연관된 “연관서비스(cluster service)”를 분리·검토하자는 EU측의 제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환경서비스 협상은 EU 제안 7개 핵심서비스 분류목록을 고려한 핵심서비스부문에 한정하고, 연관서비스 부문에 대한 협상과 양허는 해당 서비스분야 협상에서 정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이어 제7차 서비스협상(2001. 3.28 ~ 30)에서 협상가이드라인이 채택됨으로써, 더 높은 수준의 환경서비스 교역자유화와 이에 대한 개도국 입장이 폭넓게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등 본격적인 서비스 협상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다음 <표 I-1>은 동 협상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I-1> 서비스협상 가이드라인 요지

구 분	내 용
협상목표	▶ 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점진적으로 추진
협상범위	▶ 어떤 서비스분야도 제외하지 않음.
협상방식	▶ Request/offer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복수간 및 다자간 방식 가미 ▶ 자발적 자유화에 대한 credit 인정필요(양허 협상 전에 criteria 마련 노력)
협상일정	▶ 일반이사회 결정에 따라 서비스이사회 특별회의에서 진행
개도국우대	▶ 개도국에 대한 신축성 부여 등 개도국 관심사항 폭넓게 반영

이와 별도로 지난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WTO 제4차 각료회의 선언 도하개발아젠다(DDA)는 환경협상 의제를 다수 상정하였으며, 환경서비스 협상에 관련된 1차 서비스시장 개방요구서(request list) 제출시한을 2002년 6월 30일로 정하고, 이에 대한 1차 개방제안서(offer list)를 2003년 3월 31일까지 제출토록 하였다.

1.2 2002년 제1차 CTE 회의 및 제12차 GATS 환경서비스협상

WTO/CTE 제1차 회의는 2002년 3월 21~22에 제네바 WTO 본부 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3월 21일 정례회의는 시장접근에 관련된 일반의제를 다루었으며, 3월 22일 열린 특별회의에서는 WTO규범과 MEAs 상의 무역조치 등 DDA상의 환경 관련 협상의제가 논의되었다.

특별회의 결과, 환경상품 및 환경서비스 시장개방에 대한 협상을 DDA 상의 소관 협상그룹인 시장접근협상그룹과 서비스협상그룹에 일임한다는데 합의가 이루어졌고, CTE 특별회의 일정으로 연 3회 개최 및 필요시 1회 추가방안이 논의되었으나, 여타 협상일정과의 중복 및 소규모 대표단 유지국가들의 반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제12차 서비스협상이 2002년 3월 21일부터 제네바 WTO 본부 회의장에서 서비스이사회 특별회의 형식으로 개최되었으며, 3월 22일 열린 환경서비스 부문협상에서 기존 협상제안서를 제출한 5개국(미국,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EC) 이외에 쿠바와 멕시코의 구두 제안이 개진되었다.

쿠바는 구두 제안에서 지속가능 발전의 관점에서 환경서비스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쿠바는 다국적기업과의 경쟁을 위한 개도국 능력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 차원의 점진적인 시장개방을 지지하였다. 또한 개별 국가의 자율적인 환경정책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기술 격차를 감안하여 개도국에 대한 기술 및 전문지식의 실질적 이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 멕시코는 환경서비스 교역 확대를 원하는 내부 수요가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회원국의 국내 환경규제가 불필요한 교역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환경서비스 분류문제와 관련하여, EC 제안서 상의 분류항목과 유사한 7개 환경서비스 항목을 열거하고 각 항목에 포함될 세부 서비스 내용을 적시한 제안서 제출의사를 밝혔으며, 건설, 상수관 설치, 저수조 설비 등 환경 연관 서비스들은 각각 해당서비스 협상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우리측은 도하각료선언 para 31 (3)항의 환경상품 및 환경서비스 교역자유화 의제를 언급하면서 환경서비스 협상 관련 서비스이사회 특별회의와 무역환경위원회(CTE) 특별회의 간에 논의중복 우려가 있음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한바, 의장은 환경서비스 협상은 기본적으로 서비스이사회 특별회의 소관 사항이나, 무역환경위원회(CTE) 특별회의도 서비스협상의 촉진을 위해 일정한 기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을 언급하였다.

제13차 환경서비스 협상은 2002년 5월 27일~6월 7일 개최될 예정이다.

1.3 UR-GATS 환경서비스 양허현황

1994년 종결된 우르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제한된 부분의 환경서비스에 대한 소수의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 양허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UR 결과물인 서비스교역자유화협정(GATS)은 정부조달, 보조금, 기술표준에 의한 서비스 규제, 허가제도, 전문자격표준 등과 같은 환경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현재 WTO 서비스무역 위원회 산하 위원회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최근 OECD 무역이사회가 실시한 환경서비스를 포함한 주요 서비스교역부문에 존재하는 다양한 교역장벽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작업에서, 서비스 일반의 교역에 대한 진입 규제를 의미하는 수평적 무역장벽과 환경서비스 부문에 한정된 서비스 교역장벽을 확인할 수 있다. 환경서비스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는 환경장비의 국경

간 이동(cross-border trade)장벽, 국내 공급자의 임시 체류, 및 환경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면·허가제도, 다양한 형태의 수요 및 공급 독점, 정부조달 관행상의 장벽, 지적재산권 보호관련 진입장벽 등, 주로 국내 규제조치들을 다루고 있다.

비록 환경서비스 개방문제가 UR 서비스 시장개방 협상의 중요한 쟁점이 아니었다고는 하나, UR 협상에서 GATS 서비스분류상의 환경서비스 분류항목에 대해 이루어진 UR 양허범위를 기준으로, 48개 WTO 회원국가들이¹⁾ 통상 4개로 분류되는 “서비스 공급방식(modes of supply)”²⁾의 각각에 대해서 폐수, 폐기물처리, 위생 및 유사 서비스, 기타 환경서비스 부문의 1개 이상에 대한 양허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³⁾

통상 WTO 개별 회원국은 자국이 제시한 특정의 양허내용을 담은 양허계획(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GATS 스케줄링 가이드라인에 수록된 12개의 GATS 부문 각각에 대해 양허해야 할 의무가 강제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협상결과에 따른다. 양허계획서에는 각 서비스 부문별로 해외서비스 공급자의 시장접근(Market Access) 제한조치나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제한이 기재되며, 또한 관련 서비스 공급방식도 명기되어 있다. 완전양허(“none”)으로부터 양허없음(“unbound”)에 이르는 다양한 공약 스펙트럼이 허용된다. 기술표준이나 자격허가제도처럼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 스케줄링이 규율할 수 없는 규제조치들은 “추가양허(additional commitments)” 기재형식으로 적시될 수 있다. 시장접근이나 내국민대우와 관련하여 12개 부문 전체에 대한 규제사항은 수평 양허항목에 기재된다.⁴⁾

1) 호주,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캐나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콜롬비아, 체코 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EC, 감비아, 기니,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일본, 한국, 쿠웨이트, 레소토, 리히텐슈타인, 모로코, 노르웨이, 파나마, 폴란드, 카타르, 루마니아, 르완다, 시에라리온, 슬로바키아 공화국,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 스위스, 태국, 터키, 아랍에미리트, 미국.

2) GATS 제1조에 규정된 4개의 공급방식으로는 (a) 한 회원국의 영토에서 기타 회원국의 영토로 공급하는 방식(“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 (b) 한 회원국의 영토에서 기타 회원국의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방식(“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 (c) 한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기타 회원국내의 주재상사를 통해 공급하는 방식(“주재상사(commercial presence)”), (d) 한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기타 회원국내의 자연인을 통해 공급하는 방식(“인적 이동(movement of persons)”)이 있다.

3) WT/CTE/W/67/Add.1, Annex III “Environmental benefits of removing trade restrictions and distortions”, note by WTO Secretariat, 13 March 1998.

4) GATS의 “수평적” 제한은 통상적으로 외국인 투자나 서비스공급자의 임시이동에

오랜 협상에서 멕시코와 뉴질랜드를 제외한 대다수의 OECD 국가들이 4개의 GATS 환경서비스 항목 가운데 3개 항목 이상에 대해 시장접근과 내국민 대우에 관한 양허계획을 제시하였다. 이들 양허계획은 폐수처리서비스(부문A), 폐기물처리서비스(부문B), 위생 및 유사서비스(부문C)에 있어서 보다 포괄적인 형태로 제시되었으나, 대기정화 서비스, 소음저감 서비스,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가 포함된 기타 환경보호 서비스(부문D)에 대한 양허에는 국가별 편차가 심하다.

이외에는 일부 개도국만이 4개 환경서비스 가운데 1개 이상, 드물게는 4개 부문 전부에 대한 양허계획을 제출하였다. 이에 반해 남아공과 태국을 제외한 아세안, 남미국가들을 포함한 신흥경제권 국가들은 아무런 양허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는 현재 진행중인 협상에서 선진국의 공세적 대응입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표 I-2>는 현행 GATS 하 40개국의 환경부문 양허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⁵⁾

<표 I-2> UR-GATS 양허현황 종합(1999년 기준, 40개국 대상)

부문	자유화 국가수	4개 전 측면 완전자유화 국가수	국경간 공급			해외소비			상업적 주재			자연인의 주재		
			완 전 개 방	제 한 적 개 방	미 개 방	완 전 개 방	제 한 적 개 방	미 개 방	완 전 개 방	제 한 적 개 방	미 개 방	완 전 개 방	제 한 적 개 방	미 개 방
A. 하수	32	0	12	2	19(1)	28	1	3	27	5	0	1	30	1
B. 폐기물	32	0	10	2	20	28	1	3	25	7	0	1	31	0
C. 위생 및 유사	33	1	12	1	20	29	1	3	30	3	0	2	31	0
D. 기타	31	1	16	2(1)	14	28	1	2	26	8(3)	0	2	29	0

주1: 완전개방: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제한 없음(None). 제한적 개방: 일부 혹은 전부에 제한사항이 있거나, 시장접근 또는 내국민대우 한쪽만 개방(None)하는 경우, 미개방: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양허없음(Unbound).

주2: (): 예를 들어, 기타 부문들 중 소음저감 서비스의 내국민 대우는 제한이 없지만, 동일한 기타부문인 자연경관 보호 서비스는 내국민 대우에 양허없음인 경우, 중복된 나라의 수 만큼 ()안에 표시함. 자료출처: WTO GATS양허스케줄 CD(1999).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한과 관련을 맺고 있다.
5) 각국의 환경서비스 부문 양허 내용은 <부록 3>을 참조.

대부분의 양허계획서에서 확인되는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에 적용되는 주요 조건이나 제한으로는, 폐수, 폐기물처리, 위생서비스 공급자의 임시이동 등 국경간 공급의 제한, 현지 주재법인 설립에 따르는 제한, 영업면허요건(operating license requirements)을 통한 규제, 특정 서비스부문에 대한 정부독점의 허용, 서비스공급자에 대한 국적과 거주지 요건 등이 확인된다.

1.4 우리나라 양허현황 및 협상대응 입장

우리나라는 UR 협상 당시 “산업폐수 수탁처리”, “산업폐기물 수집처리”, “배기가스정화 및 소음방지”, “환경영향평가서비스” 등 4개 업종을 개방한 바 있다. 다음 <표 I-3>는 UR 당시에 우리나라가 제시한 양허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UR 환경서비스 시장개방이 국내 환경서비스 시장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⁶⁾ 그 주요 원인으로서는 국내 민간 환경서비스 시장에 존재하는 수익기반의 불확실성과 시장자체의 영세성이 거론되고 있다. 외국기업의 독자적인 국내 진입은 신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정 부분의 초기 투자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과 투자비용의 회수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 및 제한된 기대 수익률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시장에 대한 외국 기업의 진출은 국내 기존 서비스 공급업체와의 기술계약 등을 통한 수직적인 분업구조 분담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를 기반으로 한 주변국가로의 우회진출 가능성을 염두에 둔 진출 노력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000년 개시된 1단계 환경서비스협상에서 우리나라는 UR 당시 사용된 GATS 환경서비스 분류체계의 개선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을 견지하였으나, 협상의 효율적 진행과 기존 양허계획 이행과 후속 협상결과 간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환경서비스 협상은 환경핵심서비스 항목에 국한하되, 환경연관서비스 목록을 관련서비스협상에 참조자료(check list)로 활용하는데 동의하였다.

2단계 협상에서도 환경서비스 개방이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므로 추가적 자유화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추가적인 시장개방에 적극적인 협상입장을 정립한 가운데, 각국의 상이한 발전정도 및 민영화 수준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환경서비스의

6) 환경부, “환경서비스 시장개방 확대의 영향과 대응방안”, 2000.

공공성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전략적 유연성을 함께 견지하고 있다.

<표 I-3> 우리나라 UR 환경서비스 양허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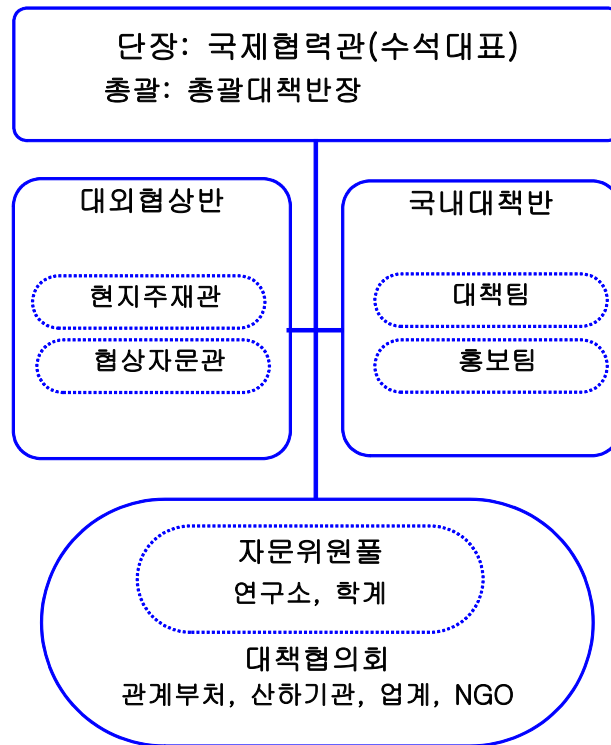
관련 업종	시장 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 양허
A. 폐수 수탁처리 서비스[9401*]	1) Unbound 2) 없음 3) 총서비스공급자수 25개제한 4) 전 분야 기재 제한사항 외 Unbound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전 분야 기재 제한사항 외 Unbound	산업 폐수에 국한
B. 산업폐기물수집 처리서비스 [9402*]	1) Unbound 2) 없음 3) 상업적 주재의 설립은 경제적 수요심사에 의한. 영업을 허가한 지방환경청 관할 구역내에서의 폐기물 수집·운반업만 허용. 4) 전 분야 기재 제한사항 외 Unbound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전 분야 기재 제한사항 외 Unbound	
D. 기타 배기가스 정화 및 소음방지 서비스 [9404*, 9405*]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전 분야 기재 제한사항 외 Unbound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전 분야 기재 제한사항 외 Unbound	시공분야 제외
환경영향평가 서비스 [9409*]	1) 없음 2) 없음 3) 상업적 주재의 설립은 경제적 수요심사에 의한. 4) 전 분야 기재 제한사항 외 Unbound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전 분야 기재 제한사항 외 Unbound	자연경관 보호 제외

자료출처: WTO GATS양허스케줄 CD(1999)

한편, 1단계 서비스협상을 기점으로 환경서비스 협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연구기관, 학계전문가가 참여하는 “환경서비스협상대책반”을 구성하고, 관

런 협상에 참여하면서 필요한 조사연구 및 정책대응 방안을 수립 시행해 왔으며, 2002년 1월 도하라운드 출범 이후에는 정부 유관부처 및 기 운영중인 “환경·무역 연계대책협의회”와 “환경서비스 협상대책반”을 통합한 “DDA 환경협상대책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표 I-4> DDA 환경협상대책단 구성도



자료출처: 환경부 내부자료(2002)

2. 주요국 협상제안 분석

최근 협상동향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회원국이 환경서비스시장 개방확대가 환경보호와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한다는데 동의하는 가운데 환경서비스 개방확대를 지지하는 회원국이 많아진 가운데 인도, 쿠바 등 개도국은 여전히 선진국과 다른 발전여건 및 국내 정책우선 순위를 고려한 적절하고 점진적인 시장개방을 지지하며 개도국 능력형성 및 기술이전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2002년 4월

현재, EU, 미국, 캐나다, 스위스, 호주, 쿠바가 각각 환경서비스 부문의 협상 가이드라인 등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하고 있다. 각 국 제안서에 나타난 협상범위, 제안 내용, 예시 교역장벽은 다음과 같다.

2.1 협상범위

미국과 캐나다가 Core/Cluster 분류체계를 지지하며 비교적 비슷한 범위를 제안하였으며, EC와 스위스는 각각 7개 항목으로 구성된 자체분류안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면에서도 EC와 스위스가 유사한 체계를 지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호주는 원칙적으로 EC의 환경 서비스 분류(S/CSC/W/25, 1999. 9. 28)방법을 지지한다. 쿠바는 협상범위에 대한 언급은 없다. 미국, EC, 캐나다, 스위스, 호주 그리고 쿠바 각국의 제안서에 나타난 협상범위는 <표 I-5>와 같이 정리된다.

<표 I-5> 각국 제안 협상범위

	미국('00.12.18) (S/CSS/W/25)	EC('00.12.22) (S/CSS/W/38)	캐나다('01.03.14) (S/CSS/W/51)	스위스('01.03.14) (S/CSS/W/76)	호주('01.10.1) (S/CSS/W/112)	쿠바('02.3.22) (S/CSS/W/142)
협 상 범 위	Core/Cluster분류지지 연결 framework 구성 핵심서비스(W/120) - 오수(Sewage) - 폐기물(Refuse) - 위생 및 유사 - 기타: 배기가스정화 자연·경관보호 연관서비스 건설 엔지니어링 건설링 등	job 7612로 수정된 자체분류(안) 7개 항목 (S/CSC/W/25)참조 6A. 물 및 폐수 6B. 고형/유해폐기물 6C. 대기 및 기후 6D. 토양 및 물 정화 6E. 소음 및 진동저감 6F. 생물다양성/경관 6G. 기타, 부수적 환경 연관서비스(check list) (환경요소를 포함하는) 비즈니스 R&D 건설링,계약,엔지니어링 건설, 분배, 운송, 기타	Core/Cluster분류지지 "check list"로 활용 핵심서비스(W/120) - 오수(Sewage) - 폐기물(Refuse) - 위생 및 유사 - 기타: 배기가스정화 자연경관보호 연관서비스 건설 엔지니어링 건설링 시험 및 분석	자체분류 7개 항목제시 suitable system 구성 (S/CSS/W/76)참조 A. 폐수(waste water) B. 폐기물 C. 대기 및 기후 보호 D. 토양/물 복구·정화 E. 소음 및 진동저감 F. 생물다양성/경관 G. 기타, 부수적 환경 연관서비스 (환경요소를 포함하는) 전문적 서비스 R&D 건설링,계약,엔지니어링 건설	원칙적으로 EC의 분 류방법지지 핵심환경서비스 (6A-6G)분류를지지 순수환경서비스와 환경매체에 따른 서비 스	별도 언급 없음

자료출처: WTO 관련 협상문서

2.2 양허제안

양허제안에 있어 캐나다만이 모든 modes, 모든 항목에 대하여 관련 양허를 제안하였다. 미국, EC, 스위스, 호주, 쿠바 등은 일부의 양허와 일부의 협상논의를 희망하였다. <표 I-6>은 각국 제안서에 나타난 양허제안을 비교한 것이다.

<표 I-6> 각국 양허제안

	미국('00.12.18) (S/CSS/W/25)	EC('00.12.22) (S/CSS/W/38)	캐나다('01.03.14) (S/CSS/W/51)	스위스('01.03.14) (S/CSS/W/76)	호주('01.10.1) (S/CSS/W/112)	쿠바('02.3.22) (S/CSS/W/142)
양 허 제 안	GATS MA, NT 관 점에서 mode 3, 4 관련 W/120분류항 목 자유화 전문직 및 비즈니스 (광고 등)서비스 논 의희망	mode 1, 2, 3 관련 자체분류 모든 항목 양허 mode 4, 회사내 전 보 및 서비스공급 계약에 의한 해외 법인 피용자일시 동 양허 일시이동 조건에 관 한 추가논의 희망 수평양허 부문 추가 제안서 제출 예정	모든 modes 모든 항 목에 MA, NT 관련 양허(bound) 제안	주로 mode 3 관련 서 비스 공급자의 상사주 제요건 완화 희망 mode 1, 2, 4 논의 회 망	정당하지 않은 상업 적 주체 규제의 제검 토 희망	유익성이 확인된 서 비스 공급모드에서 개도국 관련 서비스 의 수출 보장

자료출처: WTO 관련 협상문서

2.3 환경서비스 교역장벽 예시

제안서상에 나타난 환경서비스 교역장벽에 대하여 EC는 상세한 환경서비스 및 수평부문 시장진입 장벽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으며, 스위스는 수평양허에 대해서만, 그리고 캐나다와 호주는 투명성 부족에 대한 장벽을 예시하였다. 미국과 쿠바는 이와 달리 시장진입 장벽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다. <표 I-7>은 각국 제안서에 나타난 예시장벽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 I-7> 각국 예시 진입장벽

	미국('00.12.18) (S/CSS/W/25)	EC('00.12.22) (S/CSS/W/38)	캐나다('01.03.14) (S/CSS/W/51)	스위스('01.03.14) (S/CSS/W/76)	호주('01.10.1) (S/CSS/W/112)	쿠바('02.3.22) (S/CSS/W/142)
예 시 장 벽	별도 언급 없음.	환경서비스부문 장벽: - 독점 및 배타적 공급자의 존재 - 영업활동의 법적 형태에 대한 제약 - 지분 제한 - 외국인투자제한 - 불명확한 면허·승인 요건 - 불명확한 경제적 수요(needs)심사 - 거주, 국적보유 요건 - 핵심인력의 이동제한 수평양허부문 장벽: - 불명확한 승인 요건 - 불명확한 경제적 수요 심사 - 실물자산(부동산) 구입 및 임대 제한 - 지분소유제한 - 거주요건 - 일부 과세 및 보조금	투명성 부족: - 규제제도 및 관행 - 투자 및 법인설립 - 서비스관리자의 입국 및 주재 - 숙련공, 전문가, 면허 요건	수평양허 MA장벽: - 법인설립, 상사주제, 내국인 고용 의무와 관련된 제한 - 외국인 투자제한 - 매립지, 처리 시설의 소유 및 설립 형태 제한 - 현지 기업과의 공동 훈련(joint training)요건 - 경제적 수요 심사 - 사전면허 취득 - 정부공급	- 투명성 부족과 불필요한 지연, 기업활동에 대한 제한, 느슨한 경쟁법규 등 - 모순되거나 변동스러운 환경법 집행 및 입법 제한 - 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예, 외국 기업들에 대한 높은 등록비용 및 제출절차의 투명성 부족) - 국내 기업에 호의적인 조세 차별 - 외국 투자 제한(예, 특정 수준의 주주권 제한) - 특정 자산 소유권 제한(매립 및 하수 시스템)	별도 언급 없음.

자료출처: WTO 관련 협상문서

2.4 각국 시장개방 지지논거

2.4.1 미국

미국은 환경서비스 부문의 교역장벽 제거가 환경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비용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외국기업의 시장진입 여건 개선은 경쟁을 강화하며 향상된 환경서비스 공급과 혁신을 가져오며, 보다 저렴하고

양질의 환경서비스는 건강, 안전, 환경보호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환경서비스 비용의 저감과 환경오염 제거활동의 효율성 개선은 소요 재정문제가 환경정책 관련 의사결정의 관건이 되는 개도국에게 보다 유익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미국 제안은 건강, 안전, 환경보호에 필요한 환경서비스의 공급 장벽을 제거 혹은 감소시킴으로써 경제성장과 환경보호에 우호적인 여건을 형성한다는 데 근거하고 있다.

2.4.2 EC

EC는 환경서비스 교역의 자유화와 환경보호, 인류의 보건과 경제발전 사이에 존재하는 상생의 관계(win-win)를 강조한다. 상생관계(win-win)는 환경기술의 직접 이전통로인 자본재와 서비스교역을 통하여, 국내 환경예산 제약에 대한 긍정적인 가격 및 효율성을 제공하는 효과 뿐 아니라, 복지, 건강, 환경개선 능력 향상이라는 편익을 제공함은 물론 관련 산업활동에 대한 시장기회 확대를 통한 기술개발, 협력 촉진 달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2.4.3 캐나다

환경서비스 교역자유화는 대부분의 개도국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온다는 입장에서, 캐나다는 확대된 해외시장에 대한 접근성과 현행 규제제도의 개선이 크고 작은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수출자는 자신의 기술과 전문성을 전파할 수 있으며, 수입자는 저렴한 비용의 다양한 환경서비스를 구할 수 있다고 본다.

환경서비스 교역자유화는 대부분의 개도국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데, 자유화가 가져오는 가능한 win-win 상황의 하나는 환경보호의 증진과 같은 환경편익과 지역기술과 전문성의 제고라는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이며, 예상 편익의 크기는 국내 제도와 규제규범의 존재여부와 관련되어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4.4 스위스

환경규제가 강화된 국가들의 환경산업은 발전정도가 높으며, 사후오염관리부문에서 사전예방 부문으로 산업의 중심이 옮겨가는 상황에 있으나 종종 이들 시장은 포화상태에 있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환경규제가 느슨한 국가들은 폐기

물 및 폐수처리, 온실가스배출, 생물다양성 감소에서 비롯된 환경문제들에 직면해 있으며, 공중보건과 위생을 저해하는 이러한 문제들은 관광(산업)이 확대되는 국가들에서 보다 복잡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는데 주목한다. 그러나 환경표준의 폭넓은 수용과 함께 이들 지역에서도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스위스는 환경서비스 시장의 적절한 개방이 수출국과 수입국 입장모두에서 필수적일 것으로 여긴다. 환경 문제가 점차 지구적 문제로 등장하는 상황에서, 환경서비스 부문에서의 기술과 전문지식(know-how)의 이전은 특히 중요하며, 이는 보다 높은 수준의 공중보건과 복리수준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2.4.5 호주

호주는 WTO 회원국들이 우르과이라운드 종결 이후의 이 분야의 변화와, 시장 접근과 내국민대우를 통한 이들 변화를 인식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호주의 제안은 더 많은 환경 서비스를 포함하는 입장에서 환경 부문의 분류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2.4.5 쿠바

쿠바는 지속가능 발전의 관점에서 환경서비스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다국적기업과의 경쟁을 위한 개도국 능력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 차원의 점진적인 시장개방을 지지하였다. 또한 개별 국가의 자율적인 환경정책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기술 격차로 인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개도국에게 기술 및 know-how 등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특히 협상을 통하여 기대하는 결과를 (a) 우호적인 상업적 기초에서, 필요한 경쟁의 수준을 보장하는 실제적인 기술이전; (b) 관련 노하우의 이전; (c) 인적·제도적 측면 모두에서, 차후의 이들 서비스의 국가적 발전을 보장하는 국가 기술 역량의 형성, (d) 이익이 될 것으로 확인된 공급형태로 개발도상국의 서비스 수출을 보장하는 양허의 적용 등을 제시하면서 동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2.5 제안내용의 평가

이상과 같은 주요국 제안은 환경서비스 시장개방협상에 임하는 우리나라의 기존 입장에 배치되지 않는 것으로 긍정적인 대응입장 설정이 가능할 것이다. 각국 제

안내용에 대한 대응입장은 다음과 같다.

그간의 양허위원회 작업에서 환경연관서비스로 분류되지 않은 광고서비스와 같은 상업서비스(Business Services)와 전문직 서비스 교역장벽에 대한 관심을 강조한 미국의 제안에 대하여 이들이 환경서비스 교역자유화에 유용하다는 점은 인정하나, 이는 해당서비스 부문에 대한 협상에서 다뤄져야할 문제로 환경서비스 협상에서 다루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대응입장의 설정이 가능하다.

환경서비스제공자의 자질 검증과 독자적인 환경규제정책의 수립여지를 강조한 제안 미국의 제안과 관련하여, 특정 회원국의 환경정책 입안 및 집행에 관한 권리는 그 국가 고유의 권한임을 인정하나, 환경서비스 공급자의 자질과 환경친화적 생산공정 이행여부에 대한 판단, 환경서비스 효율성 및 품질기준 등의 설정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으로 적용됨으로써 부당한 교역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조건도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연관 서비스 목록을 협상과정에서 참조목록으로 활용하고 협상결과는 해당 서비스 분류항목에 기재토록 한 EC의 제안은 합리적인 제안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환경 서비스부문의 협상과 연관서비스부문의 협상 주체가 다를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환경핵심서비스와 관련부문별 협상과정에 구체적으로 상호연계 검토를 가능케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EC 제안서상 서비스공급양식 1, 2, 3에 있어 모든 서비스항목과 공급양식에 대해서 “제한없음(완전약속: none)”으로 양허해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진보적인 것으로 현 단계에서 개별 회원국의 상당한 반발 혹은 유보적 반응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된다. 동 제안에 대한 우리측 대응 입장을 정하기 전에 주요국 현황과 국내 사정에 대한 세부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에 제시될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이 같은 협상동향에 대한 고찰결과에 근거한 것으로 현재 주요 환경서비스 교역국가에 해당하는 주요 선진국과 향후 중요한 교역상대국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시장 미개방국가들의 시장개황과 주요 진입장벽에 대한 조사결과를 담고 있다. 이는 2002년 6월 30일로 설정된 1차 시장개방요구서 작성에 필요한 기초 연구자료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II. 세계 환경시장 현황 및 서비스 교역장벽

1. 세계 환경서비스시장 동향

1.1 세계 환경시장 개황

1.1.1 지역 및 부문별 시장구조

세계 환경서비스산업 동향에 대한 본 절의 논의는 환경제품 및 서비스산업의 범위와 관련 통계의 편차로 각국 환경산업 현황에 대한 객관적 비교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OECD 및 환경통계 전문기관(EBI)의 추계치를 주로 이용하였다.⁷⁾

환경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환경의식이 앞선 일부 선진국(미국, 일본,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등)의 경우 GDP의 3% 대에 이르고 있으나, 그보다 발전 수준이 낮은 이태리, 스페인, 한국 러시아 등에서는 GDP의 약 1% 내외에 머물러 선진국 경제권내에서도 환경의식과 관련 산업기반에 따라 환경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기여도가 차별화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고용규모를 기준으로 볼 때도 총 고용의 1% 이내에 머물러 있으며 국가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으나, OECD의 관련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에서 연평균 3% 이상의 성장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⁸⁾

<표 II-1>에 보는 바와 같이, 1996년 현재 전 세계 환경시장의 규모는 약 4,53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최근 들어 그 성장세가 현저히 둔화되고 있다. 이는 세계 환경시장의 87%이상을 차지하는 선진국 환경시장 성장률이 낮은 때문이다. 선진국 환경시장의 저성장 원인은 주요 산업시설들이 기존의 환경 규제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 데다, 추가적 환경수요를 창출할 신규 환경규제 도

7) 활용 가능한 통계치는 대부분 1995~1997년 사이의 자료로 최근의 환경산업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선진국 환경시장의 경우 이미 포화상태에 있어 급격한 규모의 변화를 보여주지 않으며, 개도국 시장의 경우에도 최근의 외환위기에 따른 시계열상의 혼란을 감안할 때, 세계 환경서비스 시장 개황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8) 1992년 기준, 미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의 고용인원은 각각 약 107만, 58만, 17만, 1.3만명으로 총고용대비 0.91%, 0.90%, 0.48%, 0.06%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4.4%), 아프리카(0.5%), 라틴아메리카(1.9%) 지역에 위치한 개도국 환경시장의 점유율은 전체의 7%에 불과하나 연평균 10%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선진국 환경산업 동향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표 II-1> 지역 및 부문별 세계 환경서비스시장 규모(단위: 십억 US\$)

	US	EU	JP	AS	LA	CA	AN	EU	MA	AF	합계\$	부문계%
환경설비업	44.8	29	19	6.5	2.3	2.8	1.5	1.7	1	0.4	108.9	24
환경자원이용업	40	34.8	22.4	6	2.7	2.8	1.7	2.9	1.3	1	115.6	25.50
환경서비스업	86.9	69.6	45.7	7.7	3.9	6.1	3.7	2.6	1.8	0.6	228.6	50.50
고형폐기물관리	32.7	29.5	29.6	3.4	1.3	2.2	1.4	1.1	0.8	0.3	102.2	22.6
유해폐기물관리	5.9	5.2	3.8	0.5	0.2	0.4	0.2	0.3	0.2	0	16.8	3.7
컨설팅·엔지니어링	14.2	8.4	1.1	0.8	0.3	0.9	0.5	0.3	0.2	0.1	26.8	5.9
토양 복구	8.3	3.7	1.1	0.4	0.2	0.5	0.3	0.2	0.3	0	15	3.3
분석서비스	1.2	1	0.5	0.1	0.1	0.1	0.1	0.1	0	0	3.2	0.7
수처리용역	24.6	21.8	9.6	2.5	1.8	2	1.2	0.6	0.3	0.2	64.6	14.3
합계(10억US\$)	171.8	133.5	87.1	20	8.8	11.6	6.8	7.1	2.2	2.2	453	
지역별 비중(%)	37.9	29.5	19.2	4.4	1.9	2.6	1.5	1.6	0.5	0.5	100	
성장률(98-00,%)	1.8	2.8	2.6	12.0	12	3	4	8	10	10	3	

업종별 환경시장의 구성에 있어서, 환경서비스 시장은 전체 환경시장의 약 50.5%를 차지한다. 1996년 기준 2,288억 달러에 이르는 환경서비스 시장은 연평균 약 8%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추정되며, 2010년에 이르면 그 규모가 6,400억 달러를 상회하여 제약산업 또는 정보기술산업에 버금가는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환경재 및 설비제조업은 금액기준 1,078억 달러로 전체 환경시장의 23.8%를, 환경자원 이용업은 1,156억 달러의 시장규모로 전체시장의 25.5%를 차지한다.

환경서비스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고형폐기물 관리서비스로 1996년 기준 1,022억 달러, 22.6%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수처리 서비스가 648억 달러로 14.3%의 점유율을 나타낸다.

1.1.2 지역별 시장발전 단계

지역별 환경시장의 발전단계⁹⁾를 상호비교하기 위하여 작성된 <표 II-2>은 위에 언급된 환경시장의 각 발전단계를 성취 정도에 따라 4가지 척도로 나누어 평가한 결과를 담고 있다.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을 포함한 서유럽 선진국과 호주의 경우, 이미 완벽한 사후오염 처리가 이루어지는 발전단계를 넘어서고 있는 반면, 동유럽을 필두로 멕시코를 포함하는 중남미, 일본을 제외한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의 환경시장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아직 환경시장 발전의 초기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II-2〉 주요국 환경시장 발전단계비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미국							
캐나다							
영국							
서유럽							
동유럽							
멕시코							
중남미							
일본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호주							
	완료		상당부분 성취		부분성취		시작 전

자료출처: EBI Report 2000.

9)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환경시장은 다음과 같은 일곱 단계를 거쳐 발전해나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 환경문제에 대한 일반대중의 인식과 압력이 시작되는 단계, b. 정부정책 확정 단계, c. 관련 법규의 제정·발효 단계, d. 규제내용의 공표, 집행기관에 관할권이 위임되는 단계, e. 규제실시로 사후적 오염관리 환경시장이 형성되는 단계, f. 규제 충족을 위한 지속적 예방노력으로 신뢰성 제고되는 단계, g. 지속 발전을 위한 예방 및 보존 노력의 내재화·통합 단계. 각 발전 단계는 다시 완전한 성취단계, 상당수준의 성취단계, 부분적인 성취단계,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단계 단계로 나누어진다.

이 가운데 동아시아지역은 여타 지역에 비해, 성숙된 선진 환경시장(일본, 한국)으로부터 성장초기의 개도국 시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발전 단계의 상호보완적 지역시장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역내 통상환경이 자유로워질 경우, 양적인 측면의 환경시장 확대는 물론 선진 환경기술의 활발한 이전을 통한 역내시장의 질적인 성장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동아시아지역의 개발도상 국가군을 이번 환경서비스 협상에 대한 주요 협상 당사국으로 설정하였다.

1.1.3 국제교역 동향 및 주요국 비교우위

대부분의 환경산업 활동이 내수시장을 위주로 성장해왔다는 점에서 환경서비스의 국제교역 규모는 크지 않다. 다만 향후 개도국 지역의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관련 산업이 성숙되어 감에 따라 선·후진국간의 교역량은 점차 증가할 것은 분명하다. 환경산업 부문의 교역은 환경관련 장비와 기술의 거래를 제외하면 대부분 폐기물처리 및 수처리 그리고 대기오염감축에 관련된 공공기반시설의 신규설치 내지 개·보수와 관련되어 있다.

<표 II-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은 자국 환경관련 제품생산의 약 10%를 수출하여 11억 1,000만 달러, 독일은 국내생산의 약 40%를 수출하여 7억 2,000만 달러, 일본은 약 6%를 수출하여 54억 8,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대만은 약 6억 1,000만 달러, 멕시코 와 캐나다는 약 2억 9,000만 달러, 우리나라도 약 700만 달러 정도의 환경산업 수지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표 II-3> 주요국 환경산업 무역수지(1992기준, 백만 US\$)

국가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무역수지	1,113	720	478	14	14
국가	캐나다	멕시코	대만	중국	한국
무역수지	-284	-286	-612	-19	-7

자료출처: OECD(1996)

환경산업의 국제교역에 관한 최근의 OECD 연구자료는 환경선진국으로 평가되고 있는 핀란드 및 노르웨이 등 북유럽국가들의 경우 국내 환경산업관련 생산액의

50%이상을 수출하는 수출 지향적 환경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여타 선진국들도 최근 들어와 점차 수출을 확대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¹⁰⁾

동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환경관련법규, 기초연구, 종합기술 부문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은 환경관련 법규, 기초연구, 벤처캐피탈 부문에, 일본의 경우, 해외영업 및 가격경쟁력에서 각각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은 오염물질의 모니터링, 생물공학, 핵, 탄광, 농업, 화학 등으로 인한 토양정화 및 대기오염방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본은 대도시 및 산업부문의 대기분야에, 독일은 수질 및 토양분야, 오염물질의 측정 및 분석분야에서 잠재적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2 주요 지역시장 현황

1.2.1 북미시장

북미 환경시장은 1,655억 달러(1996)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을 보유한 미국시장과 캐나다 및 멕시코 시장으로 구성된다.

성숙단계에 접어든 미국의 환경시장은 년 평균 2~4%의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청정생산과 같은 신규 환경산업 부문에 있어서는 상당한 성장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청정에너지분야의 성장률은 연평균 10% 대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¹⁾ 미국 환경서비스 시장은 미국 전체 환경시장의 50.6%를 차지하고 있는데¹²⁾ 고품폐기물관리 및 수처리서비스 부문에서는 상당 수준 대형화, 전문화가 이루어져 있어 해외기업의 시장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토양복구, 컨설팅 및 엔지니어링, 분석서비스 등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캐나다, 영국 및 일본을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 전체 환경산업 생산액의 약 10%정도를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환경감시체계 및 서비스, 폐기물 관리분야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1992년 약 11억 달러에서 1994년 약 50억 달러로 수지흑자를 키워가고 있어 주요한 수출전략산업 가운데 하나로 인식된다.

캐나다의 환경산업 부문에는 1997년 현재 6,500여 개의 환경산업체에 약 15만명

10) "The Global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 Industry" 1996, OECD, Paris.

11) OECD(1996)

12) 대외경제정책연구소, 「주요국의 서비스업 시장개방 현황과 WTO 뉴라운드 서비스 협상-통신·환경·에너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김준동 외, 2001.12.

이 종사하고 있으며, 매년 6%이상의 성장세 속에 상당한 신규고용이 창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산업 시장규모는 110억 달러 규모로 세계시장의 3%정도를 점유하고 있으며, 1992년 기준 2.8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여타 선진국과 비교하여 물·폐수처리, 폐기물처리 분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캐나다의 환경산업은 환경컨설팅, 엔지니어링, 토양정화 및 에너지 보존분야 등에서도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캐나다는 환경산업육성을 위해 단계별 개발전략 등을 수립하고 정부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끝으로, 멕시코의 환경시장 규모는 1993년 기준 약 7억 5천만 달러에 이르며, 이 중 수질분야의 비중은 전체 시장의 65%이상인 5억불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수요의 25% 정도는 수입으로 충당되고, 이중 85%가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등 대외의존도가 심하며, 1992년 기준 2억 8,600만 달러의 수지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환경관련 법체계의 미비가 환경산업 성장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었으나, 1992년 NAFTA의 체결이후 국내·외 환경산업여건의 개선, 환경법 체계의 정비 및 시행, 국제환경협약 가입 등을 통해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1.2.2 서유럽시장

미국, 일본과 함께 세계 환경시장의 3대 축을 형성하는 서유럽의 환경시장규모는 1994년 기준 1,335억 달러에 이르며, 환경서비스시장은 전체의 약 52.1%를 점유한다.

토양복구를 포함한 오염매체별 환경시장의 성장추세를 정리한 <표 II-4>에 따르면, 서유럽 환경시장은 1990년에서 1995년 사이에 연평균 8%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오염매체별 시장규모에 있어서는 폐기물관리 분야가 280억불로 가장 크고, 차례로 수질분야가 213억 달러, 대기분야가 128억 달러, 토지정화 분야가 23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성장률에 있어 토지정화분야가 연평균 16.1%, 수질분야가 9.1%의 고도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 및 대기분야가 각각 4.5%, 4.3%로 완만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서유럽 지역은 이미 1970년대 초에 국내환경규제를 강화하여 환경입법, 적절한 환경행정, 엄격한 환경조례 등 발전된 환경관리체제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출지향성을 가지고 있어 역내 생산규모의 약 20% 정도를 국제무역을 통해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별 점유율은 독일

36%, 프랑스 20%, 영국 18%, 이탈리아 15%로 일부 국가에 집중된 지역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표 II-4> 서유럽 환경시장의 매체별 성장추세 (단위: 10억(US\$), %)

구 분	1990	1991	1995	년평균성장률
폐기물관리	20.9	22.5	28.0	4.5
수질분야	12.8	13.8	21.3	9.1
대기분야	9.6	10.3	12.8	4.3
토지정화	1.0	1.1	2.3	16.1
총 계	44.3	47.7	64.4	8.5

자료출처: OECD (1996)

국별로 독일의 환경산업은 1994년 기준 364억불 시장규모에 약 17만 명의 고용인구를 유지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환경분야에서 우수한 국제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자국 생산품의 약 40% 정도를 수출하고 있다.

프랑스의 환경산업 시장규모는 1994년 202억불 규모로 6%이상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매출액 기준 세계 50대 환경산업체에 12개의 자국업체가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대형화가 이루어져 있다. 프랑스는 환경부문 자국 총생산의 약 30%를 수출하고 있으며, 수질분야에 우수한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도 독일, 프랑스와 더불어 유럽 환경시장의 주요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1994년 기준으로 환경산업 시장규모는 176억불에 이른다. 영국은 수질분야, 환경모니터링, 엔지니어링 및 환경서비스 분야에 경쟁력을 가지고, 청정거래법과 수질오염규제법(Water Act) 등의 환경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환경수요를 창출해 오고 있다.

서유럽에서 가장 선진화된 시장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네덜란드의 환경시장은 전체 시장규모는 작으나 몇몇 대기업의 역할이 강조되는 집중된 시장구조를 갖고 있으며, 생물학적 처리기술, 토양정화 분야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생산품의 약 26%정도를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 이탈리아의 환경산업은 최근 강화된 환경규제와 공공지출의 증가로 국내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독일, 미국, 프랑스 등 외국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서유럽 국가들은 최근 현실화된 역내 단일시장에 적용될 새로운 환경기준에 맞

추기 위한 기본적인 환경시스템의 향상이나 수질오염감시체계의 개선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오염된 토양의 복원 및 유해폐기물처리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2.3 동아시아 시장

지정학적으로 동아시아는 10개 아세안회원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을 포함하여 한국, 일본, 중국의 3개 동북아시아국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표 II-5>은 이들 지역국 가운데 자료수집이 가능한 10여 개 국의 경제지표와 환경시장 동향을 정리한 것이다.

<표 II-5> 동아시아 주요국 경제 및 환경시장 현황 비교

	일본	중국	한국	대만	인도네	태국	홍콩	말레이	싱가폴	필리핀	베트남
인구 (95,억명)	1.25	12.03	0.45	0.21	1.95	0.6	0.06	0.19	0.03	0.67	0.74
연평균성장률 (%)	0.6	1.1	1.9	n.a.	2.5	1.5	0.8	2.7	1.0	2.6	2.1
도시인구비율(94,%)	78.0	n.a.	80.0	n.a.	34.0	20.0	95.0	53.0	100.0	53.0	n.a.
GDP (94,억US\$)	45,909	5,222	3,765	2,349	1,746	1,432	1,319	706	689	642	156
성장률 (95,%)	1.0	9.9	9.2	6.6	7.2	8.6	5.0	9.2	8.3	5.4	9.5
성장률 (96,%)	3.8	8.5	6.8	5.4	7.5	6.6	4.6	8.5	6.2	5.4	9.0
성장률 (97,%)	1.9	9.0	6.0	6.7	5.5	0.6	5.5	7.6	7.0	5.0	8.0
환경시장(95,억US\$)	859.0	29.3	42.7	29.1	8.6	11.2	14.0	5.8	8.7	3.5	0.9
GDP대비 (95,%)	2.1	0.9	1.5	1.5	0.7	1.0	1.7	1.1	1.8	0.7	0.8
성장률 (96,%)	2.0	16.0	10.1	8.9	16.3	17.9	7.9	22.4	8.1	20.0	n.a.
성장률 (97,%)	1.8	10.3	3.0	2.5	-2.0	-8.3	2.0	-1.4	5.3	-7.1	n.a.
성장전망(97-00,%)	2	10~14	0~4	4~8	2~6	2~6	4~8	6~10	6~8	6~10	10~12

자료출처: EBI Report 1211, 1998.

1994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일본이 약 4조 6,000억 달러에 이르는 국내총생산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5,222억 달러), 한국(3,765억 달러), 대만(2,349억 달러)이 그 뒤를 따르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국내총생산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1억 2,500만의 인구를 보유한 일본은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연평균 0.6%에 이르는 낮은 인구증가율과 연평균 2%대에 이르는 안정된 GDP 성장률을 기록하며 선진국 경제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역대 제2위에 이르는 국내총생산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나 12억을 상회하는 인구로 인하여 일인당 GDP 수준은 한국과

대만 등에 크게 뒤떨어져 있다. 다만 평균 9%를 상회하는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역내 최대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우에도 후발개도국 경제의 특성을 나타내며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산업화에 따른 인구집중을 나타내는 도시인구비중의 경우 싱가포르(100%), 홍콩(95.0%) 한국(80.0%), 일본(78%) 순으로 나타난다. 높은 도시인구비중은 환경오염의 집중을 의미하며 환경오염 제거와 방지활동의 수준 또한 높다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이는 GDP 대비 환경시장규모의 크기로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일본(2.1%), 싱가포르(1.8%), 홍콩(1.7%), 한국(1.5%)의 순서로 이들 지역의 상대적 환경시장규모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이들 국가의 환경시장의 성장전망은 여타 국가에 비해 낮게 측정되고 있으며, 이는 이미 환경산업이 상당정도 성숙단계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보다 후진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의 경우, 인구의 도시집중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국내총생산에 대비한 환경시장의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이 높은 GDP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환경시장의 성장률도 여타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이 지역의 환경시장이 역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해 갈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케 해준다.

환경시장의 발전수준에 있어서 보완적 특성을 갖고 있는 동아시아 역내 환경시장은 역내국간 부문별 환경시장 구성비교에 있어서도 다양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동아시아 역내국의 부문별 환경시장구성비와 부문별 성장률을 정리한 <표 II-6>은 중국, 대만, 베트남의 경우 환경장비 및 시설부문의 비중이 국내 환경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스리랑카의 경우 예외적으로 환경자원관리업의 비중이 전체시장의 38%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보여준다. 환경서비스 시장은 역내 모든 국가에서 35%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그 비중은 52% 가까이 나타나고 있다.

부문별 환경시장 성장률에 있어서, 중국은 환경장비 및 설비산업(34.1%) 성장률이 환경서비스부문(26.5%)이나 환경자원관리업(17.0%)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베트남의 경우 환경자원관리업(30.0%)이 환경장비 및 설비업(18.9%)이나 환경서비스업(15.2%)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보인다. 태국은 환경서비스업(10.1%)이 환경자원관리업(9.6%)이나 환경장비 및 설비업(5.4%)에 비해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

다. 이는 역내 국가간에 입구집중을 나타내는 도시화나 제조업생산 기반을 구성하는 산업화의 정도가 다르다는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산업의 성장추세가 비교적 안정화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여겨지는 일본, 홍콩, 한국의 경우에는 부분별 환경시장 성장률에 큰 차이가 없다.

<표 II-6> 동아시아 환경시장의 국별, 부문별 구성 및 성장률

	환경서비스업		환경설비업		환경자원관리업	
	비중('97)	성장'95-'97	비중('97)	성장'95-'97	비중('97)	성장'95-'97
일본	51.9	3.8	22.5	3.9	25.6	3.8
홍콩	46.1	10.1	22.1	11.5	31.8	10.1
말레이시아	42.9	22.4	34.3	25.0	22.9	11.9
필리핀	41.0	14.3	30.8	14.3	28.2	8.9
인도	40.5	13.6	34.6	14.3	24.9	13.0
한국	40.5	13.3	38.2	13.5	21.3	13.2
싱가폴	40.4	12.7	26.3	15.6	33.3	14.6
중국	39.5	26.5	44.0	34.1	16.5	17.0
타이	38.8	10.1	28.9	5.4	32.2	9.6
인도네시아	38.8	13.1	27.6	14.9	33.7	15.8
대만	37.5	11.9	43.4	11.0	19.1	12.7
베트남	35.2	15.2	40.7	18.9	24.1	30.0
스리랑카	35.0	10.5	26.7	14.3	38.3	15.0

자료출처: EBI Report 2000.

동아시아지역시장에 속하는 우리나라 환경시장의 특징은 여타 역내국가 시장에 비해 환경장비 및 설비업과 환경서비스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는데 있다. 이점은 역내 개발도상국의 환경시장이 성장초기 단계로서 환경장비 및 설비부문의 확장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 환경산업의 해외 진출가능성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과 우리나라 다음으로는 대만이 가장 큰 국내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중국도 빠른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 가운데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1.2.4 기타: 중남미 및 동구 시장

중미지역의 환경시장은 아직 미형성 단계에 있다. 수질문제가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로 등장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들이 적절한 하수처리망을 갖추고 있지 않

다. 산림의 남벌과 그에 따른 토양침식이 또한 중요한 환경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생물다양성보호를 위한 산림복구(코스타리카와 쿠바), 연안 환경보호 프로그램(바베이도스) 등이 진행되고 있다.

환경보호활동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부족은 이 지역 환경시장연구의 큰 장애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역내 국가 규모가 작다는 사실로부터 중미지역의 환경시장 잠재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 지역 시장의 성장은 향후 진전될 산업화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쿠바와 과테말라의 시장잠재력이 여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남미지역 전체 환경시장의 잠재력은 상당히 큰 것으로 판단되나, 환경수요의 대부분이 정부공급을 통해 충족되고, 해외투자 유입이 부진하다는 점에서 역내 환경시장에 대한 민간의 역할은 제한되어 있다. 또한 환경법규 및 관리체계의 미비도 시장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나,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의 상황은 여타국가에 비해 나은 편이다. 관련 연구결과에 따르면, 1992년 기준 남미지역의 환경시장규모는 약 20억 달러에 이르며, 매년 10% 이상의 성장을 지속하여 2010년에는 약 150억의 시장규모를 갖게될 것으로 추정된다.¹³⁾ 하수처리장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에 관련된 환경산업 부문이 성장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도시 및 산업폐수 처리시설 강화를 통한 수질개선, 산업 및 교통유발 대기오염통제를 통한 대기질 개선 문제가 정책우선순위에 있다. 음용수 공급 및 위생처리시설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며, 역내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대기오염 개선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법제의 정비가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동구권 환경시장의 경우, 체제전환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성장우선정책이 계속되는 가운데,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 지역 산업활동이 비효율적이고, 환경오염 집약도와 화석에너지 의존도가 높다는데 기인한다. 특히 어려운 외환수급 상황은 청정기술 및 효율적 생산기술 개발과 기초 환경오염 처리시설에 대한 충분한 투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유럽의 지정학적 국제관계 변화는 환경정책과 규제기준의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 공적원조를 제공하고 있는 OECD회원국들의 환경개선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유럽연합 가입을 희망하는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에서는 환경질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

13) The Global Environmental Industry: A Market and Needs Assessment, EBI(1996), p. 34.

다. 이러한 변화는 동유럽 지역에 대한 환경재 및 서비스, 그리고 관련 기술의 수출전망을 밝게 해준다. 다양한 양자 혹은 다자간 협력기구들이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 규제, 제도 정립을 위한 공동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환경프로젝트를 위한 재정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소요 자원 부족이 성장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역내국 환경법규의 투명성 결여는 종종 해외 투자자들의 적절한 의사결정에 장애요인이 된다. 다자협력기구인 EBRD(European Bank for Restructurion and Development)는 발트해, 다뉴브강 연안의 지역 환경문제와 역내국 지자체의 환경기반시설, 용수공급 및 하수처리장 구축과 같은 환경사업 부문에서 프로젝트 중심의 환경보호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2. 유형별 환경서비스 교역 장벽

제출된 양허계획서를 중심으로 살펴 본 유형별 환경서비스 시장진입에 대한 주요 장벽으로는 국경간 공급과 해외 구매, 투자/소유에 의한 국내의 상업적 주재의 설치, 서비스 공급자의 입국과 일시적 체류, 개인적인 외국 투자와/또는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적과 거주지 요구, 전문가와 사업에 대하여 등록과 면허를 요구, 독점과 배타적 공급자들, 보조금, 지적 재산권 보호 문제, 그 외 “기타 관련 조치들(예를 들어, 토지사용의 제한, 광고 등)” 등이 확인된다.¹⁴⁾

2.1 국경간 공급과 해외소비 규제

현재까지 서비스 일반의 국경간 공급 제한에 대한 관심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서비스 교역의 특성상 이들 공급 양식이 전체 서비스 공급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국경간 서비스 공급이 일반적으로 원격간 대량통신 매체, 예를 들어,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사용한다는 관점에서 국경간 공급을 실질적으로 엄격히 규제하거나 완전히 금지하기가 어려운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급속히 성장해 온 인터넷 전송망은 정보, 보고서, 디자인

14) COM/TD/ENV(98)128 참조.

등의 국가간 공급을 위해 개방된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활용됨으로써 특정형태의 국경간 서비스 공급 영역을 비약적으로 확대해 왔다. 여기에는 인터넷에의 접근을 차단하거나 고가의 접속감시 수단설치 등의 어려움으로 인터넷을 통한 국경간 서비스 공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완전히 금지시킬 수 있었던 정부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 공급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법규가 몇몇 정부당국에 의해 도입되고 있는데, 이는 주로 국유 전화통신망을 근간으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인터넷 서비스 공급권을 유지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체간의 자료교환에 엄격한 필요요건을 설정하는 제약을 통해 나타난다.

환경관련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에 대한 장벽은 각 국의 시장양허계획을 통해 상세히 파악된다. 이들 장벽은 국경간 공급 혹은 해외소비 방식의 서비스 교역에 대한 유보조건 혹은 양허없음(unbound) 표기를 통해 확인된다. 양허계획 상의 비양허표기가 반드시 해당 부문에 대한 제약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란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¹⁵⁾ 회원국 가운데 일부는 해당 방식의 국경간 서비스 공급이 기술적인 이유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이를 양허없음(unbound)로 표기하는 경우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회원국 양허계획에 기재된 주요 제한사항으로는 서비스가 해당 지역에 등록된 공급자에 한하여 제공될 수 있다는 제한¹⁶⁾, 또는 국경을 넘어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항상 해당 서비스 수입국내에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를 해야한다는 제한¹⁷⁾ 등을 들 수 있다.

<표 II-7>과 <표 II-8>은 국경간 공급 및 해외소비에 관련된 주요 환경서비스 교역제한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표 II-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핵심서비스의 국경간 공급형태에 제한없음(no restrictions)을 표기한 국가는 미국을 포함한 7개국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정부부문에 의한 서비스 조달, 혹은 컨설

15) 국경간 공급이 “양허없음(unbound)”으로 남아있었던 이유로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경우에 특정 부문이 아직 스케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또는 그 부문을 포함하는 대신에, 해당국이 기술적 활용가능성과 관련된 국경간 서비스 공급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와, 단순히 이들 서비스(예를 들어 정부 계약 서비스에 관하여)에 대한 양허를 하지 않은 경우이다.

16) 여기서 서비스는 실제로 기 설치된 전문 계통이나 제휴협정 등을 통하여 공급될 것이 요구된다.

17) 이는 서로 다른 지역에 위치한 지사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팅과 같은 일부 민감한 부문은 제외하고 있다. EC 12개국과 나머지 29개국은 국경간 공급양식에 대한 양허계획을 제출하고 있지 않다. 연구개발(R&D)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형태에 대해서는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5개국이 완전양허를 표시하였고, EC 12개 국 외 24개 국가는 이 부문을 양허하지 않았다. 기술점검과 분석서비스의 경우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11개 국가가 해당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에 대하여 ‘제한 없음(no restrictions)’을 명기하였으나, EC와 나머지 22개국은 이 부문에 대한 양허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

<표 II-7> 환경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에 대한 양허현황 분석(I)

	제한없음(No restrictions)	양허없음(Unbound)	일부 제한(Some restrictions)
핵심 환경서비스의 국경간 공급	캐나다, 미국(정부에 의한 환경서비스 계약 제외, 이것은 양허없음(unbound)), 폴란드(소음과 대기오염 서비스에 대하여), 헝가리(쓰레기 처리와 공중 위생 서비스에 대하여), 한국(“기타 환경서비스”에 대하여만(즉, 소음, 대기오염, 경관보호 서비스 등)), 남아프리카와 태국(“환경 자문”에만 해당).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칠레, 체코슬로바키아, 이집트, EC(12개국과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홍콩차이나, 헝가리(하수와 “기타 환경서비스”), 아이슬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폴란드(하수, 쓰레기 처리, 공중위생 서비스), 슬로바키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환경 자문”이외에 대하여), 스위스, 태국(“환경 자문”이외에 대하여), 터키.	
연구개발(R&D)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	오스트리아, 헝가리, 아이슬란드, 멕시코, 스위스.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캐나다, 칠레, 체코슬로바키아, EC(12개국과 핀란드, 스웨덴), 이집트, 홍콩차이나, 인도,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모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폴란드,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남아프리카, 태국, 미국.	
기술 점검과 분석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	오스트리아, 캐나다, 핀란드, 헝가리, 아이슬란드, 일본(제한된 정의(limited definition)), 한국(제한된 정의(limited definition)),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남아프리카, 스위스.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칠레, 체코슬로바키아, EC(12개국과 스웨덴), 이집트, 홍콩차이나, 인도,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모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폴란드,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남아프리카, 태국, 미국.	

자료출처: COM/TD/ENV(98)128

건축·엔지니어링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은 EC 12개국 외 9개국이 미개방상태에 있고, 미국을 비롯한 15개국은 개방상태에 있다. 일부 양허국의 세부제한 사항들은

현지 공급자 자격요건 요구, 현지 법인주제 요구, 현지 등록 전문가에 의한 작업인증과 보증 요구, 거주요구, 현지건축자를 위한 특정규모 이상의 건축계획 관련규정, 지방정부의 관례와 국적 요건, 일시적 현지체류 요건 등의 7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건설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에 대해 아르헨티나 외 4개국이 개방상태에 있으나, 나머지 EC 12개국과 기타 24개국은 미개방상태에 있다.

<표 II-8> 환경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에 대한 양허현황 분석(II)

	제한없음 (No restrictions)	양허없음(Unbound)	일부 제한 (Some restrictions)
건축·엔지니어링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캐나다, 체코슬로바키아, 핀란드, 헝가리, 아이슬란드, 한국(엔지니어링 서비스), 멕시코, 뉴질랜드(건축 서비스), 노르웨이, 스위스, 남아프리카, 스웨덴, 미국	브라질, 칠레, EC 12국, 이집트, 홍콩차이나, 인도, 인도네시아, 모로코, 필리핀, 폴란드.	(i) 지역 공급자의 요건을 규정(오스트레일리아), (ii) 상업적 주제 요구; 일본(건축과 엔지니어링 서비스), 한국(건축 서비스), (iii) 지역에 등록된 전문가에 의한 작업의 인증과 보증; 말레이시아, 뉴질랜드(엔지니어링 서비스에 대하여), (iv) 거주요구; 싱가포르(엔지니어링 서비스); (v) 지역 건축자를 위해 마련된 특정 규모 이상의 건축 계획의 규정(남아프리카); (vi) 지방 관련 정부의 관례와 국적 요건(스위스, 1개 현에 대하여), (vii) 일시적인 지역소속 요건(터키).
건설과 관련된 엔지니어링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	아르헨티나(도시 공학 제외), 캐나다, 핀란드, 아이슬란드, 한국(즉, 1999까지 허가된 이들 서비스에 대한 자문), 노르웨이.	아르헨티나(도시 공학),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칠레, 체코슬로바키아, EC(12개국과 오스트리아, 스웨덴), 이집트, 홍콩차이나,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로코, 뉴질랜드, 폴란드, 필리핀, 슬로바키아, 남아프리카, 태국, 미국.	

자료출처: COM/TD/ENV(98)128

2.2 법인설립과 외국인 투자 규제

환경서비스 교역에 대한 최근의 WTO 및 UNCTAD 사무국 조사 보고서는 환경

관련 지원서비스(supporting environmental services)의 국경간 공급이 인터넷 전송망 등을 통해 용이하게 전달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대부분의 환경핵심 서비스들은 서비스의 실체적 공급자인 “자연인”의 주재를 수반하는 상사법인의 주재를 통해 공급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서비스 공급방식에서는 관련 서비스 부문의 특성(sector-specific features)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일반에 적용되는 규제요건도 중요한 환경서비스 교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들 장벽은 종종 외국인투자승인조건과 외국인 소유, 필요한 법인형태, 특정자산 소유조건, 그리고 영업범위 등에 대한 제한의 형태로 나타난다.

<표 II-9>는 기 제출된 양허계획 상의 환경서비스와 R&D서비스 및 기술검사·분석서비스 등 환경관련 서비스 부문에 기재된 외국기업의 설립/투자에 대한 제한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외국인 투자 일반에 대한 수평적 제한과 건축·엔지니어링 서비스, 건설 및 관련엔지니어링 서비스 부문과 같이 부문별 외국인 투자에 대한 허가요건 사이의 상호관계에는 상당한 국별 편차가 존재한다.

<표 II-9> 법인설립 및 외국인 투자관련 양허현황(I)

	핵심 환경서비스	R&D 서비스
제한없음 (외국인 지분의 참여 한계가 없음)	오스트리아, 캐나다, 체코슬로바키아, 핀란드, 아이슬란드, 모로코.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서가 요건에 대하여는 예외), 헝가리, 스위스.
제한없음 (몇 가지 서비스가 제외된다)	오스트레일리아(“기타 환경서비스(other ES)”는 양허없음(unbound)으로 제외), 노르웨이(하수설비에 대한 공공 서비스, 몇몇 폐기물 서비스에 대한 독점, 차량 연소가스 통제 서비스에 대한 독점, 등은 제외), 슬로바키아(“기타 환경서비스(other ES)”는 양허없음(unbound)으로 제외), 스웨덴(공공 사업 기능은 정부에 의해 소유, 운영되는 것이든, 또는 계약된 것이든 제외됨), 폴란드(소음과 대기 오염 서비스만 해당), 남아프리카(“환경 자문” 서비스만 해당), 터키(“기타 환경서비스(other ES)”는 양허없음(unbound)으로 제외), 미국(정부 계약 서비스는 제외).	오스트리아, 캐나다, 핀란드, 헝가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남아프리카, 스위스.

자료출처: COM/TD/ENV(98)128

EC 12개국(여러 회원국들이 개별 서비스 또는 특정 기업 형태에 대한 유형에 제한을 가지고 있음), 인도(법인 설립에 최고 51%의 외국 지분 상한선을 가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내국인 동업자와의 합작 기업 운영을 요구) 한국(청결 검사와 분석 서비스에 대해서만, 그리고 경제적 필요성 검사를 조건으로), 태국(외국 지분 참여가 49%를 넘지 말아야 할 것을 요구).

<표 II-10> 법인설립 및 외국인 투자관련 양허현황(II)

	핵심 환경서비스	R&D 서비스
제한이 부가된 양허	EC 12개국(다양한 회원국들은 특정 한계를 초과하는 또는 새롭게 민영화된 기업, 공공 편익시설의 투자, 그리고 비거주민에 의한 특정 활동 사업의 설립에 있어서 외국인 참여를 위한 등록 요건을 보유하고 있다).	EC 12개국(여러 회원국들이 개별 서비스 또는 특정 기업 형태에 대한 유형에 제한을 가지고 있음), 인도(법인 설립에 최고 51%의 외국 지분 상한선을 가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내국인 동업자와의 합작 기업 운영을 요구) 한국(청결 검사와 분석 서비스에 대해서만, 그리고 경제적 필요성 검사를 조건으로), 태국(외국 지분 참여가 49%를 넘지 말아야 할 것을 요구).
외국인 지분 한계	태국(일반적 투자 형태의 49% 외국인 지분 참여 한계에서 환경 자문에 대하여 “제한 없음(no restrictions)”, 필리핀(환경서비스에 대하여 양허없음(unbound)이지만, 공공 편익시설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한계를 40%로 유지하고 있음), 말레이시아(환경서비스에 대하여 양허없음(unbound)이지만, 다양한 외국인 투자 상한선과 합자회사에만 해당하는 요건들을 구비하고 있음).	인도(51%의 외국인 지분 상한선을 요구), 멕시코(49% 이내의 외국인 지분 참여 한계 내에서 제한 없음(no restrictions), 인도네시아(자국민 공동출자자와의 합작 기업 운영을 요구)
양허없음(unbound)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필리핀, 폴란드(하수, 쓰레기 처리, 공중위생 서비스에 대하여), 싱가포르, 슬로바키아(“기타 환경서비스”에 대하여), 남아프리카(환경 서비스 자문 이외에 대하여 모두), 터키(“기타 환경서비스”에 대하여); 그리고 정부 환경서비스 기능에 관해서는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캐나다, 칠레, 체코슬로바키아, EC(12개국과 핀란드, 스웨덴), 이집트, 홍콩차이나, 인도,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모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폴란드,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남아프리카, 태국, 터키, 미국.

자료출처: COM/TD/ENV(98)128

2.3 서비스 공급자의 입국과 일시적 체류 규제

서비스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인의 이동에 대한 규제는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의 이민제도와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이 공급방식에 대한 교역장벽도 특정 부

문에 한정된 입국 및 체류요건과 함께, 서비스 공급자 일반에 대한 수평적 제약요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환경서비스를 포함하여 서비스 공급자 개인의 입국과 일시적 체류에 관련된 제한은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별된다. 그 첫째가 고급 간부, 관리자, 임원, 전문가 수준의 사내 전임자와 사업상의 단기 방문객에 대하여 그 입국과 일시적 체류에 대한 특별조건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이다. 다음으로 이들 개인의 입국과 체류에 있어 노동시장심사 또는 전문성심사(skills tests)를 요구하거나, 현지인 직원훈련 또는 정식기술이전과 같은 특정 사업목적 이행, 일정 수준의 파견외국인 대 현지 고용인 비율 유지 등과 같이 특정요건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기 제출된 양허계획에 나타난 관련 진입장벽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i) 사내 전임자와 기타 유사 자격자에 대한 별도의 부과요건이 없는 국가: 오스트리아, 아르헨티나,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한국, 일본, 멕시코, 모로코,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남아프리카, 스웨덴, 스위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비고위급(non-senior) 전문가의 입국은 노동 시장 검사(labour market test)를 조건으로 한다), 캐나다(입국은 전문적인 자격을 조건으로 한다), EC 12개국(두 회원국이 특정 산업, 상업 그리고 기술적 활동에서 외국인의 입국에 대한 승인과 거주주소를 요구한다), 미국(입국은 자격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문직에 해당하는 면허 요건을 조건으로 한다). 홍콩차이나는 GATS 양허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특정 조건이나 요구가 없는 개방된 입국/체류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EC와 미국 캐나다 등의 선진국에서는 입국자의 전문적인 자격, 면허요건 등을 제한하여 제3국으로부터의 비전문 인력의 노동시장 유입을 견제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ii) 서비스 공급자의 입국과 일시적 체류의 승인에 특정요건을 부과하고 있는 국가: 서비스 공급자의 입국과 일시적 체류의 승인에 대하여 특별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는 국가와 그 부가 조건들을 <표 II-1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으로써, 자국 시장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성 검토, 경제적 수요 심사와 전체 고용인의 일정비율을 자국민으로 해야한다는 고용부가조건, 지속투자 요건 등의 조건을 유지하고 있다.

<표 II-11> 자연인 이동과 체류에 대한 양허 현황

국가	양허조건
브라질	기술자와 고도의 전문가에 대하여 승인과 노동 시장 검토가 요구됨.
칠레	사내 전임자에 대한 거주지 요건과 외국 회사가 칠레 현지인 사원을 특정 수만큼 고용해야하는 요건.
이집트	외국 기업은 사원의 이집트인을 9/10 고용할 것을 요구받는다.
인도네시아	외국 관리자와 기술 전문가에 대한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허가.
말레이시아	지역 사원의 운영과 훈련에 대하여 두 명의 외국인 전임자에 한하여, 사내 전임자만 허가.
필리핀	현지인과 훈련 요건이 활용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 허가된다.
폴란드	외국인 운영자와 전문가에 대한 노동 시장 검토.
싱가포르	외국 기업의 적어도 한 명에 대한 거주지 요건, 지역 운영자와 현지 대리인 요건.
태국	사내 전임자의 허가는 요건(고용 창출, 기술 이전, 지속적인 투자 수준)의 수행을 조건으로 한다.

자료출처: COM/TD/ENV(98)128

2.4 서비스 공급자의 국적 및 거주지 관련 제한

일부 회원국에서 확인되는 국적과 거주지 관련 진입장벽은 외국인 투자에 의해 설립된 상사법인은 물론 전문 서비스 공급자 개인에 의한 서비스 공급에 관련된 다. 이들 국적 및 거주요건 관련 규제들은 외국 기업의 임원과 개별 이사에 대한 요건, 전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요건, 현지 인원 고용과 관련된 국적 요건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i) 외국 기업의 임원과 개별 이사에 대한 요건:

- 캐나다 : 연방에 가입된 기업의 임원의 과반수는 캐나다 시민이거나 캐나다에 상시 거주하여야 한다.
- 아이슬란드 : 국내 기업의 관리자와 이사회 의 과반수 멤버는 아이슬란드에 주소를 가져야 한다. 상무성(the Ministry of Commerce)에 의해 이 규정의

예외가 가능하다.

- 노르웨이 : 토지 매입과 임원진(board of directors)에 대한 거주지 요건(residency requirements)을 가지고 있다.
- 필리핀 : 국적 요건을 상·하수도 서비스를 포함한 공공 편익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체들의 임원과 경영자에 적용하며, 이사회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외국인의 참여는 그들이 지닌 그 법인의 지분에 비례하여 제한된다.
- 싱가포르 : 싱가포르에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지역 관리자를 고용해야하며, 그 관리자는 싱가포르 시민으로 영구 거주민이던가, 고용 비자를 보유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외국 기업의 지사는 적어도 두 개의 지역 대리점을 보유해야 한다.
- 슬로바키아 : 국적 요건이 Commercial Register에 외국인 투자자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허가 등록된 자연인에게 적용된다.

ii) 전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국적 및 거주지 요건

- 오스트레일리아 : “등록된 건축사(registered architect)”로써 활동하기 위한 면허를 획득하는데 12개월의 거주와 작업 경력을 통한 등록이 필요하다.
- 체코슬로바키아 : 비록 경우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시민권과 거주지 요건이 건축과 엔지니어링 서비스의 공급에 적용된다.
- EC 12개국 : 국적 조건은 한 회원국에서의 특정 건축 서비스 공급에 적용되며, 여러 나라에서는 건축 서비스, 엔지니어링, 통합 엔지니어링, 도시 계획과 조경 건설 서비스, 기술 검사와 분석 서비스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여러 회원국들은 공공 법의 범위에 포함되는 일부 엔지니어링 서비스와 건축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임원들에 대하여 거주지 요건을 가지고 있다.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등은 거주지 요건을 엔지니어링과 건설 회사의 임원진 과반수에 적용하며, 지사와 자회사의 관리자에게도 거주지 요건을 적용하고, 일부 국적 요건 또한 적용한다(예를 들어, 오스트리아는 건축 엔지니어링 회사의 지분 중 51%를 국적 자격이 있는 전임자가 보유해야한다).
- 헝가리 : 항구적인 거주지 요건이 건축, 엔지니어링, 도시 계획과 조경 서비스에 적용된다.
- 멕시코 : 호혜주의(reciprocity)에 따라, 국적 요건이 엔지니어링 서비스 공급, 거주지 요건이 건축 서비스의 공급에 적용된다.

- 뉴질랜드 : 특정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뉴질랜드에 주로 거주하는 전문가로 제한된다. 하지만, 외국 기업에 대한 지방 거주지 요건은 없다. “건축사” 자격을 위한 등록시에는 선행 거주(prior residency)가 요구된다. 등록이 되기 위해서, 엔지니어는 반드시 뉴질랜드에 “상시 거주(ordinarily resident)”해야 한다.
- 노르웨이 : 건축 서비스 공급을 위해서는 건축 계약자와 공사를 맡은 책임자가 적어도 1년 노르웨이에 거주해야 하며, 계속 노르웨이에 거주해야 한다.
- 폴란드 : 건설 전문가를 포함하여, 일부 전문적 서비스의 공급에 대해서 시민권이 요구된다.
- 싱가포르 : 건축과 엔지니어링 서비스 공급에 대하여, 합작 또는 동업이 싱가포르에 상시 거주하는 등록된 진입자의 관리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 슬로바키아 : 건축, 도시 계획, 조정 서비스는 인가받은 건축사에 의한 자연인과 법인이 공급할 수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시민권과 거주지 요건을 포함하는 것이지만,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자연인과 법인은 승인 받은 엔지니어에 의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공급만 할 수 있다. 이는 시민권과 거주지 요건을 포함한다.
- 스위스 : 국적과 거주지 요건은 회사와 지사의 특정 형태에 적용된다. 어떤 주에서는, 건축과 엔지니어링 서비스 공급에 대한 등록 요건에 거주지 요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적 요건은 특정 엔지니어링 서비스에 적용된다.
- 태국 : 건축사 또는 엔지니어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적 요건이 적용된다.
- 터키 :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시민권이 요구된다.
- 미국 : 여러 주와 군에서는 엔지니어링과 건축 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면허 발급에 대하여 시민권과 거주 주소를 요구한다.

iii) 현지인 고용 관련 국적 요건

- 브라질 : 3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에서는 전체 급료지불 총액의 2/3이, 그리고 2/3의 고용인이 브라질 국적을 가져야 한다. (비)특성화된 활동에 대해서는 외국 기업이 매 3명의 외국인 고용시에 최소 2명의 브라질 현지인을

고용해야 한다.

- 칠레 : 최소 85%의 지역 현지인 고용이 요구된다.(종업원 15명 이하의 기업은 제외) 한편, 국적 요건은 종업원 25명 이상의 기업의 현지인 고용에 적용된다.

2.5 사업자와 전문서비스 공급자의 등록·면허 관련 규제

사업자와 전문서비스 공급자의 등록·면허 관련 규제는 일반적으로 개별국의 조세와 금융 규제제도와 관련되어 있다. 동 규제제도는 대부분 외국인 사업체의 등록요건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 부문에서는 소비자 보호와 공중보건 또는 안전에 대한 고려에서 외국인 사업체와 전문가에 대한 면허요건을 정하고 있다. 면허 부여가 일정요건에 대한 심사 후 승인 또는 한정된 면허수량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는 경쟁으로부터 해당 지역 토착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 교역장벽으로 이해되고 있다.

외국계 전문 서비스 공급자의 영업면허 취득요건은 보통 외국에서 획득한 자격증과 경력에 대한 인정절차를 요구한다. 종종 외국발행 면허나 전문자격은 해당 지역의 자격증과 동등하게 인정될 수도 있고, 지역시험 통과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표준화되지 않은 면허부여 과정, 과도한 제출서류 요구, 그리고 자의적이고 불투명한 승인절차 등은 비록 기술적 관점에서 차별적이지는 않다 하더라도, 사업 착수에 상당한 추가적 비용증가를 가져오고, 환경적 우선순위에 효과적으로 반응하는데 장애를 가져오는 것으로 여겨진다.

서비스 양허계획을 근간으로 한 회원국 제출자료를 토대로 구성한 사업자와 전문서비스 공급자의 등록·면허 관련 규제에서 일부국가들이 전문자격에 대한 면허(professional licensing)요건 보다는 업종별 면허(business licensing)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문자격에 대한 면허규제는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캐나다, EC 15개국, 홍콩차이나, 아이슬란드,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태국, 터키, 미국 슬로바키아, 스위스,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업종별 면허(business licensing)요건은 캐나다, 체코슬로바키아, 홍콩차이나, 멕시코, 폴란드, 터키 (이상 외국인 투자·상업적 주체의 등록·신고), 아이슬란드 (외국인 회사에 대한 허가/면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외국인 기업의 면허는 특정 “통제 당국”에 의한 외국인 투자의 승인으로부터 발생) 등에서 확

인된다.

2.6 독점과 배타적 공급에 의한 규제

서비스 공급에 대한 독점과 배타적 권리는 관련법을 근거로 연방소유 또는 연방 운영 기업이나 민영기업에 부여되거나, 명확한 정부의 개입 없이도 민간부분의 사회적계약이나 배타적 사업운영 결과로 발생한다.

협상과정에서 개별 회원국들에게 각 서비스 양허부문에 대하여 독점과 배타적 서비스 공급으로 인한 규제 현황을 제출토록 요구되었으나, 대다수의 개발도상국이 환경서비스에 대한 양허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탓으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 일부 추산결과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환경서비스의 약 50%정도가 정부부문 활동과 관련이 있으나, 대부분의 개도국에서 관련 비중은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독점에 의한 진입장벽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보다 높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기타 활용 가능한 정보에 대한 분석 결과, 환경서비스-전문 독점, 배타적 공급자 또는 민간 카르텔이 있는 국가들은 다음과 같았다.

- 칠레 : 위생처리 서비스, 물처리 서비스, 등에 독점이 존재한다.
- 이집트 : 경쟁법(competition law) 부재에 따른 카르텔, 독점, 반경쟁적 시장 행태 등이 확인된다. 정부는 1998년 반트러스트법 도입을 검토하였다.
- EC : EC 12개 회원국에서, 국가수준 또는 지역수준의 공공편익 시설로 간주되는 서비스는 공공독점 또는 개인운영자에게 배타적 권리가 부여될 수 있다. 공공편익시설은 환경서비스, 그리고 기술검사와 분석서비스와 같은 부문에 존재한다. 건설·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에 대하여, 두 회원국이 일부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에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핀란드에서 독점은 물공급을 포함하여, 몇몇 공공 편익사업에 존재한다. 스웨덴에서는 자동차와 트럭에서 배출되는 가스의 통제 서비스에 대하여 정부의 독점이 존재한다.
- 헝가리 : 수처리서비스 부문에 공공독점이 확인된다.
- 인도 : 국가와 개인소유의 인도기업은 비효율적인 법규제로, 반경쟁 행태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공정무역과 규제당국에 의한 독점규제가 선택적으로 적용된다는 보고가 있다.
- 노르웨이 : 일부 폐기물처리 부문에 독점상황이 존재한다. 정부소유 독점이

자동차와 트럭의 배출가스규제 서비스에 존재한다.

- 슬로바키아 : Banská시 수도 및 폐기물부문의 정부독점이 있다.
- 스위스 : 일부 주에서 물공급을 포함한 특정 “편익시설”에 독점이 존재한다.
- 터키 : 공공시설을 포함, 일부 서비스부문에 개인투자 제한이 있다.

2.7 정부 보조금 지급에 의한 차별

서비스부문에 대한 정부 보조금 관련 진입장벽은 <표 II-12>와 같이 정리된다.

<표 II-12> 국별 보조금 관련 스케줄 내용

보조금 관련 스케줄	해당국가
보조금과 관련된 “수평” 스케줄을 기입한 국가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캐나다, EC,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헝가리, 아이슬란드,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노르웨이, 폴란드, 스위스, 미국.
보조금과 관련된 스케줄 기입이 없는 국가	아르헨티나, 칠레, 체코슬로바키아, 이집트, 홍콩차이나, 인도, 인도네시아, 모로코,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남아프리카, 태국, 터키.
“양허없음(unbound)”으로 기입한 국가	브라질, 헝가리, 말레이시아(국가개발경제정책의 목표로 설립된 제도와 신탁 회사 Bumiputera status 회사에 부여된 특별한 선호와 조치에 대하여), 멕시코(멕시코 국민이 소유한 소형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하여), 노르웨이(처음 두가지 공급형태에 대하여), 폴란드(모든 부문에 대하여), 스위스(모든 부문에 대하여, 조세 인센티브와 조세 신용(tax credits)을 포함), 미국(사회적, 경제적으로 불리한 집단의 구성원에 대해 허용된 조치에 대하여).
연구 개발을 위한 보조금에 대하여 “양허없음(unbound)”으로 기입한 나라들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EC, 핀란드, 스웨덴, 아이슬란드, 일본, 한국, 멕시코, 노르웨이, 미국.
보조금 관련 기타 유형	캐나다(공공 부문 서비스 공급 또는 보조금 지급이 허용된다).

자료출처 : COM/TD/ENV(98)128

보조금의 진입장벽기능에 대한 논의는 상품교역에 대한 WTO 자유무역규정에 대한 분석에서 출발한다. 일반적으로 국내 보조금은 외국상품의 국내시장 경쟁력

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무역을 왜곡시키는 시장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특히 수출보조금은 경쟁국 시장은 물론 제3국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규제를 받는다. 서비스 교역에 대해서도 서비스협상은 보조금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였으나, 뚜렷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환경서비스 부문의 보조금 관련 이슈는 ‘환경과 청정 기술 연구 발전을 위한 보조금 지급’, ‘환경 정책 프로그램하에서 사회기반 시설을 강화하기 위한 보조금 제공’ 그리고 ‘공공자금의 지원을 받는 편의 시설에의 교차-보조금(cross-subsidies)’ 등이다.

2.8 토지 소유 및 기타 규제

환경서비스 양허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타 교역장벽으로는 외국인 회사의 상업용 토지의 취득 제한과 외국인이 생산한 광고의 사용에 대한 제한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외국인 회사의 상업용 토지의 취득 제한은 수평적(horizontal) 규제로 취급된다.

<표 II-13>은 각 해당국별 제한 요건을 유형별로 정리한 것이다.

외국인의 상업용 토지 취득 규정은 대부분 “수평적으로(horizontally)”으로 수행되며, 이들은 거주용 부동산과 토지, 상업용 건물에 대해 적용된다.

<표 II-13> 유형별 외국인의 상업용 토지취득 제한

상업용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제한과 승인 요건	나라의 특정 지역 또는 토지 유형에 있어서의 제한	금지됨(Prohibited)	양허없음(Unbound)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체코슬로바키아, EC(12개국과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이집트, 아이슬란드,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농업용 토지에 대하여),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위스, 미국.	칠레(국경 근처와 해안 토지), EC 12(특기(特記)하지 않은 지역(certain unspecified regions)), 말레이시아(농업 지역), 미국(사막과 연방 소유지역).	인도네시아(토지와 건물은 합작회사를 통한 대여의 형태만 허용), 필리핀(필리핀 시민 또는 필리핀 시민권 소지자에 의하여 최소 60%의 자본이 소유된 주식회사만이 토지를 보유할 수 있다.), 태국(토지 임대만 가능).	헝가리(모든 외국인 취득), 이집트(자유 지역의 토지 취득), 한국(외국인 개인에 대하여, 승인에 의한 임대 허용).

자료출처 : COM/TD/ENV(98)128

외국인이 생산한 광고물에 대한 사용 제한에 있어서 외국시장에 설립된 환경서비스 기업이 해당시장에서 가지는 광고권은 중요한 상업적 경쟁요소의 하나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한은 일정한 시장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광고활동은 중요한 서비스 교역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음향과 문자가 지역 언어로 번역되어 명백한 상업적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외국의 영상이나 그래픽 사용에 대한 제한은 기업의 광고물 생산에 있어서의 규모의 경제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외국인이 생산하는 광고물에 지역 광고매체에 방영되는 광고에 상업방송이 허용되는 배우를 사용해야한다는 제한 또는 외국에서 생산된 광고물의 방영시간을 제한하는 행위는 교역장벽으로 인식된다. 일부 국가에서 적용되고 있는 광고제작에 자국 자본 사용요건도 서비스 교역장벽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¹⁸⁾

18)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캐나다, EC 12개국, 한국, 말레이시아 등.

III. 주요국별 환경규제 및 제도적 진입장벽

본 장은 구체적인 시장개방요구서 작성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해당 국가의 환경서비스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환경관련 규제 현황과 개방요구 대상이 되는 제도적 진입장벽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조사 대상국으로는 성숙단계의 환경서비스 시장을 보유한 주요 선진 6개국(미국, 캐나다, 일본, 스위스, 호주, EU)과 환경서비스 수출 대상국으로 부각되고 있는 동아시아 6개국(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및 각 지역시장을 대표하는 3개국(폴란드, 멕시코, 브라질) 등 15국의 환경규제 현황 및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적 진입장벽을 정리하였다.¹⁹⁾ 일부 개도국의 경우, 특별한 환경규제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은 이들 국가들에 아직 적절한 환경규제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때문으로 풀이된다. 선진국 환경규제에 대한 조사결과는 향후 이들 개도국에 등장하게 될 환경규제의 개략적인 전망과 이에 결부된 환경수요를 추정하는 유용한 근거를 제공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1. 미국

1.1 환경관련 규제

미국은 환경단체 및 의회압력으로 인해 다자차원의 ‘환경과 무역 연계논의’에 적극적일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목적의 독자적 무역규제조치를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다. 1994년 2월 미행정부는 일방적 무역규제조치의 사용이 가능한 4가지 경우로, 국제환경협약이 무역규제조치를 요구할 경우, 제3국의 환경파괴적 행위가 미국영토에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을 경우, 과학적으로 입증된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파괴행위, 과학적으로 입증된 국제환경보호기준의 실효성을 반감시키는 행위를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자국의 앞선 환경기술을 근거로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기술규정을 제정·보완하여 제품관련 환경요건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 민간 및 정부에서 제정한 표준만도 약 40,000여 개에 이르며, 대략 4,000개의 기관에서 시험, 인증,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 ‘외국의 통상환경’, 외교통상부, 2001.

1.1.1 새우 수입 금지

미국은 환경단체들의 바다거북 보호조치 주장에 따라 1996년 5월 1일부터 바다거북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조업하는 국가로부터의 새우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으로 새우를 수출하려는 국가는 미국 국무성으로부터 바다거북 보호장치(Turtle Excluder Devices: TEDs) 설치 등 미국이 정한 바다거북 보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승인을 받거나, 조업지역이 바다거북 서식지가 아니라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미국은 매년 새우수출 가능국가를 인증 발표해 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가 수출하고 있는 새우는 바다거북 보호장치를 설치하고 어획한 원양 새우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으나, 국내산 새우 수출의 경우 미 국무부의 인증이 필요하다.

1.1.2 염화불소계 냉매(CFC) 등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경고라벨 부착

미국은 1993년 5월부터 냉매(CFC: 염화불화탄소) 등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경고라벨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부착대상은 CFC 등 오존층 파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저장 혹은 운송하고 있는 용기, 또는 동 물질이 사용되는 제조과정을 통해 생산된 제품이다. 경고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제품은 미국내에서의 유통이나 수입통관이 금지된다.

1.1.3 기업 평균 연비(The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CAFE) 규제

미국은 「1975년 에너지정책 및 보존법(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 of 1975)」을 제정하여 자동차 제조회사 및 수입회사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의 평균연비를 의무화한 기업평균연비(CAFE) 규제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보다 적은 양의 가솔린을 소비하는 자동차를 만들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배출가스의 감소를 통해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자동차를 생산, 수입 판매하는 자동차 업체의 경우 미국내 판매시 자사 자동차 평균연비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나, 자동차 생산 또는 수입이 금지되지는 않는다. 이 규제는 국산차와 수입차를 구별하여 각각 별개로 평균연비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동종상품을 차별하고 있다는 점에서 GATT 제20조 (g)항에서도 정당화되지 않고 GATT 제3조 4항 위반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CAFE 규제는 개별차량모델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한 자동차업체의 전 차량모델에 대한 가중평균

연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3국에 대해 차별적이라는 이유로 EU에 의해 GATT에 제소되기도 하였다. 패널은 1994년 5월 미국의 동 규정이 GATT원칙에 위반된다는 판정을 내린바 있다.

1.1.4 대기정화법(Clean Air Act)

대기정화법은 1963년에 제정되어 1970년, 1977년, 1990년에 개정되었다. 1990년 개정법은 자동차 배기가스중의 탄화수소(HC) 배출량을 종전의 1마일당 0.41g에서 0.25g으로, 질소산화물(NOx)도 1.0g에서 0.4g으로 감축하여, 이 기준을 1994년형부터 신규 운행 차의 40%에 적용하고 1996년형부터는 이를 전체 신규 운행 차량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1.5 환경영향평가제도

미국은 1962년에 「국가환경정책법(NEPA :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을 제정하여 세계최초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는 「국가환경정책법 시행규칙」에 의하고 있다. 이들 법규들도 인간환경의 질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칠 법안의 제출 및 그 이외 주요한 연방정부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평가서를 작성해야할 활동, 환경영향이 거의 없는 것에 대한 기준은 각 연방기관이 정하고 있다. 평가서에 환경에 대한 영향 및 대체안 등이 들어 있어야 하며, 평가항목을 정하기 위한 선정절차(scoping)가 개별 안전을 대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평가실시주체는 연방정부기관이나, 신청을 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먼저 간이환경영향평가서(EA)를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세한 환경영향평가서(EIS)를 작성하며, 평가서안은 법적 권한 및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정부기관과 환경보호청(EPA)의 심사를 받아야한다. 한편, 평가항목 선정절차 등 초기단계에서 필요에 따라 주민참여가 추진되고, 평가서안은 회람되어 주민의견이 청취되며, 필요시에는 공청회도 개최되어야 한다.

1.2 투자진출상의 제한

해외에서 미국으로의 투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우나 예외적인 규제가 존재한다.

예외적인 외국인투자 규제분야는 통신, 에너지, 운송, 국가안전보장 관련 분야이다. 대미 투자 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를 이유로 한 규제다. 이는 1988년 「종합무역법」 5021조(Exon-Florio Amendment)에 의거하여 행해지고 있다. 동 규정은 외국인이 관여하는 인수 및 합병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1.3 정부조달 시장의 장벽

미국의 연방구매는 「연방구매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FAR)」에 따른다. 동 법규의 테두리 내에서 각종 분야별 법규와 정책들이 채택 운영되고 있다. 「연방구매규정」에는 외국상품의 구매에 관한 규정들도 포함되어 있는 데, 미국산 구매정책(Buy American) 관련 규정이 중추를 이루고 있으며, 국제수지 운용을 위한 외국산 구매제한 규정이 보완적으로 도입되어 있다. 미국산 구매정책이 주로 미국내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구매되는 외국 물품에 대한 규정인데 비해, 국제수지운용정책관련 구매제한은 미국외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구매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 적용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미국산 구매정책 규정은 연방정부 기관들이 공공목적으로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때 미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은 자국산 우선 구매정책에 의해 외국물품의 구매를 제한하고 있지만 상호간에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하기로 합의한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국가의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과 차별을 두지 않는다. 다만 동 협약은 정부조달협정을 적용하기로 양허한 기관이 일정 규모이상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할 때 적용된다는 점에서 제한요소는 잔존하고 있다. 또한 WTO 「정부조달협정」을 적용받는 주는 총 50개 주중 37개 주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13개 주에서는 아직도 미국산 구매정책(Buy American Policy)이 유지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의 조달시장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²⁰⁾

그밖에, 건설수주와 관련하여 보증보험채권(Surety Bond)이 실질적인 제한 요인

20) 정부조달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13개 주 : 알라바마, 알래스카, 조지아, 인디애나,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노스 캐롤라이나, 노스 다코타, 오키와, 사우스 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사금액의 100%를 예치하여야 하는 보증보험채권 발급시 미국내 실적과 신용상태만을 인정함에 따라 대규모 공사 수주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정부조달협정 제2조 제2항(비차별원칙), 제3조 제1항(내국민대우) 위반 여부가 제기될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 또한 최근 한국기업의 신용도가 저하되면서 본사 또는 은행의 지불보증을 요구하거나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2. 캐나다

2.1 환경관련 규제

캐나다는 환경문제에 관한 범국가적·체계적 통제장치를 마련키 위해 1989년 캐나다환경보호법(CEPA)을 제정하였으며, 매년 동 법의 운영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또한, 1990년 3월 환경보호 및 산업관리 종합 마스터플랜으로 환경계획(Green Plan)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2.1.1 염화불소계 냉매(CFC)사용 규제

캐나다는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거 오존층파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1994년 캐나다 「환경보호법」 하위법령으로 「오존파괴물질에 관한 규정(the Ozon-depleting Substances Regulation)」, 「오존파괴물질 제품에 관한 규정(the Ozon-depleting Substances Products Regulation)」 등 두 가지 법령을 새로이 제정하였다. 오존파괴물질에 관한 규정은 1994년 6월 2일 시행되었으며, 오존파괴물질의 생산 및 수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오존파괴 물질중 New Halon은 1994년 1월 1일, Carbon Tetrachloride는 1995년 1월 1일, CFC 및 Methyl Chloroform은 1996년 1월 1일, Methyl Bromide는 2001년 1월 1일, HCFCs는 2030년 1월 1일부터 사용 및 판매를 금지토록 예고되고 있다.

「오존파괴물질 제품에 관한 규정」은 1990년 8월 28일 공포되어 1994년 6월 2일 수정되었다. 동 규정은 CFC를 사용하여 생산된 Plastic foam 포장용기와 10kg이하의 CFC를 함유하고 있는 압축용기의 생산, 수입, 판매 및 주문 등을 금

지하고 있다. 동 규정에 해당되는 제품으로 10kg이하의 냉각제, 에어로졸 및 분사기(fog horn) 등이 있다. 캐나다는 1991.1월부터 상기 2개의 규정을 통합하여 오존 파괴물질에 관한 규정(Ozone-depleting Substances Regulation)으로 통합하여 시행 중에 있다.

2.1.2 에너지 효율 규제

캐나다 정부는 또한 1992년 「에너지 효율법(Energy Efficiency Act)」을 제정하여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은 에너지사용 제품에 관한 최소한의 에너지 효율기준을 설정, 캐나다내에서 수입,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제반 제품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적용대상 품목은 건조기 등 21개 품목으로, 해당 제품을 제작, 수입,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법률에 정한 품목별 해당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캐나다 자원부에 소정의 에너지 효율 보고서를 제출하고 수입시에는 세관에 필요한 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제품은 에너지 효율 인증마크를 포함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ENERGUIDE” 라벨을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2.1.3 위험폐기물의 수출입 규제

캐나다는 1986년 11월 8일부터 지정된 위험 폐기물은 바젤협약, OECD 결정 또는 「미-캐나다간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협정(Canada-U.S.A. Agreement on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에 따라 수출입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 관련 물질을 재활용 또는 폐기의 목적을 위하여 수출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고철 및 슬러그와 같이 국제적으로 위험폐기물질로 분류되고 있는 물질의 수출입은 캐나다 「환경보호법(CEPA)」의 유해폐기물의 수출입규제(Export and Import Hazardous Wastes Regulations) Division B에서 정하는 위험물질로 분류되어 동 법률의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2.1.4 환경마크제 실시

캐나다의 환경마크인 환경선택 프로그램(Environment Choice Program: ECP)은 일반소비자들로 하여금 환경보호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1988년 6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캐나다 환경부에서

마련한 심의절차를 거쳐 ‘에코로고(EcoLogo)’라는 공인마크를 상품 및 서비스에 부착토록 하고 있다. 환경마크제도는 제조, 수입, 소매, 서비스 업체 등 일반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고 있어 강제적인 규제사항은 없으나, 환경마크에 대한 일반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아짐으로써 기업 영업활동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환경마크 획득상품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를 규정하고 있는 연방정부의 별도 법령은 없으나, 연방정부 및 주정부(온타리오, 알버타)는 자체적으로 조달물품 구매시 환경마크 획득제품의 우선구매를 장려하는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2.1.5 환경영향 평가

캐나다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종래 각의결정 또는 가이드라인 명령에 의하여 실시되었으나, 1992년 환경영향평가법(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이 제정되어 1995년 1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평가대상사업은 연방정부가 사업제안자인 사업, 연방정부 재정 지원 사업, 사업을 위해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토지 혹은 그 이용권의 매각, 임대된 사업, 연방정부 인·허가 사업 등이다.

연방정부기관이 주체가 되어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도록 하며, 평가서에는 사업자에 의한 환경영향, 주민의견, 환경보전대책 등이 첨부되고, 구체적으로 개별 안전마다 주무관청이 평가범주(scoping)로 포함시켜야 할 평가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평가시에는 대상사업의 규모 등에 의해 상세도가 다른 3가지 유형(screening, class screening, 포괄적 조사)으로 실시되며, 더욱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조정 또는 위원회 심사 등 공개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 스크리닝은 주무관청에 의한 비교적 간단한 환경영향평가를 말하는데, 이는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스크리닝 제도와는 다른 것이다. 또한 클래스 스크리닝은 환경평가청이 설정한 모델보고서를 이용하여 심사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스크리닝의 경우 주무관청의 필요에 따라 대중의견을 수집하나, 포괄적 조사의 경우 환경평가청이 심사하며 대중의견을 청취한다. 조정시에는 관계자가 참가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다.

2.2 투자진출상의 제한

캐나다의 외국인투자관련 기본법은 「Investment Canada Act」이다. 동 법은 외국인이 투자제한 분야에 대한 투자 및 일정규모 이상의 (2001년 기준 WTO회원

국의 경우 209백만 카불 이상) 기존기업을 직접 인수하는 경우 캐나다 투자청에 사전통지(Notice)후 심사를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기존 캐나다 기업인수가 아닌 신규투자의 경우 문화부문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투자제한이 없다. 또한 각 개별법규에 의해 문화, 금융, 에너지, 운송, 통신, 어업 등의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이 존재한다.

2.2.1 금융분야

캐나다 금융산업은 「연방은행법(Bank Act)」에 의해 규제되며, 이 분야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여러 면에서 제한되어 있다. 과거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Schedule I” 은행과 “Schedule II” 은행으로 구분되어 전자의 경우 외국인 인수가 불가능하며 대주주 지분이 10%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캐나다에서 금융업을 영위코자 하는 외국은행은 반드시 현지법인 형태의 Schedule II 은행을 설립해야 했다.

그러나 WTO 금융서비스협상 결과에 따라 외국은행의 지점설치가 허용된 개정 은행법이 1999년 6월부터 시행중이다. 동 개정법에 따라 외국은행은 대출업무만 취급하는 지점(lending branch) 혹은 예금업무도 취급할 수 있는 지점(full service branch)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으나, 예금업무 취급지점에 대해서도 15만 달러 미만의 소매예금(retail deposit)수취는 여전히 금지되고 있다.

캐나다는 또한 캐나다 금융서비스 관련 국내작업반이 1999년 6월 제출한 보고서 내용을 이행하는 「금융서비스 개정법안(Bill C-38)」을 2001년 6월 의회에서 통과시켰으며, 동 법안은 캐나다 은행을 자본금에 따라 소형은행(10억 카불이하), 중형은행(10억~50억 카불), 대형은행(50억 카불 이상)으로 구분하고, 소형은행에 대해서는 75%까지 지분취득을 허용하고, 대형은행에 대해서는 개정된 지분분산규정(widely held rule)을 적용하여 20% 이상 지분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동 법안은 은행합병 심사절차를 규정하여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은행간 합병에 대비하고 있다.

2.2.2 기타분야

운송의 경우 캐나다 국적기에 대한 외국인 지분은 25%로 제한되며, 연안운행은 캐나다 선박만이 할 수 있다. 에너지 및 광업부문에서 우라늄광산의 경우 외국인 투자의 50% 이상 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통신부문에서는 1종 전기통신사업자

(Type I Carriers: 전송용량 소유 및 운용)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직접 20%, 간접 33.3%, 총 46.7%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최근 초고속통신망 조기구축과 관련하여 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가 논의되고 있다. 어업의 경우 상업용 어업 허가를 갖고 있는 캐나다 회사 지분의 49%까지 허용하고 있다. 보건서비스에서는 캐나다내 병원은 주정부 관할 공공보건 제도의 일부를 구성한다. 개인 병원은 주정부 기금지원이 되지 않아 대부분의 경우 재정적 자립이 어렵다. 부동산의 경우 프린세스에드워드아일랜드(PEI)주 및 사스케치완주가 외지인, 외지기관에 대한 부동산 판매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2.2.3 수출 의무 비율 및 기술이전 조건

캐나다는 외국인 투자에 있어 특별한 이행의무(Performance Requirement)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심사대상 투자의 경우에는 고용, 자원가공, 현지부품, 수출, 기술개발 및 이전 등에 관한 투자가의 의향을 검토하고 있다. 1985년 투자법이 시행된 이후 캐나다가 투자심사에서 투자를 거부한 경우는 없으나, 일부 조건하에 허가된 사례들은 있다.

생산, 투자 및 국산품 사용조건에 따른 수입관세 경감조치는 WTO 및 NAFTA 규정에 따라 1997년 12월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섬유 및 의류 분야의 국내생산실적 등에 따른 수입관세 경감조치는 블라우스 등 6개 품목에 한하여 2004년까지 실적과 무관하게 관세 경감조치를 하였으며, 자동차 분야의 “Auto Pact” 비회원에게 주어질 실적에 따른 관세경감 조치도 폐지되었다. “Auto Pact” 5개 회원사에 대해 국내생산 및 부가가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무관세로 자동차를 수입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고 있었으나, 2001년 2월 동 특혜제도가 폐지되었다.

또한 TV 및 라디오 방송의 경우 일정비율 이상의 국산프로그램 방영의무가 있다. 모든 방송사는 연간 방송시간의 60% 이상을 캐나다 프로로 방송해야 하며, 특히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저녁시간에 국영 CBC는 60% 이상, 상업방송은 50% 이상의 캐나다 프로를 방송해야 한다는 규제가 있다.

2.2.4 지사·사무소 설치 제한

지사, 사무소 설치에 따른 특별한 제한은 금융분야의 경우 종전에는 외국은행은 지점을 설치할 수 없었으나, 1999년 6월부터는 개정된 은행법에 따라 외국은행의 지점설치가 허용되고 있다.

2.3 정부조달 시장의 장벽

연방정부의 공공사업 및 정부 서비스부(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 Canada)가 약 100여개의 연방정부 및 기관, 주요 정부투자기관을 대신하여 물품 및 용역조달을 담당하고 있다. WTO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은 연방정부차원에서만 적용되고 있으며, 지방차원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1995년 6월 캐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각 주(州)간의 무역장벽 및 상이한 기준을 통합하기 위하여 주정부간 「내국교역협정(Agreement on Internal Trade: AIT)」을 체결한 바 있으나, 여전히 주간 무역장벽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 서부지역에는 「서부지역무역장벽축소협정(Western Trade Barriers Reduction Agreement: Western Agreement)」이 있어 서부지역 회사 우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서부지역 주들도 AIT 체결 이후 Western Agreement의 적용범위를 축소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AIT상에는 캐나다 부가가치(Canadian Value added)분에 대한 10% 범위내 가격우대제, 캐나다 회사간 경쟁이 충분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캐나다 제품이나 캐나다 회사로 국한시킬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며, 각주는 동 규정을 적절히 수용하여 상이한 구매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온타리오주의 경우 캐나다 부가가치분에 대한 가격우대제, 캐나다 회사간 경쟁이 충분할 경우 입찰자격을 캐나다 상품이나 캐나다 회사에 국한시킬 수 있다. 퀘벡주는 퀘벡주회사 및 캐나다회사 우대구매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나, 점차 AIT 범위내에서 캐나다 회사간 자유경쟁에 의한 구매정책으로 나가고 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유일하게 주정부조달법규(Purchasing Commission Act)를 제정, 우대구매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사스케치완주도 서부지역 회사를 우대하고 있으며, 마니토바주는 “Western Agreement”에 가입하고 있으나, 캐나다 회사간 자유경쟁에 의한 구매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기관(전력회사, Liquor Control Board)의 경우, AIT 규정내에서 별도의 구매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캐나다 정부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자국의 모든 주정부 및 정부투자기관도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주정부들이 자신들의 관심분야에 대한 미국의 정부조달

협정 편입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현재까지 주정부로부터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3. EU

3.1 환경관련 규제

3.1.1 승용차 CO₂ 배출 규제

EU는 1997년 7월 환경각료이사회에 결정에 따라 2005~2010년까지 승용차의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120g/km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EU 및 한국, 일본의 자동차업체와의 자율협약(voluntary commitment) 체결하였다. EU는 먼저 1998년 7월 EU 자동차협회(ACEA)와 ACEA 회원사의 새 승용차 CO₂ 배출량을 2008년까지 120g/km의 CO₂를 배출하는 모델을 출시하며, 2003년에 165~170g/km로 감축하고 2012년까지 120g/km로 낮추는 문제를 검토하는 자율협약을 체결하였다. EU는 1998년 말부터 한국 및 일본자동차업체와도 ACEA와 유사한 협약체결을 추진하여, 1999년 6월에 한국업체와 신규 승용차의 CO₂ 배출량을 2009년까지 140g/km로 감축하고 2000년 이후 빠른 시일 내에 120g/km의 CO₂를 배출하는 모델을 출시하되 2004년에 165~170g/km로 감축하고 2012년까지 120g/km로 낮출 수 있는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협약에 합의하여 환경각료이사회 승인을 얻었다. 한편 일본자동차 업체와는 2009년까지 140g/km로 감축하기로 합의하고, 2003년에 165~175g/km의 추정목표에 합의한 바 있다.

3.1.2 HCFCs 사용 감축 가속화

1998년 7월 채택된 오존층 악화물질에 관한 EU규정(3093/94) 개정안은 오존층 악화물질인 HCFCs를 2000년 또는 2001년까지 사용 금지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98.12월 EU이사회는 2003년 1월까지 HCFCs의 냉장고 사용을 금지하는 입장을 채택하였다.

3.1.3 환경마크제도

EU는 환경영향이 가장 적은 제품의 디자인, 생산, 마케팅 및 사용촉진과 제품의 환경영향에 관한 소비자 정보제공을 위하여, 1992년 10월 환경마크(Eco-label) 제도를 도입하였다. 환경마크제도는 식품·음료 및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적용될 수 있다. 2000년 11월 현재 EU는 세탁기, 식기세척기, 냉장고, 개인용 컴퓨터 등 15개 제품군에 환경마크를 부여하는 기준이 기설정되고, 건전지, 쓰레기봉투 등 3개 제품군에 대해서는 기준검토를 완료하였으며, TV, 타이어, 진공청소기 등 9개 제품군에 대해서는 부여기준을 마련 중에 있다.

EU의 환경마크제도가 대부분 민간단체의 자발적인(voluntary) 참여방식을 택하고 있고, 외국업자에 대하여도 차별적인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을 감안할 때 환경마크제도 자체를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으나 실제로 있어 환경마크의 기준이 EU의 환경기준에 근거할 뿐만 아니라 환경기준의 논의시 외국업자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제약되어 있어, 환경기술이 취약한 개도국 상품에 대한 선진국 제품의 차별적 조치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

3.1.4 포장재 라벨링

EU는 1994년 12월 포장 및 포장폐기물에 관한 지침을 채택, 포장 및 포장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줄이면서 동 관리에 관한 개별회원국간 조치를 조화시키고, 아울러 무역장벽과 경쟁왜곡을 제거토록 하였다. 회원국들은 안전, 위생, 소비자요구 부응에 필요한 만큼의 포장 무게 및 부피의 최소화, 유독 유해물질의 최소화, 재사용, 재생, 복원에 따른 적합성 등 필수요건을 준수하도록 해야 하는데, 동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포장재는 1998년 1월1일부터 금지되었다. 아울러 회원국들은 포장폐기물에 대해 재사용은 45%, 복원은 60%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포장재 폐기물 회수체제를 도입하도록 되어있다. 이와 함께 동 지침은 수거, 재사용, 복원에 따른 포장재를 식별하기 위하여 1996년 12월31일 포장재 표시제도(package marking system)를 도입하였다.

3.1.5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라벨링

EU는 1997년 5월 유전자변형(Genetically-Modified : GM) 식품 등 신개발식품(Novel Food)에 대하여 엄격한 유통허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U내 유통을 위하여는 사전에 대상 식품이 환경 및 인체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평가받아 EU의 허가를 얻어야만 가능하다. EU는 환경측면의 GMO 유통허가제도를 별도로 운영하

고 있는 데, 1999년 6월 환경각료이사회에서 GMO 관련규정이 보완 정비될 때까지 사실상 GMO 유통허가 임시중지를 결의한 이후 허가절차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1.6 전기제품의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지침 채택

EU환경이사회는 2001년 6월 ‘전기제품의 폐기물(waste from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 관리지침’ 및 ‘전기제품상의 수은 등 유독물질의 사용제한(Restrictions on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ROHS)에 관한 지침’을 채택했다. WEEE 지침안에 따르면 EU 각회원국 정부는 동 폐기물의 수집체계 구축, 판매자는 사용제품의 회수, 생산자는 동 제품의 재활용의 책임 등의 분담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 이행시한(deadlines)을 지침발효 후 30개월~46개월까지로 설정하고 있다. ROHS 지침안은 수은 등 유독물질이 포함된 전기제품의 생산을 방지하기 위해 2007년 1월 1일 이후 생산되는 신규 전기제품에서는 유독물질 대체 금속과 함께 2종의 브롬화 방화제를 대체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3.1.7 자동차 폐차 지침안

EU의 자동차 폐차(end-of-life vehicles) 지침이 2000년 10월 21일 부로 정식발효되어 있다. 동 지침은 폐기차량의 수거, 재활용 등 처리비용을 제조업자(수출업자 포함)가 부담하도록 하고, 2003년 7월부터 납, 수은, 카드뮴 등 유해물질을 포함한 차량제조를 금지토록 함으로써 제조업자에게 상당한 비용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제조업자의 폐차 처리에 따른 비용부담 시점은 동 지침 발효시점을 기준으로 신규차량의 경우는 2000년 1월 1일부터, 중고차량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3.1.8 에너지 라벨링

1992년 9월 EU 집행위는 각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 표시제도를 조화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인 사용을 위해 에너지 라벨링 제도를 도입하였다. 에너지 라벨링에도 제조업체, 모델, 용량, 에너지 효율등급, 에너지소비량, 소음발생량 등 제품의 특성을 표시해야 한다. EU 집행위는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의류건조기, 세탁건조기, 조명기구, 식기세척기 등 7개 품목에 대해 에너지라벨링 기준을 기 제정하고 온수히터, 오븐, 냉방기 등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있는데, 라벨링 표시 대상 품목으로서 라벨이 부착되지 않는 제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3.1.9 환경영향 평가

EU는 1985년 6월 「일정의 공공 및 민간사업의 이사회 규정(Directive)」을 채택하여 각 회원국으로 하여금 환경영향 평가시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원국에 자주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후 평가대상사업의 선정(Screening) 및 평가항목의 선정(scoping) 개념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1994년 제출되어 1995년 12월 EU 환경이사회에서 합의되었으며 1998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평가대상사업에 있어서 원유정제시설, 고속도로 건설 등 9개 사업은 반드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부속서 I 사업으로, 가맹국의 판단에 의해 환경영향 평가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부속서 II 사업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사업의 설명, 환경보전대책, 환경영향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데이터와 알기 쉬운 요약이 최소한 포함되도록 되어 있다.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정보는 평가실시 주체인 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국에 일정의 공공·민간사업에 대하여 사업승인을 얻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관계주민의 의견청취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평가서 등의 환경정보가 일반적으로 이용되도록 하여 관계주민이 사업개시 전에 의견을 표명할 기회가 주어지도록 가맹국 관련규정의 정비도 요구하고 있다.

3.1.10 BSE 관련 쇠고기 유통규제

EU는 광우병 파동 이후 BSE 위험을 줄이려는 다양한 규정을 제정하고 있다. 우선 BSE에 감염되었을 위험이 높은 부위(SRM)는 도축시 의무적으로 제거한 후 유통토록 하는 제도가 EU 회원국내에서는 2000년 10월부터, 수입의 경우 2001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수입의 경우 수입국가의 BSE 위험정도를 EU가 평가하여 BSE 위험분류의 정도에 따라 각각 다른 규제를 한다. 또한, 분쇄육을 포함한 우육에 대한 의무적 라벨링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2001년부터는 1단계로 도축 및 가공국가 등의 정보가 담긴 라벨링이 부착되며, 2002년부터는 2단계로 출생, 사육국가 등이 추가된다.

3.1.11 성장호르몬 처리 쇠고기 수입금지

지난 10년 동안 EU는 성장호르몬을 사용한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였으며, WTO 패널은 EU로 하여금 WTO/SPS 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1999년 7월 WTO 중재패널은 EU가 WTO 패널판정을 이행하지 않는데 대하여, 미국에 대하여 16,800만 달러 규모의 대 EU 무역제재 방안을 승인한 바 있다. 1999년과 2000년 EU는 성장호르몬 처리 쇠고기 금지를 뒷받침할 과학적 연구를 계속하면서 미국과 성장호르몬 비처리 쇠고기의 수입량 증대 및 미국의 보복관세를 감축시키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3.1.12 PVC 규제추진

EU집행위는 2000.7월 PVC의 환경적 문제에 관한 Green Paper를 발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2001년내 구체적인 정책제안서를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U가 PVC에 관한 환경대책으로 추진중인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으나, 납, 카드뮴, Phthalates 등 부산물 사용문제와 PVC 폐기 관리 문제가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여 EU의 PVC 규제대책이 시행될 경우 PVC 생산업체 및 수출업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3.2 투자진출상의 제한

EU는 로마조약 제73b조에 따라 역내간 및 역내국과 제3국간 외국인 직접투자를 포함한 자본이동(capital movement)에 대한 모든 제한을 93년 12월까지 철폐토록 하고, 각 회원국 관계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은 원칙적으로 최종 소유자와 관계없이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를 받게 하였다.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이행을 위한 이행기간을 부여하였다. 이 로마조약 제73b는 공동체 차원에서의 자본이동의 자유화에 상당한 기여한 바, audio-visual(라디오, TV 및 신문 등 언론), 에너지, 수송(항공 및 해운)분야를 제외하고 제3국의 직접투자에 대한 제한도 점차 완화되었다. 역외 투자시 사전승인 요건은 대부분 철폐되었으나 일부 회원국에서는 국가안보, 공중의 위생 및 안전 또는 기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역외투자에 대해서는 재검토(review) 또는 통고절차(notification procedure)를 유지하고 있다.

항공 및 해운분야에서는 EU 회원국 국가의 국민이 지배적 소유자이거나 통제하는 기업만이 EU법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소유권 제한이 있다. 또한 EU의 은행·보험 및 투자서비스 지침은 상호주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바, 제3국이 EU 서비스

공급자에게 내국민대우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EU내에서 새로운 사업 설립권의 부여를 거부하고 있다. 나아가 역외국 투자자들이 EU내에서 제공받는 투자환경에 상응하는 투자환경을 역외국이 허용하지 않는 경우(mirror-image reciprocal treatment) 동 역외국 투자자들은 EU내에서 사업설립권이 거부될 수 있다.

3.3 정부조달 시장의 장벽

EU의 공공조달체계는 정부기관의 구매와 관련된 공공조달부문(Public Sector)과 수도, 에너지, 운송, 전기통신에 대한 공익사업부문(Uilities Sector)등 2개 유형으로 구분, 각기 다른 조달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공공부분에서 물품조달의 경우 93/36/EEC, 시설공사의 경우 93/97EEC, 서비스 조달의 경우 92/50EEC, 구제(remedies)의 경우 89/665/EEC, 92/13EEC를 적용한다. EU의 정부조달기관 또는 공익사업체는 상기 EU의 공공조달 관련 지침상의 하한가 이상의 공사·용역을 조달하고자 할 때 EU 차원의 조달지침을 따라야 하며, 관보에서의 공고는 물론 객관적이고 비차별적인 선별 및 낙찰기준을 사용하고, EU 표준 또는 기타 표준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공공조달지침상의 하한가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도 로마조약(제58조)의 규정에 따라 EU 회원국내에 등록된 업체(외국업체 포함)에 대해서는 최소한 비차별, 내국민대우 및 투명성이 보장된다. EU는 WTO 「정부조달협정(GPA)」이 1996년 1월 발효됨에 따라 상기 EU 지침을 GPA 규정에 준하여 개정하였으며, 동 개정지침은 EU 회원국내 법령화를 거쳐 시행토록 추진중이다.

3.3.1 외국업체의 입찰 참여 제한

1996년 1월 WTO 「정부조달협정(GPA)」의 발효와 함께 EU는 연간 4,500억 ECU 규모의 조달사업을 추가로 개방하였는데, WTO/GPA 수혜회원국 확대는 물론 WTO/GPA 규율 밖의 조달참여 기회확대를 위하여 개별 국가와의 양자간 정부조달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1995년부터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정부조달협정의 확대를 위한 양자협의를 요청하고 있으며, 1997년 10월 한·EU 통신장비 조달협정을 체결, 우리측의 45만 SDR 이상 및 EU측의 60만 ECU 이상의 통신조달 시장을 상호 개방하고 13만 SDR 이상에 대해서는 상호 내국민 대우를 부여키로 하였다. 한편, 1993년 1월 발효한 EU 공공조달 지침(수도, 교통, 에너지, 통신분야)은 다자 또는 양자합의가 없는 한, 역외국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차별대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지부품(local contents) 사용의무 50% 및 역내·역외국산 제품간 가격차이(price margin) 3% 미만 시에는 EU 제품의 구입을 의무화하였다.

3.3.2 정부조달상의 제약요인

EU 지침은 국내법으로 수용되어야 하나 일부 회원국은 이를 소홀히 하고 있는데, 특히 공공조달 관련 지침중 서비스지침(Service Directive : 92/50/EEC), 물품조달지침(Supplies Directive : 93/36/EEC), 설비조달지침(Utilities Directive : 93/38/EEC)의 국내법으로의 수용이 매우 중요하다. 회원국이 EU 지침의 국내법 수용을 소홀히 할 경우 국가책임 문제가 발생되며, 유럽사법재판소(ECJ)는 회원국이 EU 지침을 이행치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개인에게 직접 배상토록 판결(Francovich Case, 1991년 11월)한 바 있다. 공공조달 법령의 정확한 적용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다.

먼저 지침에서 사용된 용어와 관련된 오류의 경우 조달관련 지침에 자주 등장하는 계약당사자(contracting authority), 공공조달계약(public procurement contract), 공급(supplies), 서비스(services) 등 용어의 정의와 관련된 오류가 많다.

수의계약의 남용문제에 있어서 수의계약이 남용(excessive use of negotiated procedures)되는 사유로는 긴급한 경우(그러나, 동 긴급상황이 주로 공급기관의 과실로 인한 경우가 많음)와 계약이행능력이 있는 업체가 하나밖에 없다는 주장 등이 가장 빈번히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구주사법재판소 판례(Commission vs. Italy, C-199/85, 1987.3.10 판결)에 따르면 조달지침상의 수의계약이 가능한 “예외적 상황”(exceptional circumstances)의 규정내용은 매우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예외적 상황”의 존재여부에 대한 거(擧) 책임은 동 상황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이 부담하여야 한다.

미흡한 입찰공고도 문제가 되고 있으며, 입찰공고는 입찰에 관한 기본적 내용을 충실히 담고 있어야 하는데, 공고의 내용이 미흡한 경우가 많다.

신속처리절차의 남용 및 과도하게 짧은 입찰 준비시간 설정의 경우 신속처리절차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의 남용이 다수 발견되고 있으며, 또한 입찰공고기간 및 입찰참여 신청 접수기간 등이 지침상의 최소시한보다도 짧게 설정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입찰참여 자격심사 및 낙찰기준 문제에 있어서 입찰참여 자격기준(selection

criteria) 및 낙찰기준(award criteria)에 EU 지침에 규정된 것 이외의 부수적 기준을 포함한 사례가 많다. 또한 입찰참여 자격기준과 낙찰기준은 명백히 구분되어야 하며, 최선의 조건을 제시한 업체(best tender)(꼭 최저가를 제시한 입찰업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에 낙찰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험 또는 재정능력 등을 이유로 최상의 조건을 제시한 기업에 낙찰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

또한 EU의 조달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기타 문제점으로는 다음의 사례들이 있다. 양허 및 유사계약의 경우 대규모 인프라 건설 또는 관리의 경우 양허(concession)나 기타특별/배타적 권리의 부여와 같이 법적 메카니즘(legal mechanism)을 통한 계약 체결 사례가 많다. 지침내 양허하한선(threshold) 이하의 계약에서, 양허하한선 이하의 계약은 조달지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으나 동 계약도 EU 회원국내 주소지를 둔 업체(외국업체 포함)에게는 예외없이 EC 조약(로마조약)이 적용되므로 비차별, 내국민대우 및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중요입찰조건의 변경과 관련하여 입찰조건의 중요사안 또는 기본적인 재정 관련사항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로 간주되어 최초 공고절차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4. 스위스

4.1 환경관련 규제

4.1.1 환경관련 법안 개정

환경관련 법안을 개정하여 3,000-4,000개의 위험물 폐기처리장소를 위한 50억 스위스프랑 상당의 특별세를 신설하고, 페인트 및 난방연료에서 발생하는 화합물에 대해 환경세를 부과함으로써 쓰레기를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자원의 재활용도를 높이려 하고 있다.

4.1.2 유해가스배출량 감축을 위한 환경세(Green tax) 도입

1998년 1월부터는 0.1%이상 유황함유 난방유에 대해서, 1999년 1월부터는 휘발성 유기물질(VOC)에 대해서 청정세가 부과되고 있다. 세율은 고유황 난방유의 경우

톤당 12스위스프랑이 부과되며, 휘발성 유기물질은 1999년부터는 Kg당 1스위스프랑, 2003년부터는 3스위스프랑이 부과된다. 또한, 신환경보호법에 의거, 2000년 1월부터 휘발유와 디젤연료의 배기가스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Clean air decree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의거, 유연휘발유는 2000년 1월부터 사용이 금지되고 있으나, 국내 비축분에 한해서 2004년까지 모두 소진토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4.1.3 기 타

1996년 1월 1일부터 냉장고에 오존층 파괴가스의 사용을 감지하고 있다. 1996-2001년까지 수입되는 승용차의 평균 연비를 15%까지 줄여나가도록 승용차 수입상에 대해 의무화하고 있다. 스위스 연방환경청(BUWAL)은 환경 및 위생에 매우 해로운 수은 및 카드뮴을 방출하는 폐기 배터리에 대해 수수료 부과를 결정하였다. 그밖에, 스위스 내 산업설비의 설치 및 운영시 반드시 환경보호법이 고려되어야 하며, 연방 및 주(칸톤)정부가 환경위해요소를 통제하고 있다. 각 주정부는 공기 및 수질오염, 소음방지, 살충제 남용 등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 공해유발시설에 대하여는 주정부의 사전승인이 요구되며, 공해방지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4.2 투자진출상의 제한

4.2.1외국인 투자제한분야

외국인의 투자에 관한 별도의 법은 없으며 단지 분야별로 제한하고 있다. 은행업은 스위스 은행감독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투자가 가능하며 보험업, 취업용역회사, 증권거래업, 카지노영업, 무기 및 화약관련 업종은 칸톤에 따라 주정부의 영업허가를 얻어야 한다. 스위스 국적 선박운행 및 국내 항공사의 운행 등에는 외국인의 진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4.2.2 외국인 주주권한 및 이사회 구성상의 제한

기업 내부의 규정에 주주의 최대투표권을 제한하거나 또는 외국인을 주주 자격에서 제외하는 것을 허용하여, 외국인의 주식투자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다. 현지 투자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과 금융기관의 현지법인에 대해서도 이사진의 과반수

를 현지인으로 선임케 하고 있다. 스위스 국내법상 법인의 이사회 임원구성은 그 과반수를 스위스 국적인으로 선임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스위스에 투자진출한 외국인 현지법인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있다(Code of Obligation, 제711조).

4.2.3 부동산 취득 및 사용제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Lex Fridrich법에 의거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투자기업의 경우에는 투자기업의 영업용 부동산과 투자기업의 특정 주거용에 한하여 칸톤주 정부의 허가에 의해서만 취득이 가능하며, 투자기업 철수시는 2년 이내에 매각하여야 한다.

4.2.4 위생관련 검사제도

위생관련 검사제도로는 식품검사제도가 있다. 연방식품규정에 따르면 우유, 치즈, 버터를 비롯한 식품분류에 따른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국내제품과 수입제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수입식품의 통관시 샘플을 추출한 후 통관되며, 각 칸톤 시험연구소가 검사분석을 하여 국내 소비자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정부는 수입을 중단시킬 수 있다.

4.2.5 상품 라벨링

건강, 안전 및 이와 유사한 목적상 상품 라벨링 및 포장을 강제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식품류와 기술장비의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하다.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유전자변형상품(GMO)에 대해서는 1996년 10월 유전공학생산 농산품에 대한 라벨링 표시규칙을 도입, 199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GMO 성분이 1%(Threshold value) 이상인 모든 GMO 상품(단, 종자의 경우 0.35% 이상, 가축용 사료의 경우 2-3% 이상)은 유전자변형표시(Comprehensive mandatory labelling)를 하게 하고 있다.

4.3 정부조달 시장의 장벽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으로 이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34개 기관과 26개 칸톤 주정부의 조달은 WTO 「정부조달협정(GPA)」 양허 하한선에 한하여 외국인의 입찰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 개방 하한선은 연방정부 248,950 스위스프랑, 주정부 383,300 스위스프랑이다. 한편, 스위스우편(Swiss Post)과 스위스연방철도(SBB)는 2000.8월 현재 WTO 정부조달협정상 양허대상이 아니나, 스위스-EU간 7개분야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WTO 정부조달협정상 양허 대상으로 추가되었다.

5 일본

5.1 환경관련 규제

일본 정부는 2001년 4월부터 시행중인 「특정가정용기기재상품화법」(소위 가전리사이클법)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텔레비전 등 4개품목의 리사이클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제조 및 수입업자, 소비자에게 리사이클에 필요한 일정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5.2 투자진출상의 제한

현재 일본에서는 일본 금융당국의 지도에 의해(취지는 일본내 투자자 보호) 일본에 진출하는 외국금융기관(증권, 은행)은 영업점의 형태를 현지법인이 아닌 지점의 형태로만 설립하도록 되어 있다.

5.3 정부조달 시장의 장벽

5.3.1 WTO/GPA 대상공사시 외국업체 배제

지방정부의 WTO 정부조달협정(GPA) 대상공사 국제입찰시 ‘경영사항 심사 종합평가’ 기준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외국업체의 입찰참여가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GPA대상공사시 평가점수 등 입찰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은 WTO/GPA 상 허용되나, 지방정부가 높은 점수기준을 책정하는 경우 평가점수 상위 그룹의 일본 국내 건설업체만 입찰참가가 가능하게 된다. 동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우리나라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일본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GPA규정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시정하고 있으나, 향후 지방정부의 GPA 대상공사 국제입찰시 평가 점수 기준이 중앙정부와 유사한 수준(1,250점)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차원의 지도·감독이 요망된다.

6. 중국

6.1 환경관련 규제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른 환경문제 심각화로 70년대 말부터 환경보호를 국가 기본정책으로 설정하였다. 중국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는 1979년에 제정된 「중화인민환경보호법」(1989년에 전면 개정)에 규정되어 있고, 1981년에 제정된 「기본건설항목 환경보호관리방법」에 평가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후 1986년 기본건설항목 환경보호관리방법의 전면개정을 통하여 평가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시행중이다.

또한 <수질오염 방지법>, <대기오염 방지법> 등을 제정 및 공포하였으며, 외국기업에 의한 환경오염 업종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외국투자 프로젝트 환경 보호관리에 관한 통지”를 통해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토록 요구하고 있다.

6.1.1 진출분야 제한

1995년 6월 공포된 “외국기업투자 방향지도에 관한 잠정규정” 및 “외국기업 투자산업 지도목록”에서도 자연파괴 및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은 금지업종으로 지정하였다. 반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신기술 및 설비(고효율, 안전 농약 등)에 대해서는 장려업종으로 지정하였다.

6.1.2 환경영향평가

현행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환경관리는 주로 “환경영향 보고서의 심사제도”와 “조업 이후의 환경보호관리”를 이용하고 있으며, “환경영향 보고서”에는 입지, 제품, 공법, 설비, 오염물 배출,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오염방지 조치 등을 명기하여 해당 행정기관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 조업개시 이후에도 환경보호 목표책임제도,

오염물배출허가제도, 배출비용 징수제도, 기업환경 보호 관찰제도 등이 실시된다.

평가대상사업으로는 중국 국내의 공업, 교통, 수리, 사업, 위생, 문화·교육, 과학 기술, 관광, 지방공공사업 등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건설사업, 기술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이다. 평가는 사업자가 실시하나, 환경영향평가 작업은 자격자가 수행하여야 하고, 평가서에는 환경감시체제의 제안, 환경영향에 대한 간단한 비용편익 분석 등이 열거되어야 한다.

사업자가 실시하는 타당성 조사기간 중에 대·중규모의 사업은 상세한 환경영향보고서를 작성하고, 소규모 사업은 간이 환경영향보고서에 기입함으로 평가하되, 환경영향평가 실시 전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보호부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고서는 소관관청의 예비심사와 환경보호부국의 심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제도상에는 주민참여 절차가 없지만, 환경영향조사의 과정 등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경우가 있다.

6.2 투자진출상의 제한

6.2.1 투자금지/제한 분야

WTO 가입의 가시화로 인해 중국은 투자제한 및 금지업종의 자유화를 확대하고 있으나, 아직도 외국인 투자 제한 및 금지업종이 많아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투자 금지 분야로는 국가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저해가 되는 업종, 자연환경을 오염시키고 천연자원을 파괴하거나 사람의 건강을 해치며 그 정도가 국가에서 정한 기준치를 넘는 업종, 국가가 금지를 예정하고 있는 기타 업종, 중국 고유의 생산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업종 등이 이에 해당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에 포함되는 주요 업종으로는 송전망 건설과 경영, 우편·전기통신업무의 경영관리, 선물무역, 방송국, 프로그램제작, 영화, 비디오 상영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투자제한분야로는 국내에서 이미 생산, 개발하였거나 선진적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능력이 국내시장을 충족하고 있는 업종, 경쟁력이 없고 수출할 수 없는 업종, 선진적 기술의 제공 없이 이익만 추구하고 스스로 외환수지 균형을 달성할 수 없는 업종, 조립생산라인을 도입하고 부품을 수입하여 완성된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고 단순히 국내에 가격차로 이익을 거두는 업종, 중국의 전통공예, 미술품,

특산물, 전통적 수출상품을 생산 또는 가공하는 업종, 국가가 규제하고 있는 기타 업종 등이 있다.

6.3 정부조달 시장의 장벽

중국에서는 현재 정부조달을 담당하는 특정 부서가 없으며, 각 정부부처에서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를 자체적인 시행규칙 등을 제정하여 조달하는 분산식 조달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관련 법체계 또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하에서 발단이 늦어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은 2000년 1월 시행되었으며, 주로 관련부서에서 내부규칙을 만들어 산하 발주기관들을 규제하고 있다.

특히, 외국업체의 단독입찰 참여는 어려운 데, 그 이유는 중국업체와 원가면에서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다. 차관공사의 국제경쟁입찰인 경우 차관선의 회원국이면 누구나 사전자격심사(Pre- Qualification)를 거쳐 입찰참여는 가능하나, 현지업체에게 7.5%의 우대마진(Preferential Margin)을 부여하여 자국업체를 보호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최근 중국의 WTO 가입이 가시화됨에 따라, 중국 정부는 정부조달협정 가입에 따른 국내 조달시장의 타격을 줄이기 위해 국가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주무부서로 흩어져 있는 입찰순서를 규격화하고 그 법률 책임을 명확히 한 “입찰법”을 제정·시행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중국의 경우 아직까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에 따라 중국의 조달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중국정치 및 조달관행을 먼저 이해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자본주의식 경쟁체제인 국제적인 조달법규를 도입하는데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으며, 특히 정부에서 발주하는 물품 및 각종 공사에 발주기관의 산하 공기업들이 참여하여 낙찰되는 경우가 있는 등 정부조달과 관련된 개념 정립부터가 필요한 실정이다.

중국 입찰법이 지난해 제9기 전인대상무위원회 11차 회의에서 통과돼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30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36개 기업에 대해 기계전자제품 국제입찰자격증서를 발급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기계전자제품 국제입찰은 80년대 해외차관 도입으로 시작해 급속도로 발전, 국제입찰자격을 보유한 업체가 초기 8개에서 현재 36개 사로 증가한 상태이다. 입찰대리기구도 지정 운영돼 오던 것이 자주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조정되는 등 제도적으로 점차 정비돼 가고 있다. 그 동안 기계전자제품 국제입찰의 경우 대부분의 자금이

해외음자로 제한돼 왔으나 현재는 국내자금으로도 충당되고 있다. 입찰금액도 몇 천만 달러에서 몇 십억 달러 이상으로 대형화되고 있다. 중국정부 입장에서는 기계전자 국제입찰을 통해 국내외 업체간 공개경쟁을 유발, 외환을 절약할 수 있고 기술력 있는 국내업체 발굴도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국제입찰을 적극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999년 전국 기계전자제품 국제입찰 규모는 29억 4천만 달러였지만 낙찰금액이 24억9천만 달러로 결과적으로 4억5천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고 이중 국내업체에게 낙찰한 금액도 6억3천만 달러에 달해 총 낙찰액의 25.3%나 차지했었다. 중국정부는 새로운 입찰법을 통해 사회주의 체제하에서의 행정분배방식을 철회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입찰을 통한 조달을 규범화해 본격적인 시장경제로 나가는 중요한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다음의 <표 III-1>는 중국 정부조달시장 및 해당 관리부문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부소비부문은 정부기관이, 국가건설부문은 국유기업 등이 관리하고 있다.

<표 III-1> 중국 정부조달시장 및 관리부문

조달부문	담당기관	관리부문
정부소비부문	각급 재정부문과 정부의 사무관리부문	각 급 정부의 사무용품, 공무차량 및 정부사무실
국가건설부문	국가발전계획위원회와 국가경제무역위원회	국가 및 국민생활에 관계되는 기업(국유기업, 합자기업 등)에 대한 투자건설
차관항목의 건설부문	국가발전계획위원회,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재정부	외국 및 국제금융기구의 중국에 대한 차관 항목의 건설부문

자료출처: COM/TD/ENV(98)128

7. 태국

7.1 환경관련 규제

태국은 고도 성장에 따르는 환경문제를 활발한 환경산업 확대를 통해 해결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개발도상국 환경문제 해결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1990년대 초부터, 태국당국은 전례 없는 경제성장이 가져온 환경 영향, 특히 수도권지역(BMA: Bangkok Metropolitan Area)와 동부해안지역(ESB: Eastern Seaboard)에서의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였다. 최근의 환경규제 정책들은 해

결 시한을 정한 환경정책 목표(time-bound enforcement mechanisms)와 결부되어 있다. 본격적인 환경규제 체계의 정립은 국가환경법(NEQA: National Environmental Quality Act)에 따라 국가환경관리체제를 전면 개정하고 주요 환경 관련 기관들을 정비한 1992년을 기점으로 한다. 이전의 국가환경국(National Environmental Board)은 국가환경법에 근거하여 과학·기술·환경부(MOSTE: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Environment)관할 하에 놓이게 되었다.

각료급 환경정책기구의 도입으로 보다 효율적인 환경정책 집행이 가능해 졌다. MOSTE 산하에 3개의 새로운 환경부서가 설립되었으며, 이들은 각각오염 통제(Pollution Control), 환경 정책과 계획(Environmental Policy & Planning), 환경 질 개선(Environmental Quality Promotion) 등을 관장하고 있다. 과학·기술·환경부에는 1995년 폐수 관련 계획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폐수관리국(WMA: Wastewater Management Authority)이 새롭게 구성되었다. MOSTE외에도 내무부 공공사업국(PWD: Public Works Departments)과 산업부 산업국(DIW: Department of Industrial Works)이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994년, 독립적인 비영리 기관으로 설립된 태국환경연구원(TEI: Thailand Environmental Institute)도 정부, NGOs, 민간 부문 사이의 환경 이슈들을 조정기능을 담당하면서 산업전반에 걸친 환경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1992년 이루어진 환경관리체계의 개선과 함께, 관련 법률의 수정과 보강, 그리고 벌과금 인상 등 규제 강화가 일어났다. 태국 환경법규의 기본에 해당하는 국가환경법(National Environmental Quality Act)은 주요 환경정책기구의 구성과 중앙 및 지방 정부부처, 기업 그리고 개인 사이의 협력과 조정을 기르고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구체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은 국가환경국을 해체하고 그 역할을 MOSTE 내에 설립될 신규 환경부서에서 맡도록 하였으며, 국가의 환경오염 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할 오염 통제 위원회 조직을 규정하였다. 재정부내에 설치된 기금이 개인사업체,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개인, 그리고 정화, 예방, 보호수단들과 관련되어 있는 환경그룹 등에 대출금이나 원조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환경법에 따라 MOSTE의 장관은 환경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국내 수질, 해안과 하구수질, 지하수, 대기순환기준, 소음과 진동기준 그리고 여타 환경기준들을 제정할 권한을 갖게 된다. 오염 통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당국들도 지방실천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진다. 국가환경법은 또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도

입을 명시하고 있으며, 환경 영향 평가는 정부, 주 기업가 또는 개인 모두에게 요구될 수 있다.

MOSTE는 또한 유해 물질의 수입, 생산, 사용과 처리에 관련된 “유해물질법”을 입안하였으며, “공장법(Factories Act)”도 수정하여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의 공장들에 대한 과징체계를 강화하였다. MOSTE는 또한 새로운 오염원에 대한 확인과 기업들의 적응기한을 명시함으로써 산업 폐수에 대한 오염규제를 강화하였다. 1992년 제정된 유해물질법(Hazardous Substance Act)은 광범위한 유해물질에 대한 규제근거법령이다. 새로운 환경법 가운데 가장 엄격한 과징금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등록과 면허절차를 간소화시켰고, 규제담당관들은 유해물질을 압수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오염유발자는 국가가 입은 손실을 배상할 의무를 지며, 제조나 수입, 수출 또는 소재 등이 금지된 유해물질에 관련된 범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같은 시기에 제정된 공장법(Factories Act)은 정부규제에 응하지 않는 생산시설이나 산업용 발전시설에 대한 환경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환경기금 사용을 인정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있다.

다양한 강제 규제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불충분한 인적자원과 환경예산은 종종 정치적 의지의 부재를 반영하면서 환경규제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소송과 사법판결을 경원시하는 문화적 성향 또한 강제적 환경규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나 최근 다양한 보완적인 규제정책 조치와 환경보호 조치에 대한 투자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7.2 투자진출상의 제한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여 태국의 수출산업을 육성하려는 수출산업 우선 정책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는 장려하는 입장이나 지분제한, 업종·품목별 투자제한, 입지제한이 남아있다. 2000년 3월 시행된 외국인사업법(New Alien Business Act)에는 3개 그룹의 외국인 업종참여 제한이 있고, 이에 따라 외국인 참여가 제한된 업종은 48개이다. 태국정부는 외국인 참여 제한 업종에 대해 매 2년 1회 이상 개방 필요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7.2.1 내국민대우상의 문제

외국인은 부동산과 법인주식의 49%이상을 소유할 수 없으며 농업, 어업, 광물자원개발사업은 외국인에게 제한되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에도 고용허가를 받아야 취업이 가능하다. 투자청(BOI)의 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에게는 업무용 부동산 소유가 허용된다.

외국인은 주식에 대한 소유가 제한되는데, 주식시장에서 경영권에 상관없는 외국인의 주식거래는 허용되고 있으나 업종별, 주요기업에 대한 외국인 주식소유한도가 있다. 대주주인 경우에도 외국인은 총 주식 지분의 49%이내로 소유가 제한되며, 투자청이 국가경제 정책 목적상 허용한 경우에만 50%이상의 소유가 가능하다.

7.2.2 지사·사무소 설치 제한

외국인은 부동산과 법인주식: 외국기업이 태국주재 사무소를 개설하려면 개설허가 취득이 필요하다. 지사 설치에는 신외국인사업법에 따라 최소자본금(유입외환) 3백만 바트를 반입해야 한다.

7.2.4 금 융

외국은행지점(Full Branch) 인가기준으로 20억 바트의 채권 등의 구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외환위기 이후에도 태국정부는 외국은행지점인가에 대하여 매우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음. 과실송금에 대해 10%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고, 장기자금 차입에는 제한이 없으나 1년 이내 단기자금에 대해서는 6%의 지불준비금을 적립토록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7.2.5 건 설

외국의 건설회사는 등록을 하여야하고 태국 내에서의 사업실적을 거두어야 한다. 태국정부는 외국의 건축, 엔지니어링, 건설회사가 입찰 참가시 등급분류(billing rate)에 의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 태국 내에서 건축가나 엔지니어로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국적요건이 적용된다.

7.3 정부조달 시장의 장벽

7.3.1 외국업체의 입찰참여 제한

태국은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정부기관, 국영기업체, 지방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하더라도 국내조달이 가능한 공사는 태국업체(태국인 지분 51% 이상)에게만 입찰기회가 부여된다. 외국업체의 참여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제약 요소가 있다.

먼저 조달청과 같은 중앙조달기관이 없고 중앙정부의 국가단위, 76개 지방도 단위, 각 군의 부대단위, 각 국영기업체가 개별적으로 발주하기 때문에 최소한 400여 구매기관이 넘는다. 동일기관의 동일사업에 대해서도 예산확보에 따른 시기별, 품목별, 규격별로 입찰 건을 분리하여 발주하고 있으며, 구매하는 품목별 규격과 설명서, 수량, 금액, 절차, 자격요건, 태국내 시공경험 요구, 사후평가 등 상세한 입찰정보는 유료 판매되고 있다. 국제입찰이 아닌 경우, 입찰공고, 서류작성이 태국어로 되어 있어 외국인의 접근이 어렵다. 또한 입찰정보는 발주기관내 공공장소의 게시판에 게시, 신문, 방송등 언론매체에 광고, 총리실 홍보국(www.prd.go.th)에 태국어로 고시하나,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는 입찰서를 구매해야 가능하다. 입찰공고 후 마감기일이 짧고 구매물품의 납기가 짧으며, 입찰보증이나 이행보증을 위한 태국내 은행이나 구매기관이 인정하는 외국은행이 발행한 것만 인정하기 때문에 외국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는 데 제약이 된다. 또한 입찰서 마감후 사후평가 절차가 있는 경우 입찰자의 납품할 건본의 성능시험시 이해관계자 입회배제되며, 시공경험과 기술에 대한 평가결과만 발표될 뿐 평가과정의 투명성을 공개 또는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태국내 재원에 의한 정부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태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 태국 구매기관의 고려에 의해 외국업체의 참여를 허용하는 경우 태국업체와의 컨소시엄을 요구한다. 이는 태국 건설업체의 육성, 시공경험 축적, 외국과의 협업을 통한 기술 습득을 위해서다. 태국정부가 정부조달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투명성을 요구하는 정보조달협정 가입을 검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달행정의 투명성은 수년 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외국인에게 정부조달시장을 허용하는 시장개방협정가입은 상당기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기관, 국영기업체,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국제입찰을 실시하는 경우는 국제금융기구, 외국정부 등 외국 차관을 재원으로 하여 발주하는 공사가 많으며, 국내자금(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발주하는 공사 중에서도 태국 건설기술로 설계, 시공,

감리가 어려운 공사는 국제입찰을 실시한다.

7.3.2 정부조달상의 제약요소

조달규정들이 정부기관, 지방관서의 구매시 적용되고 있는데, 국영기업의 공사 발주시 자체조달규정에서 준용되는 조달관련 총리령(Regulation of th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Supplies Section) 제16조에 따라 자국상품의 구매를 우선하고 있다. 동일한 품질이 보장되는 3인 이상의 공급자중 국내산 가격이 최저가보다 3% 미만을 상회하는 경우 해당 국내업체를 선정할 수 있으며, 국내산이 최저가보다 5% 미만을 상회하는 경우 새로이 가격협상을 통해 3% 미만기준을 맞춰 국내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상무부 연계구매제도(Counter-trade policy)의 경우 태국정부, 국영기업이 3억 바트 이상의 물품 및 공사입찰을 발주할 때에는 낙찰자에 대하여 입찰금액의 50%에 달하는 연계구매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태국정부는 2000.5월 연계구매정책을 강화하여 연계구매대상 입찰규모를 5억 바트 이상에서 3억바트 이상으로 인하여 대상범위를 확대하였다. 다만, 국제금융기관이나 외국정부의 차관자금에 의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연계구매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찰 참여자는 응찰시 연계구매계획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상무부의 국제무역국과 연계구매계획을 확정된 후에 낙찰에 따른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상무부는 연계구매의 대상물품으로서 31개 품목을 지정하고 있으나 수출경쟁력이 있는 주요 품목은 여기에서 제외됨으로써 입찰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사후자격심사(Post Qualification) 절차에서 태국은 주요공사 등 입찰 마감 후에 시행기관, 국영기업에서 입찰서류, 응찰자의 시공경험, 기술타당성이나 경제성에 대하여 내부규정에 따라 자격심사(Post Qualification)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최저응찰자라 할지라도 발주기관이 기술적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면 최저 응찰인 경우에도 자동 탈락하게 된다. 태국정부가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점, 자격심사가 내부규정에 따라 비공개리에 진행되는 점, 심사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지연되는 사례는 투명성 문제를 안고 있다.

8. 인도네시아

8.1 환경관련 규제

인도네시아는 몬트리올 의정서의 회원국으로서 1992년 몬트리올 조약과 비엔나 조약을 비준하였고, 이에 따라 냉매(프레온가스 : CFC)의 무역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바젤협정상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플라스틱의 경우도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아직 새로운 환경관련 규정의 적용 및 운영이 준비단계에 있어 이에 따른 수입규제 사례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환경관련 법규로는 「생활환경관리에 관한 기본법(Act No.4 of 1982 concerning Basic Provisions for the Management of the Living Environment)」와 내무부 규정(Regulation No.1/1985 of Minister of Home Affairs)이 있다. 환경관리제도로는 환경 오염방지법상의 오염물질배출시설관련허가(Nuisance Act Permit) 신청시 오염가능성이 낮을 경우에는 환경관련 자료(Environment Information Report : PIL)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오염가능성이 높을 경우 환경영향분석서(Environment Impact Analysis : ANDAL)를 제출해야 하고, 이 경우 오염방지시설 개요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오염방지시설의 수입에 대해서는 인구 및 환경관리청의 추천을 받아 투자조정위원회(BKPM)의 면세허가를 받을 수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1999년 6월 육상운수청내에 실무팀을 구성, 자동차 연료를 유연에서 무연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하여, 2001년 7월 1부터 우선 자카르타 지역부터 무연으로 교체하여 공급중이며, 2003년 1월까지는 이를 전국적으로 실시키로 하고, 정유공장시설 교체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다. 또한 자연환경을 보전키 위해 조림기금을 2000년 4월부터 천연림보호와 조림등에만 사용토록 하는 예산집행절차를 마련하였다.

8.2 투자진출상의 제한

8.2.1 외국인투자 제한분야

2001년 상반기 현재 내·외국인 투자금지분야는 11개, 외국인 투자금지분야는 8개, 내국인과 합작투자조건 외국인 투자개방분야는 9개, 조건부 외국인 투자개방분

야는 20개로 확인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외국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투자관련 규정을 단일화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투자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8.2.2 외국인 고용제한 및 현지인 교육훈련 의무

원칙적으로 인도네시아인을 고용하여야 하나 인도네시아인이 감당할 수 없는 직종이나 인도네시아인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외국인 고용이 허용된다.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사전에 노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지향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단순노동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고용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있다.

8.2.3 수출의무 비율

수출가공지역(EPTE)이나 보세구역내에 위치하는 투자업체의 경우 수출물량의 25% 한도 내에서 내수판매가 가능하고, 생산공정에서 남은 생산량의 5% 한도 내에서 원자재의 내수판매를 허용한다.

8.2.4 현지부품 사용의무 비율

원칙적으로 현지부품 사용의무 제한은 없지만, GSP 수출의 경우 현지부품 사용(local content) 비율이 6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Certification of Origin)를 발급한다. 종래에는 상당히 융통성 있게 관리되었으나 최근에는 엄격한 기준에 의거하여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고 있다.

8.2.5 부동산 취득 및 사용제한

헌법상 토지는 국유(國有)이므로, 토지소유권은 국토의 일부 특정지역에 대해서만 인정될 뿐 대부분의 토지는 국가소유로서 장기경작권, 건축권, 사용권, 전세권 및 개발운영권 등만을 허용하는 토지공개념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토지공개념제도에 의거한 토지사용권 및 건물사용권은 내국인 대우를 받게되는 외국인 투자법인에게만 허용된다.

8.3 정부조달 시장의 장벽

인도네시아는 WTO 다자간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 100억 루피 이

상 정부조달은 개발·감독조정장관 주재 중앙조달협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나 100억 루피아(물품구매 경우는 50억 루피)미만 정부조달은 정부 각 부처가 자체규정에 따라 입찰을 실시한다. 따라서 입찰과정이 부문별로 약간씩 상이하다. 1988년 발효된 정부조달 기본법은 그동안의 중앙통제방식의 정부조달체계에서 각 부처 및 지방정부로 대부분의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는 정부조달과 관련하여 외국인에 대하여 제한이 있다. 재원이 정부예산인 경우 등록된 국내업체 및 국내 에이전트만이 참가가 가능하며, 외국업체는 국내 에이전트를 통해 참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재원이 외자인 경우 외국공급업체의 직접참여도 가능하다. 건설공사의 경우 외국업체는 현지업체와 합작 형태로만 참여가 가능하나, 현지 합작회사는 대개의 경우 명목상의 동업자에 불과하므로 외국업체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장애요인이 되지는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기관은 소규모 정부조달사업에 대해 경쟁을 제한하고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있는 바, 1,500만 루피 이하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주로 수의계약을 하며, 1,500만~5,000만 루피 규모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자격 있는 3개 업체로 입찰을 제한하고, 5,000만 루피 이상의 프로젝트는 최소한 5개 업체 이상이 입찰하도록 하고 있는 바, 1억 루피 이하 규모는 중·소기업을 참여하도록 하고, 1억~2억 루피 규모의 프로젝트는 중·소기업에 10%의 가격 우대마진을 부여한다. 또한 5억 루피 이상의 계약건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에 부여하지만 외국인 입찰자에 대하여는 대응구매(counter purchase), 즉, 계약가액에 상당하는 비석유상품을 인도네시아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1997년 IMF 경제위기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부정·부패, 결탁, 정실주의 추방 개혁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조달법 개정을 추진하여 오고 있으며, 1999년 4월에는 건설산업법을 제정, 건설분야 입찰절차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대규모 입찰에 있어서 진행이 늦고, 입찰결정이 비상업적 이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등 불투명성이 지적되고 있다.

8.3.1 정부조달 시장규모(건설부분 중심)

인도네시아정부는 입찰운영방침상 연간 조달계획을 사전 발표하지 않아 정확한 시장규모는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정부예산안 규모를 참고하여 파악해 본다면, IMF 이후 국내은행 구조조정 소요경비 및 외채상환 경비 등의 증가로 국내개발사업 예산은 수년간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2001 회계연도상 총개발사업비는

45.5조 루피(USD 47억)이다.

인도네시아정부에서 발주하고 있는 주요 공사입찰은 도로, 상하수도,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 분야로서 대부분이 해외차관을 통한 개발예산으로 공공사업부, 광업 에너지부, 교통부 등에서 주로 발주하고 있다. 해외차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대규모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 국가개발청에서 각 부처가 제안한 사업을 수렴하여 매년 7월경 사업목록을 작성 제출하고 있다.²¹⁾

8.3.2 건설업 허가제도

외국건설업체는 수주활동을 위해 지사등록을 필수로 하는 외에, 주택 및 지역개발부에 국내의 공사실적, 본사 재무상황, 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건설업 면허등급을 취득해야한다.

주택 및 지역개발부는 동 구비서류에 대한 심사를 거쳐 R1B1에서 R6B6(R: 도로, B: 교량)까지의 면허등급을 부여하는데 통상 외국업체는 최상급인 R1B1을 부여받고 있다. 또한 주택 및 지역개발부에서는 인도네시아 건설면허를 A, B, C Type으로 분류하고 각 면허등급에 준하여 매 프로젝트별 입찰 참가자격이 주어진다. 구체적인 입찰과정에서는 공사규모, 난이도 등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심사를 거치는 등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8.3.4 외국업체 규제

도로, 하천공사 등 분할이 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절차를 간소화하고 자국 업체에 우선권 부여를 위해 사업을 세분화하여 외국업체 참가를 제한한다. 게다가 정부지원 사업을 낙찰 받은 외국업체에 대해서는 특정 국내상품 구매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²²⁾

21) 동 책자는 Blue Book으로 불리기도 한다.

22) 국내시장 여건 때문에 강제 이행하는 사례는 적다. 또한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에 상장한 국내 기업에 대하여 정부조달 규정상의 입찰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9. 말레이시아

9.1 투자진출상의 제한

1975년 제정된 산업조정법(IGA)은 제조부문에서의 자본금 250만 링기트 이상 또는 종업원 75명 이상인 경우에만 통상산업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이하의 경우에는 허가 면제를 통한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9.1.1 출자지분 제한

외국인 투자가 적극 장려되는 부문은 제조업분야, 국제비즈니스, 멀티미디어 정보단지 등이며, 반면 무역 및 서비스 분야는 관광을 제외하고는 크게 장려되고 있지는 않다.

외국인 기업이 말레이시아에 투자할 때 제조업의 경우 수출비율에 따라 지분소유가 제한되고 있으며,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최고 30%까지만 지분소유가 가능하다. 서비스중 도소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경우는 1995년 11월부터 지점개설, 점포이전 등을 포함하여 상거래 및 소비자부 관할 하에 설립된 도소매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내국기업으로 설립되어야 하며 외국인 출자지분 제한 30% 상한 외에도 말레이시아 70% 출자지분중 30%는 말레이계 자본(부미푸트라)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납입자본금 및 유보금을 합한 주금 기준 최소자본 투자액 제한이 있다.

지분의 인종간 배분을 강제하여 내국인 파트너가 없으면서 외국인 소유비율이 70% 이상일 경우 잔여분은 말레이계에게 할당해야 한다. 외국인 지분이 70% 미만일 경우 30%는 말레이계에게 우선 할당해야 하며, 잔여분은 여타 말레이시아인에게 할당이 가능하다. 말레이계와 합작투자를 했을 경우 말레이계 파트너가 할당된 지분을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로컬지분은 전적으로 말레이계에게만 할당되어야 한다. 또한 비말레이계와 합작투자를 할 경우, 로컬 파트너는 최대 30%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으며 잔여 로컬분은 말레이계에게 할당해야 한다.

9.1.2 현지부품 사용 촉진

말레이시아 정부는 제조업분야에 있어서 국산 원자재 사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투자유인책 부여시 현지부품 사용을 고려요소로 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에 있어서는 행정적 조치로 장려되는 현지부품 사용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중소기업개발청(SMIDEC)이 운영하는 ‘산업연관 프로그램(ILP)’과 기업개발부의 “공급자개발 프로그램(the Vendor Development Programmes)” 등의 목적은 말레이시아인의 중소기업 규모를 대규모 산업과 다국적 기업에 의해 요구되는 부품의 제조업자 및 공급자로 개발하는 것이어서, 비록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국산 자재 및 서비스의 사용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 기술 및 다른 관련 지원을 통하여 그러한 중간재 투입 사용을 촉진하고 있다.

9.1.3 외국인 취업자수의 제한

말레이시아는 외국인의 제조업 투자 허가시 투자규모에 따라 외국인 취업자를 제한한다. 관례상 납입자본금 투자액이 200만 달러 이상에 달할 경우 자동적으로 5명의 외국인 취업자리(Expatriate)가 보장되며, 추가로 필요할 경우 요청해야 한다. 투자액이 200만 달러 미만일 경우 대체로 2명이며, 특수한 경우 별도의 요청이 필요하다. 관리직(executive post)은 내국인을 훈련시켜 권한을 이양한다는 조건하에 최대 10년까지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비관리직(non-executive post)도 내국인을 훈련시켜 권한을 이양한다는 조건으로 5년간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다만, 말레이시아 정부가 매우 우선시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을 완화해 주고 있다.

9.2 정부조달 시장의 장벽

말레이시아 기업에 부여되는 정부조달 특혜는 정부지원의 일종이며, 선정된 州 소유 기업들도 정부조달규정에 의해 이와 유사한 절차를 따를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특혜는 공급자간의 경쟁을 제한하고, 경제 효율을 저해할 뿐 아니라 또한 정부와 주소유 기업들의 상품 및 서비스 조달 비용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정부조달이 국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으며, 재무부는 조달 기업이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정부조달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 경제효율을 높이기 위해 일부 주정부 소유 기업들은 공공조달 규정으로부터 면제를 포함한 많은 자율경영이 허용되었으며, 나머지 주정부 소유기업들은 민영화되었다. 정책상 외국 투자가는 민영화된 기업 지분

(Share Capital)의 최고 25%까지 참여가 허용된다.

말레이시아의 연방 조달규정은 현행 정부의 상품 및 서비스 구매와 공공투자(GDP의 20% 이상), 연방정부의 58개 법정조직에 의한 조달과 3개의 대형 비금융 기업(Non-Financial Public Enterprises: NFPEs)인 국영석유 회사(Petronas), 국영전기 회사(Tenaga Nasional), 말레이시아 전화회사(Telecom Malaysia Berhad)에 적용되고 있다. 연방조달정책 목적의 하나는 국산 원자재 부품의 사용을 촉진하고 수입 의존을 줄이며, 국제수지 적자를 줄이는 것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말레이시아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조달 담당기관은 재무부내 계약·공급 관리국인 정부조달관리국이다. 정부조달관리국은 연간 530억 링기트(Ringit) 규모의 조달사업을 운용하고 있다. 1994년 정부조달 규정의 개정으로 “재무부내규(Treasury Circular Letters)”는 종전의 151개에서 34개로 축소되었다. 각 부에는 자체 조달 부서가 있으나 7백만 링기트 이상의 공급 및 서비스 계약, 5,000만 링기트 이상의 작업계약은 재무부에 위임되어 있다.

계약은 공급, 서비스, 작업의 3개 카테고리로 구분되는데, 공급계약의 경우 말레이계 기업들은 참고가격(reference price)에 대해 2.5%~10%의 특혜 마진을 받고 있다. 특혜 마진은 역으로 1,500만 링기트까지 가격에 비례한다. 말레이계 제조기업들은 또한 1억 링기트까지의 계약에 대해 역으로 특혜마진과 함께 3%-10%의 특혜 취급을 향유한다. 또한 1만 링기트와 10만 링기트 사이의 모든 공급계약과 10만 링기트까지의 작업계약은 부미푸트라 공급자에게 주어진다. 작업계약의 조달을 위한 계획에 따라 적어도 연간 금액기준 30%의 작업계약이 부미푸트라 계약자 몫으로 우선 할당되고, 나머지는 공개 경쟁입찰에 의한다. 1,000만 링기트 이하의 경쟁입찰금은 100% 말레이시아인 소유의 기업에게 허용되고 있다. 1,000만 링기트에서 2,500만 링기트 사이의 입찰은 외국 자본(equity) 지분이 30%이하인 쿠알라룸푸르 주식시장(KLSE)에 상장된 국내 합작투자 기업에 허용되고, 2,500만 링기트를 초과하는 입찰은 외국자본(equity)지분이 40% 이하인 쿠알라룸푸르 주식시장(KLSE)에 상장된 합작투자기업에 허용되고 있다.

수입상품의 수송을 위해서 5개의 국내 복합(multi-model) 운송회사들이 수입상품 수송에 대한 가격 견적서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들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대응교역 요건은 국제입찰자에게 유예되어 있고, 외국 수출 또는 혼합된 신용 입찰제외는 입찰평가시 고려된다. 모든 입찰들은 만약 서면 면제가 재무부로부터 조기 입수되지 않으면 국내 일간지에 공표된다. 제한입찰(restricted tenders)은 공급자가 한정될

때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직접 교섭(direct negotiations)은 단지 1개 공급자만 있을 경우 활용된다. 모든 제한입찰이나 직접 교섭에 의한 계약은 재무부에 의해 검토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정부의 조달 관련 재무부 내규는 1995년 4월 13일 폐지되었다. 주(州)의 개발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주입찰위원회(Federal Tender Boards)는 5백만 링기트까지의 작업계약에 대해서만 승인 권한을 행사한다. 만장일치가 아닐 경우는 어떤 가격의 공급계약 또는 작업계약에 대해서도 권한이 없다. 주정부의 조달 권한은 조달 위원회를 거쳐 조달에 관한 결정을 하는 재무담당 기관에 부여되고 주 수상(the Chief Minister of the State) 지시를 따라야 하며, 또한 조달에 관한 연방규정과 지침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그밖에, 말레이시아에는 국산자재사용(local content)을 촉진시키기 위한 많은 비공식 정책이 있다. 정부는 개별 사안별로 비금융공기업들(NFPEs)과 민간기업들이 그들의 프로젝트를 착수할 때 국산부품(local components)을 사용토록 촉구한다. 정부의 모든 국제 입찰 서류는 국내 회사의 활발한 참여를 보장할 것과 국내 회사들이 활발히 참여 할 수 있는 분야를 명백히 할 것을 공표하고 있다. 추가적 조치로 토목공학작업은 반드시 국내 회사에게 돌아가도록 되었다. 모든 토목공학작업은 국내적으로 조달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행청에 따라 이러한 정책은 엄격히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 국내 기업이 하기 어려운 조달은 공개 조달에 의하고 있다. 국영 석유회사(Petronas)는 계약자가 국내적으로 조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정책이 비특정 특허 마진을 조건으로 하여, 단지 국내 공급자가 외국공급자와 같은 질의 공급이 가능할 때만 적용하고 있다.

10. 필리핀

10.1 환경관련 규제

1999년 “청정공기법(Clean Air Act)”이 공포되었는 바, 그중 외국투자자의 관심 대상이 되는 것은 소각시설(incineration) 사용금지 문제이다. 외국투자 기업의 입장에서선 첨단 소각시설, 즉 850도 이상으로 폐기물을 소각함으로써 독성물질을

유발하지 않는 소각시설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10.2 투자진출상의 제한

10.2.1 투자진출 제한 분야

1991년 제정 외국인 투자법에 따르면 방송매체, 엔지니어, 의료업, 회계업, 설계업, 화학관련분야, 통관중개업, 임업, 법률용역 등 전문서비스 분야, 소매업 등은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고 있다. 또한 건전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분야, 투자우선순위 계획(Investment Priorities Plan)에 명시되지 않은 분야, 헌법 또는 법률에 저촉되는 분야, 독점 조장 가능 분야, 필리핀 업체가 이미 충분히 개발하고 있는 분야는 투자가 제한된다.

10.2.2 지분소유 제한

업종에 따라서는 외국인 최대지분 소유가 제한된다. 투자 인센티브를 받지 않는 내수기업은 Negative List상의 제한을 적용 받고 있다. 한편, 투자 인센티브 수혜기업의 경우 개척산업(pioneer industry)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지 않는 경우 무제한이나, 비개척산업은 40%로 지분 소유가 제한된다. 국내 및 해외인력 수급업, 건설 및 건설관련 보수계약(공공사업 분야) 분야는 외국인 최대지분소유가 25%까지 허용되며, 광고업은 외국인 최대 지분소유 상한이 30%까지 허용된다. 자연 자원개발, 부동산 소유, 공공시설 운영관리, 관급공사, 국영 및 공공기업에 관한 물자조달업, 국내 및 해외 건설업·방위관련 건설업·공공시설 건설업, 납입 자본금 20만 달러 미만의 국내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 최대 지분소유 상한이 40%까지 허용된다.

10.2.3 최소자본 요건

외국인 소유 내수지향기업(Domestic Market Firms)이나 소모성 자원(Depleting Resources)에 해당하는 필리핀산 원자재를 사용하는 외국인 수출지향기업에 대해서는 최소 20만 달러의 자본금이 요구된다. 기타의 경우 필리핀의 기업법에서는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해 최소 5천 페소의 불입자본금을 요구하고 있으나 비현실적인 규정으로, 기업등록관리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해당업종의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실질적인 금액의 투자를 요청하고 있

다.

10.2.4 지사·사무소 설치 제한

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 및 지사의 설립은 기업등록관리위원회의 허가서를 취득해야 한다. 외국제조기업만이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고 외국상사는 일정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설립을 인정하지 않는다.

10.2.5 부동산 취득 및 사용 제한

외국인의 토지 소유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필리핀측 지분이 60% 이상인 외국인 투자업체는 토지 소유가 가능하다. 외국인(업체)의 건물에 대한 소유는 가능하다.

10.2.6 수출의무 부여와의 관계

수출자유무역지대(PEZA) 공단소재 외국투자기업은 원칙적으로 생산량 전량을 수출하도록 되어 있다.

10.3 정부조달 시장의 장벽

10.3.1 정부조달 참여상의 제약

필리핀 정부예산으로 조달하는 물품의 입찰에 순수한 외국업체(제조업자, 공급업체, 중개업체 등)의 참여는 불가능하며, 필리핀인의 투자비율이 60% 이상인 합작법인을 설립하여야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ADB, IBRD 등으로부터 외자를 지원 받아 물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동 국제금융기관의 회원국업체는 합작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입찰참여가 가능하나, 동 물품이 회원국내에서 제작·조립되어야 하는 제한을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마닐라 소재 아시아개발은행(ADB)의 경우 자체적으로 공사 및 컨설팅서비스, 물품구매 등을 발주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회원국(한국도 회원국) 업체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매월 10여건의 컨설팅서비스 입찰이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한국 컨설팅업체는 참여가 저조하며 앞으로 참여시 기회의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10.3.2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

정부발주 건설공사에서 외자도입 없이 100% 필리핀 정부예산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외국건설업체의 입찰참여가 불가능하고, 필리핀 업체 또는 필리핀인의 투자비율이 75%이상인 합작법인을 설립해야 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ADB, IBRD 등으로부터 외자를 지원 받아 발주되는 공사는 외국건설업체의 입찰참여가 가능하나, 사전에 필리핀 건설산업청(Construction Industry Authority of Philippines)으로부터 특별면허(Special License)를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건설업 특별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필리핀내에 일정 규모이상의 사무실을 갖춘 지사를 설치하고, 면허등급에 따라 일정규모이상의 자본금·기술자·장비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민자유치산업의 경우 외국기업이 민자유치산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출자지분 제한이 없으며 100% 전액 출자도 가능하다. 다만, 전기·상수도 등 공익사업(Public Utility)인 경우에는 외국인의 출자지분이 40%이하로 제한되고 있다. 민자유치사업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체에게 발주하는 경우, 동 민자유치사업에 외자가 도입된 경우에는 외국건설업체가 직접 입찰 참여 가능하나, 순수 필리핀 자본으로 추진되는 민자유치사업의 경우에는 민간발주공사로 간주되어 필리핀인이 60%이상 출자한 합작법인을 설립해야 입찰 참여 가능하다.

민간발주 공사는 외자 또는 내자 어느 경우이건 모두 필리핀인의 지분이 60% 이상인 합작법인을 설립해야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에스트라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조치의 일환으로 1998.10월부터 순수민간발주공사 수주시 외국인 100% 투자법인을 허용하도록 하되, 대표자는 필리핀인으로 하도록 개정하였다. 그러나 경제개발청과 건설산업청간의 견해 차이로 건설산업청은 외국인 100% 투자기업에 대한 면허발급을 보류하고 있어 실질적인 개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설계·감리 등 컨설팅 용역부문에서 내자에 의한 정부조달용역은 필리핀인의 투자비율이 75%이상인 합작법인을 설립하여야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이 경우 컨설턴트는 필리핀인을 원칙으로 하되, 필리핀인이 부족하거나 기술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외국 컨설턴트의 고용이 허용되고 있다. 외자에 의한 정부조달용역은 외국 컨설팅업체의 참여가 가능하나, 컨설팅회사 및 고용된 컨설턴트의 자격에 관하여 동 자격을 관할하는 관계당국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한편, 민간이 발주한 컨설팅용역은 필리핀인의 투자비율이 60% 이상인 합작법인을 설립하여야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11. 싱가포르

11.1 환경관련규제

싱가포르 정부는 환경오염 방지차원에서 껌과 수은 과다함유 건전지, 오존층 파괴물질인 냉매(CFC: 염화불화탄소) 사용한 자동차 에어컨, 비약품성 에어러졸 제품, 폴리스티렌 제품, 1마력 이상의 컴프레서 보유 비가정용 냉장고 등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각종 국제환경협약의 이행과정에서 보다 많은 품목이 환경적 이유로 수입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수질오염 통제 및 하수에 관한 법(Water Pollution Control & Drainage Act)”에 의하여 폐수무단처리 등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1차 위반시에는 10,000 싱가포르 달러 이하의 벌금 및 6개월 이하의 금고형, 2차 위반시에는 20,000 싱가포르 달러의 벌금 및 1년 이하의 금고형, 3차 위반시에는 관련 영업허가를 취소한다.

공기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부 소속 공해방지국원이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하거나 공장 굴뚝에 오염측정계를 부착하여 공해의 방출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기준치 이상의 공해를 방출할 경우에는 1회 10,000 싱가포르 달러 이하의 벌금부과(벌금부과 결정후 위반이 계속될 경우 1일 500 싱가포르 달러 이하의 벌금 추가 부과) 또는 3개월 이하의 금고형에 처한다.

11.2 투자진출상의 제한

싱가포르는 토지, 자원 및 노동력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방된 투자제도를 갖추고 외국인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기제조, 언론매체(news media), 부동산소유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만 투자를 제한한다.

11.2.1 투자진출제한 분야

제조업에서 11개 제조업종(맥주, 담배, 냉장고, 에어컨, 선철·팔레트, 압연철 제품 등) 진출에 대해서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제조업규제법(Control of

Manufacturing Act)에 의해 사전허가가 필요하다.

엔지니어링 및 건축서비스부문의 경우 1995년 4월 엔지니어링 회사의 100% 외국인소유를 허용하였으나 회사대표 및 이사회 3분의 2는 국내 관련단체(professional bodies)에 등록된 엔지니어, 건축가 또는 토지조사전문가(land surveyor)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11.2.2 영업기관(Business Organizations) 설립요건

외국인과 국내인 모두 자유롭게 회사의 설립 및 영업을 가능하다. 싱가포르 내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등록법이나 회사법에 의거하여 회사·영업등록청(Registry of Companies and Businesses)에 등록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싱가포르내에서는 영업의 형태(types of business)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은행, 보험 등 일부 영업의 경우에는 싱가포르 정부의 특별허가가 필요하고, 에어컨, 냉장고, 담배 등 “제조업통제법(Control of Manufacture Act)”상에 명시된 품목의 제조를 위해서는 사전허가(License)가 필요하다. 한편 사무소의 경우에는 상업적 거래를 할 수 없다.

11.2.3 부동산 취득 및 사용제한

싱가포르의 토지는 사유지, 99년 임대지, 99년 임대지, 30년 임대지 등으로 구분되며, 외국인이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무실 건물의 경우 외국인이 구입하는데 제한이 없으며, 주거용 건물의 경우 외국인은 국영주택공사 아파트 및 5층 이하 아파트(flats)를 소유할 수 없으나, 콘도미니엄 형태로 개발된 주택 또는 6층 이상 아파트의 구입은 허용된다. 산업 및 상업용,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의 임대에는 제한이 없다.

11.2.4 건설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비율 제한

싱가포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고용비율에 의하면, 건설부문의 경우 싱가포르 고용인 1명당 외국인 근로자를 최대 5명까지만 고용할 수 있다. 또는 건설부문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시 고용주에게 비숙련자 1인당 월 470 싱가포르 달러, 숙련자(certified skilled) 1인당 월 30 싱가포르 달러의 세금을 부과한다.

11.3 정부조달 시장의 장벽

싱가포르는 1997년 10월 20일 발효된 WTO “정부조달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GPA)” 가입국이다. 싱가포르의 입찰제도는 외국업체의 참여에 대한 제한 없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싱가포르의 입찰 주관처는 대부분 정부기관, 국영기업 등이다. 정부 물품 및 용역 구매시 S\$15,888(토목건설공사시 S\$30,000) 이상일 경우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법인도 정부의 입찰규정을 근간으로 하여 자체실정에 맞도록 수정을 가하여 자체 입찰규정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 입찰조건을 충족하는 3개사 이상의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며 원칙적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의 입찰 참가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형 기계 플랜트 및 건설공사 입찰은 과거의 물품 공급실적, 재정상태 등을 검토한 후 응찰자격 유무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아세안 회원국에 대해서는 77.2월 회원국간에 합의한 무역에 관한 우대조항에 의거, 입찰공고일 일주일전에 입찰에 따른 사항을 사전 통지하며 US\$ 4만 미만의 정부공사 발주시 비아세안 회원국보다 입찰가액의 2.5%를 우대한다. 또한 토목 건설공사시 입찰참가 기업의 싱가포르인 주식소유 지분에 따라 2.5%-5%의 우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물품 및 용역 구매시 S\$ 1만 5천(토목건설공사시 S\$3만) 이상의 입찰건에 대한 정보는 입찰 마감일 약 4주전에 관보에 게재하고 필요시 일간지에도 게재할 수 있다. 아울러 싱가포르 정부는 입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부기관 발주 입찰정보의 전산화를 추진하여 전산망을 통하여 가입자에게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입찰기관에 응찰서류 제출을 통한 직접 참가와 합작투자법인, 대리인을 통한 입찰 참가대행이 가능하며 응찰서류 제출시 입찰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입찰보증금은 약 1%이며 입찰 금액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입찰기관에 입찰업체로 사전 등록된 업체의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입찰 서류는 사전에 공지한 입찰함에 공동 보관하여 입찰 마감일까지는 여하한 상황 하에서도 입찰함을 개봉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마감일 후 입찰함 개봉위원회가 입찰함을 개봉하여 서류를 검토하며 입찰가격의 공개 등 업무를 수행한다. 개봉위원회에 검토가 끝난 입찰서류는 입찰결과 예정공개일 최소 3주전에 입찰위원회로 이송되어 낙찰자를 선정하게 된다. 낙찰자 결정은 낙찰 예정금액에 따른 각각의 입찰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 결정하며 그 내용은 관보에 게재한다.

입찰금액에 따라 입찰위원회 구성이 달라지는데 물품 및 용역가액 1만5천(토목건

설공사 3만) 이하는 해당 실시기관의 담당관, 3만 이하는 3인의 부서장급, 50만 이하는 차관 1명과 공무원 2명, 500만 이하는 차관 2명과 공무원 1명, 500만 이상은 차관 3명으로 구성된다.

낙찰자 선정기준은 최저가격 입찰자가 우선 순위이며 만약 최저가격 입찰자외의 입찰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상기 입찰위원회가 별도의 서면 사유서를 작성해야 한다. 기계 및 장비입찰의 경우 공급자의 기술 및 서비스 정도, 장래의 부품공급 원활성 등이 고려된다. 낙찰자는 낙찰과 동시에 계약금액의 최소 5%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입찰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통상 6개월간의 하자보수기간이 설정된다.

12. 멕시코

12.1 환경관련 규제

멕시코 정부는 1988년 1월 종전 “1982년 연방 환경보호법”을 폐기하고 “생태계 균형 및 환경보호를 위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 법은 미국의 “환경보전 및 회복법(RCRA)”을 모델로 한 것으로 마킬라도라 기업이 제조 또는 조립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의 처분 또는 정화활동을 의무화하기 위한 것으로 결국 환경보호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멕시코 정부는 1988년 6월 유해물질 리스트를 발표하고 해당제품의 수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12.2 투자진출상의 제한

멕시코는 과거에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하여 제한이 심했으나 1984년 이후 외국인 규제의 틀에 몇 가지 변화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1993년 12월 도입된 “외국인 투자법(LIE)”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상당히 완화하고 있다(1996년 개정). 이 새로운 외국인투자법 하에서는 금지분야(석유채굴 및 정유, 국가안보관련 산업)로 정하여 있지 않는 한 모든 분야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가 허용된다.

이 법에 따르면 704개 분야 중 606개의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

지 않고 있다. 나머지 98개 분야 중 37개 분야는 외국인 투자 위원회(Foreign Investment Commission: CNIE)로부터 사전허가를 얻을 경우 100% 투자까지도 허용되고 있다. 35개의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출자지분을 10%, 25%, 49%(특히 장거리통신분야)로 제한하고 있다. 그밖에 26개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고 있는 분야 중 16개 분야에 대해서는 멕시코 국민에게만 투자가 허용되며, 10개는 멕시코 국가에 유보되어 있다. 그밖에 외국인 출자지분이 49%를 초과할 때와 총투자 가치가 매년 외국인 투자위원회에 의해 설정되는 기준(threshold amount)을 초과할 때에는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12.2.2 기타 서비스관련 장벽

해운, 유통, 건설 등의 분야에서 외국기업이 멕시코내에서 활동하는데는 특별한 제약은 없는 편이다. 그러나 멕시코의 표준규격제도(Norma Official Mexicana: NOM)는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수입규제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1994년 3월부터 대상품목을 81개에서 424개로 확대하여 규격획득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규정의 개정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NOM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때 충분한 준비시간을 주어야 하는데 멕시코 정부는 갑작스런 관보 광고를 통해 공고 다음날부터 시행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외국 투자 기업의 애로사항이 되고 있다.

12.3 정부조달 시장의 장벽

멕시코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멕시코의 정부조달에 관한 정책은 정부조달계약에 있어서 자국산업이 보다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입찰의 경우 오직 국내 공급자와 국내상품(국내부품 사용비율이 50%를 초과하여야 함)만이 참여가 가능하다.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일정한 제약요건 하에서 외국인 입찰자의 참여가 가능하다. 즉, 외국인의 입찰참여가 가능한 경우는 입찰이 국제조약 하에서 의무적으로 요구되어 질 때 또는 계약이 특정적으로 국제조약의 대상이 되는 경우, 적절한 국내 공급자가 없는 경우, 외국인의 신용에 의해 금융지원을 받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소수의 국내 회사만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나 정부기관에 의한 검토과정에서 국내 입찰자의

제시가격이 국제수준과 비교하여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판단될 때 외국인에게도 입찰참가를 공개하여 시행하고 있다.

13. 브라질

13.1 환경관련규제

브라질은 급속한 공업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규제하기 위하여 환경 오염방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공업이 발달해 있는 남부지역 공업지대에서는 州, 市를 중심으로 무거운 벌과금을 부과하는 등 환경오염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북동부 등 저개발지역에서의 정부지원 지역개발프로젝트 및 광산개발 등에 대한 환경규제는 약한 편이다.

13.2 투자진출상의 제한

1995년 개정헌법은 투자에 있어서 내외국인 차별조항을 철폐하였으나, 시행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많은 부분에 있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차별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브라질에는 국내기업 우대법규의 불투명성, 행정의 비효율성, 사회간접자본의 낙후, 근로자 권익보호에 편중된 노동관련 법규 등 투자에 상당한 애로 및 장벽이 존재하고 있다.

13.2.1 투자진출 제한

브라질에는 통신, 석유채굴, 정유 등 전략산업 분야, 교통, 언론 등에 다양한 투자규제가 존재하고 있다. 1995년 외국인 차별철폐를 위한 헌법개정을 하였으나, 개별적 시행을 위한 법령의 제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통신, 유전, 광산, 금융산업 분야에는 외국인의 자본참여가 제한되고 있다. 컴퓨터, 디지털 전자제품 분야에는 외국인의 참여지분이 제한되고 있으며, 국산화 요건과 수출실적 요건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자동차 분야에 있어서는 1995년에 국산사용 요구조건과 수출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도입되어 Mercosur 회원국들과 시행 종료를 협의하

고 있다. 광산채굴 분야에는 외국인에 대하여 투자지분의 50%이상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보건분야에서의 외국인 투자는 헌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밖에 외국 건설회사는 브라질 회사가 행할 수 있는 건설기술 용역을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이동통신 분야에 외국인 절대다수 지분 보유 불허 및 2001년까지 장거리 및 국제전화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다.

13.2.2 부동산 취득 및 사용제한

브라질은 건국 이래 미국이나 마찬가지로 부동산 매입에 관하여 하등의 제한이 없다. 그러나 1971년 제정된 외국인법에는 외국인의 농지 취득과 관련하여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다.

13.2.3 수출실적 요건의 부여

브라질에서는 수출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수출실적 요구조건을 활용하고 있다. 정보산업 부문에서의 재정적 인센티브는 수출 및 무역균형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제공되고 있다.

13.3.4 국산부품(Local Contents) 사용 의무

최근 몇 년 동안 브라질은 정부조달, 공적신용, 수출 및 조세인센티브 그리고 관세감면 등에 있어서 자국산 부품 사용 계획을 활용하여 왔다. 이러한 계획은 특히 전자제품 제조와 관련하여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국산부품 사용 요구조건은 구체적인 품목에 따라 다르다. 또한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산부품의 사용이 투자인센티브의 일환으로 활용되어지고 있다.

13.3.5 기타 서비스관련 장벽

브라질은 WTO 서비스무역에 대한 일반협정(GATS)상의 통신서비스 협정, 금융서비스 협정 등을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다. 브라질에 대한 서비스 수출은 제한적인 투자진출법, 행정절차의 투명성 결여, 법규의 자의적인 적용, 특정분야에 있어서의 외국자본 참여 제한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

12.3 정부조달 시장의 장벽

브라질은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 및 관련기관들이 국산품 구입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제개발은행 차관과 관련된 구매입찰은 대외적으로 개방되고 있으나, 일부 국영기업은 국내기업으로부터만 구매하고 있다. 특히 통신, 컴퓨터, 소프트웨어 부분의 조달은 브라질내의 투자기업이외에는 시장접근이 어렵다. 최근 민영화 진전과 정부조달 사업의 무차별 정책 도입으로 시장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14. 폴란드

14.1 환경관련규제

14.1.1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기 장착 의무화

폴란드 정부는 1995년 7월 1일부터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에 대해 배기가스 정화기의 장착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하였다. 다만, 폴란드 국내에서 가장 가격이 싼 소형 대중차인 피아트 126P의 경우, 자동차 판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시행일자를 1997년 1월로 결정하는 등 개별적인 특별조치도 취해진다.

14.1.2 오존층 파괴물질 관련상품 수입규제

폴란드 정부는 1994년 8월 25일부터 몬트리올 의정서 제4조(비가입국에 대한 무역규제)에 의거하여 의정서 비가입국에 대한 규제물질 및 동 함유제품의 수출입을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정서 가입국이므로 이 조치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다.

14.1.3 에너지 효율 규제

에너지소비 효율성 통제의 일환으로, 전기모터 등 특정 전기제품은 폴란드에 수출하기 전에 폴란드 에너지 경제 감독원으로부터 전력사용 효율성에 대한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4.2 투자진출상의 제한

14.2.1 외국인 투자 제한

폴란드의 기본목표 중 하나는 EU에 가입하는 것이므로 무역 및 경제정책도 낮은 관세, 무관세 장벽, 합리적인 법률, 경제협력 확대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991년 외국인투자법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100%까지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폴란드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개선을 하였다. 이러한 개선내용에는 내국민 대우, 자본의 흐름에 대한 제한 완화, 외국인들이 정부의 승인없이도 소유했던 토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400m²의 도심권 토지 또는 1ha의 농촌지역 토지까지 구입가능)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폴란드의 법은 모든 회사에 있어서 100%까지 외국인 출자지분을 허용하였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폴란드 상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유한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형태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이 일부 남아 있는데, 방송(33%), 어업(49%), 공항(49%), 장거리 통신(2003년까지 49%), 국제통신(2003년까지 0%) 등에서 외국인 소유지분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공항 및 항구의 경영, 부동산 중개업, 방위산업, 수입소비재의 도매업, 변호사업, 민영화된 국유재산 등의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담당부처인 국고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은행 및 보험회사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중앙은행 및 국고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우편, 탄광, 정유, 전력, 방위산업, 중화학, 통신, 항공, 철도, 제당, 주조산업이 국가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본격적인 민영화 사업의 추진에 따라 우선 정유, 통신, 항공, 전력 등 분야에 대규모 외국인 투자 진출이 가시화 단계에 와 있다.

폴란드 정부는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2001년 3월 중·장기 투자 증대 전략을 채택하고 새로운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안을 마련중에 있다. 동 법안의 목적은 대규모 투자, 많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기술혁신에 투자하는 기업과 개인, 그리고 투자기업내 고용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기업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있다.

14.2.2 금 융

현지 대부 이자율이 25~30%정도에 달하며 불량채권 급증으로 2~3중 담보를 요구함에 따라 현지금융 조달이 어렵다. 그간 대부분의 은행이 국영으로 되어 있

고, 중앙은행의 엄격한 금리통제 및 각 은행의 까다로운 여신관리체제로 인해 현지 대부 등 금융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1999년 들어 정부가 은행, 보험 등 금융분야의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 대부 이자율도 기업대출의 경우 15~16%로 크게 인하되어 현지 금융조달 여건이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년중 외국계 은행의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어 앞으로 금융조달상의 애로는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14.2.3 과중한 조세부담

폴란드는 1999년 들어 법인세율을 농림, 수산업 부문을 제외하고 기존의 36%에서 34%로 낮추고, 2000년 28%, 2001년 26%로 인하 후 매년 2%씩 인하하여 2003년까지 22%로 인하할 계획이다. 그러나 통신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은 22%이며, 알콜, 담배, 연료 등에 부과되는 소비세율도 인상되었다. 이와 같이 폴란드는 법인 소득세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관세, 부가세, 특소세 등이 고율로 책정되어 있으며, 국가 재정수입에 따라 세율이 수시로 조정되고 있어 기업의 장기경영계획 수립이 곤란하다. 또한 세수확보를 위해 세금징수가 용이한 외국기업들을 집중 징수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4.3 정부조달 시장의 장벽

폴란드는 1995년 1월 발효된 “정부조달법(The Act on Public Procurement)”에 의거 조달청(Office of Public Procurement)을 신설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물자구매 창구를 일원화하고 있다.

조달청은 건당 3만 유로 이상의 중앙 및 지방 정부 조달물자 구매, 구매방식의 결정, 조달업무 관련 법규제정, 계약조건, 계약서 양식 및 관련 법규의 홍보, 조달 중재위원 선정, 각료회의에 정부물자 조달업무에 대한 보고, 정부물자 조달에 관한 국제협력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폴란드는 WTO 정부조달협정(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에는 가입하지 않았으며, 97.9월부터 옵저버 자격으로만 참여하고 있어 외국업체의 입찰참가에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EU 가입을 목표로 현행 조달법을 EU의 조달규범에 맞도록 대폭 정비 중이다.

조달시행원칙은 입찰절차의 투명성 제고, 경쟁촉진, 규모의 경제 이용, 입찰참가

자 동등 대우, 분할구매 금지 등이 있으며, 통상 완전경쟁입찰(unlimited tender)이 선호되고 있다.

입찰공고는 3만 유로화 이상인 경우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내국민우대(domestic preferences)' 조항을 두고 있어, 폴란드인 응찰자에게 20%의 가격인하 우대를 주고 있다. 단, 우대는 공급 원자재의 50%가 폴란드산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입찰공고는 조달청 발행 관보(Bulletin of Public Procurement)를 통해 입찰실시 결정후 10일 이내에 공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공고 내용은 구매계약 3만 유로화 이상의 완전 경쟁입찰(unlimited tender), 2단계 입찰(two-stage tender) 및 사전적격심사(pre-qualification)가 있고, 구매계약 20만 유로화 이상의 제한 경쟁입찰(limited tender) 실시 등이다.

입찰종류는 완전 경쟁입찰(unlimited tender) (3만 유로화 이상의 구매계약), 제한 경쟁입찰(limited tender) (3만 유로화 이하의 구매계약), 2단계 경쟁입찰(two-stage tender), 협상입찰(negotiations with retaining competition), 오퍼 요청에 의한 입찰(request for quotations), 수의계약구매(single-source procurement) 등이 있다.

타국과 달리 폴란드에는 외국업체의 입찰 참가 규제를 위한 에이전트 조달대행 제도가 없으므로 현지업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폴란드 내국 공급업체나 외국 공급업체는 동등한 자격으로 응찰할 수 있으나, 3만 유로 이하의 조달 건에 대하여는 조달청이 폴란드 내국 공급업체나 폴란드내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 공급업체로 응찰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IV. 결론

1994년 우르과이라운드(UR) 서비스협상에서의 합의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협상은 이제 시장개방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있어 협상당사국간에 1차 시장개방요구서 교환을 목전에 두고 있다. 2단계 협상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본 연구는 주요 선진국 및 향후 교역 대상국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개발도상국의 환경규제 현황 및 제도적 시장진입 장벽의 조사분석에 초점을 두어 진행되었으며, 그 최종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환경서비스 부문에 대한 1차 시장개방요구서안을 작성하였다.

UR 서비스협상에서 환경서비스 부문이 중요한 협상대상으로 부각되지 않았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진행 중인 후속서비스 협상에서도 환경서비스 부문은 협상 당사국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되어있는 당면문제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이는 선진국 환경서비스 시장의 경우 민간부문의 역할이 50%에 이를 정도의 상당한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시장자체는 성숙단계에 도달해 있어 잘 짜여진 수직분업 체계를 구성하고 있고, 또 대부분 개방상태에 있어 추가적인 협상 쟁점을 내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개도국의 경우에도 아직 필요한 환경규제가 일정 다다르지 못하고 있고, 관련 시장 또한 형성단계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자세히 분화되어 있지 않아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시장활동 영역이 제한되어 있다. 이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환경서비스 시장에 대한 양허계획을 제시할 수 없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환경서비스 협상의 주된 목표가 일차적으로 선진국 시장에 잔존하는 일부 진입장벽 특히 자연인인 환경서비스 공급자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제약의 제거가 될 수 있으나, 이는 해당국가의 이민제도 등, 비 상업적인 영역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호혜적 입장에서 시장진입 제약을 추구해야 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이 있다. 결국, 이번 협상의 주된 목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형성단계에 있는 개발도상국 환경서비스 시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제도적 진입장벽의 선제적 감축에 두어져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다. 이 가운데 동아시아 개도국 환경시장은 예상되는 높은 환경서비스 시장 성장률과 함께 지정학적 근접성에 따른 상대적 이점을 제공하고 있어 1차 시장개방요구서 작성 대상국으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부록에 제시될 시장개방 양허요구서안은 다음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다. 먼저 진

행중인 협상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국내 관련부문에 전파하고 협상대책 관련 산업계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한다는 입장에서 환경산업부문 대외교역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진출국 시장진입장벽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으나, 관련 기업의 참여가 저조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업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협상동향 및 조사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시장개방요구서 작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2002년 1월 이후, 본 조사연구 수행 및 협상대책논의를 위해 협상 대책협의회(2002.1.31, 2002.5.9)와 관련 업체 간담회(2002.3.15, 2002.4.29)가 각 2회 씩 개최되었다. 본 연구결과 도출된 환경서비스 시장개방요구 시안은 세부협상에 참여하는 소관부처 협의(2002.5.21)를 거쳐 관련 협상기구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금번 서비스협상을 국내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기회로 활용한다는 기본 대응방침이 정리되었고, 이를 위해 관계부처, 연구기관, 업계, NGO 등이 참여하고 있는 “DDA환경협상대책단” 활동을 활성화하며 필요한 적극적인 대외협력 사업을 전개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환경핵심서비스 분류체계 세분화를 지지하는 입장에 서서 환경연관서비스 목록을 관련 협상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환경서비스 시장개방이 교역당사국 및 지구환경 문제 해결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추가적 시장 자유화를 지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 재확인되었다.

중국을 포함한 9개 동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작성한 시장개방요구서안 작성 원칙에 있어 개방요구서 작성 기준이 되는 환경서비스 분류체계의 경우 EC 환경핵심 서비스 항목의 이용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었으므로, UN 서비스 협상당시 사용된 협상문서(W/120) 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세부분류 항목들 가운데 W/120 A항의 폐수, B항 폐기물, C항 위생 및 유사서비스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환경서비스 항목은 W/120 D항 기타 환경서비스부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하였다.

1차 시장개방요구 대상국가의 선정은 먼저 선진국 환경시장이 세계시장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나 이미 포화상태에 있다는 점, 총 점유율이 7% 미만인 개도국 시장의 경우 그 성장성이 연평균 10-15% 내외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타 지정학적인 인접성을 고려하여 동아시아 일부 개도국에 한정하였다. 여기에는 또한 전반적으로 국내 환경산업의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60-70% 수준이나 핵심부문의 해외 의존도는 여전히 심한 것으로 나타난 국내 환경서비스산업의 대외 경쟁력 및 해외진출 가능성에 대한 고려도 가미되었다. 시장개방요구서 대상국가의 수는 실질적인 양자간 양허협상 진행 여력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것이

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는 6월 30일 각국 시장개방요구서 교환 이후 2단계 서비스 협상작업 일정에 따라 2003년 3월 31일까지 1차 시장개방 제안서를 제출하는 작업이 남아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 조사연구 사업은 우리나라에 제출된 시장개방요구서를 취합·분석하고 국내 관련 서비스 부문의 현황 및 업계의견을 수렴하여 1차 시장개방 제안서를 작성하는 작업에 초점이 두어져야하며, 같은 기간동안 전개될 양자 및 다자 협상에 대한 세부대책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립환경연구원, 「21세기 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 1997.
- 대외경제정책연구소, 「주요국의 서비스업 시장개방 현황과 WTO 뉴라운드 서비스 협상-통신·환경·에너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김준동 외, 2001.12
- 산업연구원, 「서비스 부문의 생산과 무역」 1998.
- 산업연구원, 「유망환경산업 분석 및 육성방안」 1997.
- 한국은행, 「환경오염방지지출 추계결과」 1999, 1998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기술수준의 파악과 보급에 관한 연구 (KEI/1997/RE-24)」
- 환경관리연구소, 「2000 환경산업총람」 2000.
- 환경관리공단, 「환경산업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1998.
- 환경백서, 2000, 1999, 1997.
- 외교통상부, 「뉴라운드 준비 참고자료 : 각국 입장관련 자료」, 1999. 4
- _____, 「WTO 뉴라운드 논의현황 및 우리입장(Ⅱ)」, 1999. 6
- _____, 「외국의 통상환경」, 2001.
- 주 제네바 대표부, “WTO/서비스양허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1999. 3
- _____, “WTO/서비스양허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1999. 4
- _____, “WTO/서비스양허위원회 회의결과 보고(AR)”, 1999. 6
- 환경부, “WTO 환경서비스 분류체계 개정에 대한 주요국 제안서 검토”, 1999. 6
- 환경부, “환경서비스 시장개방 확대의 영향과 대응방안”, 2000.
- Christopher. Adams, *The Greening of China's Five-Year Plan*, 1996.
- Drouet, D., *Comments on the 'Manual for Data Collection on the Environment Industry*, report prepared for the OECD DSTI/Industry Division, 1997.
- Higgins, *Global Environmental Industry in Ecodecision*, ETDC, 1994. 1.
- Asian Water & Sewage, *Adequate Water Supplies Wanting in Thailand*, 1996.
- EBI, *The Global Environmental Industry: A Market and Needs Assessment*, 1996

- _____, *EBI Report 2000 The US Environmental Industry and Global Market Vol. I, II*, 1998.
- _____, *EBI Report 1211 Asia Country Briefings*, 1998.
- Engineering News Record, *Sewerage Scheme Taxes Bangkok: McGraw-Hill Company*, New York, 1996.
- Environmental Resources Management Group, *Operating in China, Pollution Control in the PRC: Regulations and Reality*, 1995.
- Gallup Research, *CSS Report on Urban Construction & Environmental Protection Industries*, prepared by Wu Xuling, China, Beijing, 1995.
- NEPA, *China Trans-Century Green Program Draft*, Beijing, China, 1995.
- NEPA, *he Chinese Projects for Environmental Projection*, Beijing, China, 1996.
- OECD, *Assessing Barrier to Trade in Services: Environmental Services*, COM/TD/ENV(98)128, 1998.
- _____, *The Global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 Industry*, 1996
- _____, *The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 Industry, Manual for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OECD/Eurostat, 1999.
- _____, *Interlim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of Environment Industry*, OCDE/GD(96)117, Paris
- _____, *Trade Liberalisation in EGS* COM/ENV/TD(98)37/FINAL.
- _____, *The Environmental Industry: The Washington Meeting*, 1996.
- _____, *Managing the Environment with Rapid Industrialisation*”, Development Centre Studies, Paris, 1994.
- Public Works Financing, *Bangkok Wastewater's Growing Pains*, Westfield, N.J. 1996.
- U.S. Embassy Beijing, *China's Air Pollution Law*, 1996.
- _____, *Hard Currency Financing for Environmental Projects in China*.
- _____, *Environmental Investment and Business Opportunities in China*
- USDOC, *China: Environmental Technologies Export Market Plan*, Trade Promotion Coordinating Committee/Environmental Trade Working Group, 1996.

World Bank, *The Chinese Economy: Fighting Inflation, Deepening Reforms*, 1996.

_____, *Mainstreaming the Environment*, 1994.

WTO, *Communication from the European Communities and Their Member States*, CSC, 1999. 9

<부록 1>, <부록2> 의 1차 환경서비스 시장개방요구서(국/영문시안)내용은 요약전문을 참조

<부록 3> 주요국 환경서비스 양허 현황

- o 자료 : WTO Service Database CD (1999)
- o 공급형태 : 1)국경간 공급, 2)해외소비, 3)상업적 주재, 4)자연인의 주재

1. 오스트레일리아

부문/부부문	시장접근 제한	내국민 대우 제한	추가 양허	비고
A. 하수서비스 (CPC 9401)	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 기술적 실현 가능성 희박 에 따른 Unbound
B. 폐기물처리 서비스 (CPC 9402)	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 기술적 실현 가능성 희박 에 따른 Unbound
C. 위생처리 및 유사서비스 (CPC 9403)	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 기술적 실현 가능성 희박 에 따른 Unbound

2. 오스트리아

부문/부부문	시장접근 제한	내국민 대우 제한	추가 양허	비고
A. 하수서비스 (CPC 9401)	1) Unbound* 2), 3) 없음 4) Part I에 기재된 것 이외는 Unbound	1) Unbound* 2), 3) 없음 4) Part I에 기재된 것 이외는 Unbound		* 기술적 실현 가능성 희박 에 따른 Unbound
B. 폐기물처리 서비스 (CPC 9402)	1) Unbound* 2), 3) 없음 4) Part I에 기재된 것 이외는 Unbound	1) Unbound* 2), 3) 없음 4) Part I에 기재된 것 이외는 Unbound		* 기술적 실현 가능성 희박 에 따른 Unbound
C. 위생처리 및 유사서비스 (CPC 9403)	1) Unbound* 2), 3) 없음 4) Part I에 기재된 것 이외는 Unbound이 며,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	1) Unbound* 2), 3) 없음 4) Part I과 시장 접근 항목에 기재된 것 이외는 Unbound		* 기술적 실현 가능성 희박 에 따른 Unbound
D. 기타 (배출가스의 정화 서비스 (CPC 9404), 소음 저감 서 비스 (CPC 9405), 자연 경 관보호 서비스 (CPC 9406), 기타 환경보호 서비스 (CPC 9409))	1) Unbound* 2), 3) 없음 4) Part I에 기재된 것 이외는 Unbound이 며,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	1) Unbound* 2), 3) 없음 4) Part I과 시장 접근 항목에 기재된 것 이외는 Unbound		* 기술적 실현 가능성 희박 에 따른 Unbound

3. 불가리아

부문/부부문	시장접근 제한	내국민 대우 제한	추가 양허	비고
A. 하수서비스 (CPC 9401)	1) Unbound*	1) Unbound*		* 기술적 실현 가능성 회 박에 따른 Unbound
B. 폐기물처리 서비스 (CPC 9402)	2) 없음	2) 없음		
C. 위생처리 및 유사서 비스 (CPC 9403)	3) 없음	3) 없음		
D. 기타 (배출가스의 감시서비 스(CPC 9404), 소음 감시 서비스(CPC 9405), 자연 보호 서비 스(CPC 9406)	4) 수평양허에 기재 된 제한사항 이 외는 Unbound	4) 수평양허에 기재 된 제한사항 이 외는 Unbound		

4. 캐나다

부문/부부문	시장접근 제한	내국민 대우 제한	추가 양허	비고
A. 하수서비스 (CPC 9401)	1) 없음	1) 없음		
B. 폐기물처리 서비스 (CPC 9402)	2) 없음	2) 없음		
C. 위생처리 및 유사서비스 (CPC 9403)	3) 없음	3) 없음		
D. 기타 (배출가스의 정화 서비스(CPC 9404), 소음 저감 서비스(CPC 9405), 자연 경관보호 서비스 (CPC 9406), 기타 환경보호 서 비스(CPC 9409))	4) 수평양허에 기재 된 제한사항 이 외는 Unbound	4) 수평양허에 기재 된 제한사항 이 외는 Unbound		

5.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부문/부부문	시장접근 제한	내국민 대우 제한	추가 양허	비고
D. 기타 (야생동물 보호 서비스, ONG 환경)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없음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없음		

6. 체코슬로바키아

부문/부부문	시장접근 제한	내국민 대우 제한	추가 양허	비고
A. 하수서비스 (CPC 9401)	1) Unbound 2),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1) Unbound 2),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B. 폐기물처리 서비스 (CPC 9402)				
C. 위생처리 및 유사서비스 (CPC 9403)				

7. 엘살바도르

부문/부부문	시장접근 제한	내국민 대우 제한	추가 양허	비고
배출가스의 정화 서비스(CPC 94040), 소음 저감 서비스(CPC 94050), 자연경관보호 서비스(CPC 94060), 기타 환경보호 서비스(CPC 94090)	1) Unbound 2) Unbound 3) 엘살바도르에 주소를 가진, 폐기물 처리 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인허가를 위해서는 담당 지방자치 단체에 등록을 해야한다. 4) Unbound	1) Unbound 2) Unbound 3) Unbound 4) Unbound		

8. 에콰도르

부문/부부문	시장접근 제한	내국민 대우 제한	추가 양허	비고
A. 하수서비스 (CPC 9401)	1) 없음	1) 없음		
B. 폐기물처리 서비스 (CPC 9402)	2) 없음	2) 없음		
C. 위생처리 및 유사서비스 (CPC 9403).	3) 없음	3) 없음		
D. 배출가스의 정화 서비스 (CPC 9404), 소음저감 서비스(CPC 9405), 자연 경관보호 서비스(CPC 9406), 기타(CPC 9409)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9. 에스토니아

부문/부부문	시장접근 제한	내국민 대우 제한	추가 양허	비고
하수와 폐기물 처리, 위생과 기타 환경 보소 서비스(CPC 구분 94)(민간 산업에 의해 계약된 하수 서비스 포함), 폐기물 처리 서비스(민간에 의한 계약), 위생과 유사 서비스 그리고 기타 환경 서비스(배출가스의 정화 서비스, 소음 저감 서비스, 자연 경관보호 서비스 포함)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기타 환경 서비스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10. EC 12개국

부문/부부문	시장접근 제한	내국민 대우 제한	추가 양허	비고
A. 하수서비스 (CPC 9401)	1) Unbound*	1) Unbound*		* 이 형태의 공급에 대 한 양허는 실현 가능 성 없음
B. 폐기물처리 서비스 (CPC 9402)	2) 없음	2) 없음		
C. 위생처리 및 유사서비스 (CPC 9403)	3) 없음	3) 없음		
배출가스의 정화 서비스 (CPC 9404)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자연 경관보호 서비스 (CPC 9406)				
D. 기타 환경보호 서비스 (CPC 9409)				

11. 핀란드

부문/부부문	시장접근 제한	내국민 대우 제한	추가 양허	비고
B. 폐기물처리 서비스 (CPC 9402)	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없음		
D. 기타 환경 서비스 (CPC 9404, CPC 9405, CPC 9406, CPC 9409)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없음		

12. 잠비아

부문/부부문	시장접근 제한	내국민 대우 제한	추가 양허	비고
환경서비스 (CPC 9401, CPC 9403)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13. 기니

부문/부부문	시장접근 제한	내국민 대우 제한	추가 양허	비고
A. 하수서비스 (CPC 9401) C. 위생처리 및 유사서비스 (CPC 9403)	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Unbound	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Unbound		

14. 헝가리

부문/부부문	시장접근 제한	내국민 대우 제한	추가 양허	비고
B. 폐기물처리 서비스 (CPC 9402) C. 위생처리 및 유사서비스 (CPC 9403)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Part I에 기재된 것 이외는 Unbound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Part I에 기재된 것 이외는 Unbound		

15. 아이슬란드

부문/부부문	시장접근 제한	내국민 대우 제한	추가 양허	비고
A. 하수서비스 (CPC 9401)	1) Unbound* 2) 없음 3),4) 환경 운영 면허 필요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 사항 이외는 Unbound	1) Unbound* 2), 3), 4) 없음		* 기술적 실현 가능성 희박에 따른 Unbound
B. 폐기물처리 서비스 (CPC 9402)	1) Unbound* 2) 없음 3),4) 환경 운영 면허 필요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 사항 이외는 Unbound	1) Unbound* 2), 3), 4) 없음		* 기술적 실현 가능성 희박에 따른 Unbound
C. 위생처리 및 유사서비스 (CPC 9403)	1) Unbound* 2) 없음 3),4) 환경 운영 면허 필요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 사항 이외는 Unbound	1) Unbound* 2), 3), 4) 없음		* 기술적 실현 가능성 희박에 따른 Unbound
D. 기타	1) Unbound* 2) 없음 3),4) 환경 운영 면허 필요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 사항 이외는 Unbound	1) Unbound* 2), 3), 4) 없음		* 기술적 실현 가능성 희박에 따른 Unbound

16. 이스라엘

부문/부부문	시장접근 제한	내국민 대우 제한	추가 양허	비고
하수와 폐기물 처리 서비스(CPC 9401 - CPC 9405)(산업활동은 포함하지 않음)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Note: 이 부문의 일반적인 활동은 지역 대행자를 필요로 한다.		

17. 일본

부문/부부문	시장접근 제한	내국민 대우 제한	추가 양허	비고
A. 하수서비스	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1) Unbound* 2) 없음 3)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 기술적 실현가능성 회박에 따른 Unbound
B. 폐기물처리 서비스	1) Unbound* 2) 없음 3) 바다에서, 선박으로부터의 폐유 처리 서비스 공급자에게 협의된 면허의 수가 제한될 수 있다.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1) Unbound* 2) 없음 3)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없음 4) 전분야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 기술적 실현가능성 회박에 따른 Unbound
C. 위생처리 및 유사서비스	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1) Unbound* 2) 없음 3)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 기술적 실현가능성 회박에 따른 Unbound
D. 기타 (배출가스, 소음 저감 서비스, 자연 경관 보호 서비스, 기타 환경보호 서비스)	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1) Unbound* 2) 없음 3)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 기술적 실현가능성 회박에 따른 Unbound

18. 쿠웨이트

부문/부부문	시장접근 제한	내국민 대우 제한	추가 양허	비고
A. 하수서비스 (CPC 9401)	1) Unbound	1) Unbound		
	2) Unbound	2) Unbound		
B. 폐기물처리 서비스 (CPC 9402)	3)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 된 제한사항 이 외는 Unbound	4) 수평양허에 기재 된 제한사항 이 외는 Unbound		
C. 위생처리 및 유사서비스 (CPC 9403)				

19.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부문/부부문	시장접근 제한	내국민 대우 제한	추가 양허	비고
A. 하수서비스 (CPC 9401)	1) 없음	1) 없음		
	2) 없음	2) 없음		
B. 폐기물처리 서비스 (CPC 9402)	3)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 된 제한사항 이 외는 Unbound	4) 수평양허에 기재 된 제한사항 이 외는 Unbound		
C. 위생처리 및 유사서비스 (CPC 9403)				
D. 기타				

20. 라트비아

부문/부부문	시장접근 제한	내국민 대우 제한	추가 양허	비고
A. 하수서비스 (CPC 9401)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없음		
B. 폐기물처리 서비스 (CPC 9402)	1) Unbound*	1) Unbound*		* 기술적 실현가능성 회박에 따른 Unbound
C. 위생처리 및 유사서비스 (CPC 9403)	2) 없음	2) 없음		
D. 기타 환경서비스 (CPC 9404; CPC 9405; CPC 9406; CPC 9409)	3)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4) 없음		

21. 레소토 왕국

부문/부부문	시장접근 제한	내국민 대우 제한	추가 양허	비고
A. 하수서비스 (CPC 940)	1) 없음	1) 없음		
B. 폐기물처리 서비스 (CPC 9402)	2) 없음	2) 없음		
C. 위생처리 및 유사서비스 (CPC 9403)	3) 없음	3) 없음		
D. 기타 (배출가스의 정화 서비스, 소음저감 서비스와 자연 경관보호 서비스)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22. 리히텐슈타인

부문/부부 문	시장접근 제한	내국민 대우 제한	추가 양허	비고
A. 하수서비스 (CPC 9401)	1) 기술적 실현가능성 회박 에 따른 Unbound 2) 없음 3) 없음 4) Part I에 기재된 것 이 외는 Unbound	1) 기술적 실현가능성 회박 에 따른 Unbound 2) 없음 3) 없음 4) Part I에 기재된 것 이외는 Unbound		#2 이 양허가 지 방 정 부 나 리히텐슈타인 정부 또는 이 들의 계약에 의한 공공 사 업 기능을 포 함하는 것으 로 해석되어 서는 안된다.
B. 폐기물처리 서비스 (CPC 9402)	1) 기술적 실현가능성 회박 에 따른 Unbound 2) 없음 3) 없음; 쓰레기 하치에 대하여서는 Unbound 4) 리히텐슈타인에서 요구 되는 상업적 주재와 Part I에 기재된 것 이 외는 Unbound	1) 기술적 실현가능성 회박 에 따른 Unbound 2) 없음 3) 없음 4) 리히텐슈타인에서 요 구되는 상업적 주재와 Part I에 기재된 것 이외는 Unbound		
C. 위생처리 및 유사서비스 (CPC 9403)	1) 기술적 실현가능성 회박 에 따른 Unbound 2) 없음 3) 없음 4) 리히텐슈타인에서 요구 되는 상업적 주재와 Part I에 기재된 것 이외는 Unbound	1) 기술적 실현가능성 회박 에 따른 Unbound 2) 없음 3) 없음 4) 리히텐슈타인에서 요 구되는 상업적 주재와 Part I에 기재된 것 이외는 Unbound		
D. 기타 환경 서비스 (CPC 9404 + CPC 9405 + CPC 9406 + CPC 9409의 일부)	1) 기술적 실현가능성 회박 에 따른 Unbound 2) 없음 3) 없음 4) Part I에 기재된 것 이 외는 Unbound	1) 기술적 실현가능성 회박 에 따른 Unbound 2) 없음 3) 없음 4) Part I에 기재된 것 이외는 Unbound		

23. 노르웨이

부문/부부문	시장접근 제한	내국민 대우 제한	추가 양허	비고
A. 하수서비스(CPC 9401)	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 사항 이외는 Unbound	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B. 폐기물 처리 서비스 (CPC 9402)	1) Unbound 2) 없음 3) 몇몇 폐기물의 영역에서는 독점상황이 존재함.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 사항 이외는 Unbound	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C. 위생처리 및 유사서비스 (CPC 9403)	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 사항 이외는 Unbound	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소음저감서비스 (CPC 9405) -자연경관보호 서비스 (CPC 9406) -기타 환경보호 서비스 (CPC 9409)	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 사항 이외는 Unbound	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배출가스 정화서비스 (CPC 9404)	1) Unbound 2) 없음 3) 정부는 자동차와 트럭의 배출가스에 대한 통제 서비스에 대하여 독점력을 가짐. 그러한 서비스는 비영리적 차원에서 제공되어야 함.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 사항 이외는 Unbound	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24. 파나마

부문/부부문	시장접근 제한	내국민 대우 제한	추가 양허	비고
d) 제외 : 배출가스 정화서비스; 소음저감 서비스 (CPC 94040과 94050). 양허는 다음의 활동으로 제한됨: 현재의 또는 신규의 정화시스템, 복구, 예방, 감시 서비스와 이들 분야의 컨설팅 서비스.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e) 자연경관 보호 서비스 (CPC 94060의 부분) 제외: 자연재해에 대한 평가와 이로 인한 피해의 평가 감 서비스를 포함하여, 환경과 기후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수행을 위한 서비스.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1) Unbound 2) 없음 3) Unbound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25. 모로코

부문/부부문	시장접근 제한	내국민 대우 제한	추가 양허	비고
환경서비스 (CPC 940)	1) Unbound 2) Unbound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없음		

26. 폴란드

부문/부부문	시장접근 제한	내국민 대우 제한	추가 양허	비고
D. 기타 환경감시. 환경보호 관련 자문. 배출가스 정화. 소음 저감 (CPC 9404, 9405)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없음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없음		

27. 카타르

부문/부부문	시장접근 제한	내국민 대우 제한	추가 양허	비고
환경서비스	1) Unbound 2) Unbound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1) Unbound 2) Unbound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 된 제한사항 이 외는 Unbound		

28. 루마니아

부문/부부문	시장접근 제한	내국민 대우 제한	추가 양허	비고
D. 기타 서비스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없음, 수평양허 양 허 부문에 기재된 제한사항만.		

29. 르완다

부문/부부문	시장접근 제한	내국민 대우 제한	추가 양허	비고
C. 위생과 기타 유사 서비스 (CPC 9403)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없음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없음		

30. 시에라리온

부문/부부문	시장접근 제한	내국민 대우 제한	추가 양허	비고
환경서비스 (부부문 A-D)	1) Unbound 2) Unbound 3) 없음 4) 수평양허 양허에 기재된 사항 이외 는 Unbound	1) Unbound 2) Unbound 3) 없음 4) 수평양허 양허에 기재된 사항 이외 는 Unbound		

31. 슬로바키아

부문/부부문	시장접근 제한	내국민 대우 제한	추가 양허	비고
A. 하수서비스(CPC 9401)	1) Unbound	1) Unbound		
B. 폐기물 처리 서비스 (CPC 9402)	2) 없음 3) 없음	2) 없음 3) 없음		
C. 위생과 기타 유사 서비스 (CPC 9403)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4) 수평양허에 기재 된 제한사항 이외 는 Unbound		

32. 슬로베니아

부문/부부문	시장접근 제한	내국민 대우 제한	추가 양허	비고
A. 하수서비스 (CPC 9401)	1) Unbound*	1) Unbound*		#8 공중편의 시설의 설 치; 허가권 은 슬로베니 아에 설립된 민간 운영자 에게 부여될 수 있다.
B. 폐기물 처리 서 비스 (CPC 9402)	2) 없음	2) 없음		
C. 위생과 기타 유 사 서비스 (CPC 9403)	3) 없음	3) 없음		
D. 기타 - 자연 경관 보호 서비스 (CPC 9406)	4) Part I에 기재된 사 항 이외는 Unbound	4) Part I에 기재 된 사항 이외는 Unbound		

33. 남 아프리카

부문/부부문	시장접근 제한	내국민 대우 제한	추가 양허	비고
A. 하수서비스(CPC 9401)	1) 없음	1) 없음		
B. 폐기물 처리 서비스 (CPC 9402)	2) 없음	2) 없음		
C. 위생과 기타 유사 서비 스 (CPC 9403)	3) 없음	3) 없음		
D. 기타 (배출가스 정화, 소음저감 서비스, 자연 경관 보호 서비스)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34. 스웨덴

부문/부부문	시장접근 제한	내국민 대우 제한	추가 양허	비고
A. 하수서비스(CPC 9401)	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 기술적 실현 가능성 회박에 따른 Unbound
B. 폐기물 처리 서비스 (CPC 9402)	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 기술적 실현 가능성 회박에 따른 Unbound
C. 위생과 기타 유사 서비스 (CPC 9403)	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 기술적 실현 가능성 회박에 따른 Unbound
D. 기타 - 배출가스 정화 서비스(CPC 9404)	1) Unbound* 2) 없음 3) 정부는 자동차와 트럭의 배출가스에 대한 통제 서비스에 대하여 독점력을 가짐. 그러한 서비스는 비영리적 차원에서 제공되어야 함.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 기술적 실현 가능성 회박에 따른 Unbound
- 소음저감서비스 (CPC 9405) - 자연경관보호 서비스 (CPC 9406) - 기타 환경보호 서비스 (CPC 9409)	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 기술적 실현 가능성 회박에 따른 Unbound

35. 스위스

부문/부부문	시장접근 제한	내국민 대우 제한	추가 양허	비고
A. 하수서비스 (CPC 9401)	1) 기술적 실현가능성 회 박에 따른 Unbound 2) 없음 3) 없음 4) Part I에 기재된 것 이외는 Unbound	1) 기술적 실현가능성 회 박에 따른 Unbound 2) 없음 3) 없음 4) Part I에 기재된 것 이외는 Unbound		#2 이 양허가 지방자치정부 나 현 또는 연 방정부, 또는 이들의 계약에 의한 공공 사 업 기능을 포 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B. 폐기물 처리 서비스 (CPC 9402)	1) 기술적 실현가능성 회 박에 따른 Unbound 2) 없음 3) 없음; 쓰레기 하치에 대 하 여 서 는 Unbound 4) 스위스에서 요구되는 상업적 주재와 Part I에 기재된 것 이외 는 Unbound	1) 기술적 실현가능성 회 박에 따른 Unbound 2) 없음 3) 없음 4) 스위스에서 요구되 는 상업적 주재와 Part I에 기재된 것 이외는 Unbound		
C. 위생과 기타 유사 서비스 (CPC 9403)	1) 기술적 실현가능성 회 박에 따른 Unbound 2) 없음 3) 없음 4) Part I에 기재된 사 항 이외는 Unbound	1) 기술적 실현가능성 회 박에 따른 Unbound 2) 없음 3) 없음 4) Part I에 기재된 사 항 이외는 Unbound		
D. 기타 환경서 비스 (CPC 9404 + CPC 9405 + CPC 9406 + CPC 9409의 일 부)	1) 기술적 실현가능성 회 박에 따른 Unbound 2) 없음 3) 없음 4) Part I에 기재된 사 항 이외는 Unbound	1) 기술적 실현가능성 회 박에 따른 Unbound 2) 없음 3) 없음 4) Part I에 기재된 사 항 이외는 Unbound		

36. 터어키

부문/부부문	시장접근 제한	내국민 대우 제한	추가 양허	비고
A. 하수서비스 (CPC 9401)	1) Unbound 2) 없음 3) 없음	1) Unbound 2) 없음 3) 없음		
B. 폐기물 처리 서비스 (CPC 9402)	4) 없음	4) 없음		
C. 위생과 기타 유사 서비스 (CPC 9403)				

37. UAE

부문/부부문	시장접근 제한	내국민 대우 제한	추가 양허	비고
A. 하수서비스 (CPC 9401)	1) 없음 2) 없음	1) 없음 2) 없음		
B. 폐기물 처리 서비스 (CPC 9402)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3) 없음: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을 제외하고.		
C. 위생과 기타 유사 서비스 (CPC 9403)	Unbound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D. 기타				

38. 태국

부문/부부문	시장접근 제한	내국민 대우 제한	추가 양허	비고
A. 하수시스템, 폐기물 처리, 유해폐기물관리, 대기오염과 소음관리, 위생과 기타 환경관리 서비스 (CPC 9401) A. 환경보호와 환경 오염물질 저감 서비스 (CPC 9401)	1) 없음 2) 없음 3) 없음: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 대하여.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사항에 따름.	1) 없음 2) 없음 3) 외국인 지분이 49%를 넘기지 않으면 제한 없음. 4) 없음		
A. 하수 서비스(산업폐수처리 서비스 포함) (CPC 9401) B. 폐기물 처리 서비스 (유해 폐기물 관리와 소각로 포함) (CPC 9402) C. 위생과 기타 유사 서비스 (CPC 9403)	1) Unbound 2) 없음 3) 없음: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 대하여.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사항에 따름.	1) Unbound 2) 없음 3) 외국인 지분이 49%를 넘기지 않으면 제한 없음. 4) 없음		
배출가스 정화 서비스 (산업 배출물질 저감 포함) (CPC 9404) 소음 저감 서비스 (CPC 9405) 자연 경관 보호 서비스 (CPC 9406) 기타 환경보호 서비스 (CPC 9409)	1) Unbound 2) 없음 3) 없음: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 대하여.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사항에 따름.	1) Unbound 2) 없음 3) 외국인 지분이 49%를 넘기지 않으면 제한 없음. 4) 없음		

39. 미국

부문/부부문	시장접근 제한	내국민 대우 제한	추가 양허	비고
A. 하수서비스 (민간산업에 의 한 계약)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 사항 이외는 Unbound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없음		#21 다음의 각 부부문에서, 미국의 양허는 다음의 활동으로 제한된다: 환경 정화, 복구, 신규 또는 현존 시스템의 수행과 설치; 환경질 통 제와 오염감소 서비스의 수행; 환 경관련 시스템과 장비의 유지보수 에 대한 미국의 양허에 아직 포함 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 현장 환경 조사, 평가, 감시; 포본 수집 서비스; 현장 또는 시설에서 의 훈련; 이들 영역과 관련된 자문. #22 운송과 관련된 이 제안에서, 그 무엇도 운송이나 관련된 최혜국 면세에 대한 현재 미국의 양허내용 을 바꾸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B. 폐기물 처리 서비스 (민간산 업에 의한 계약)	1) 없음 2) 없음	1) 없음 2) 없음		
C. 위생과 기타 유사 서비스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 사항 이외는 Unbound	3) 없음 4) 없음		
D. 기타(배출가 스 정화 서비스; 소음저감 서비 스; 자연경관보 호 서비스; 기 타 환경 서비스, n.e.c.)				

40. 대한민국

부문/부부문	시장접근 제한	내국민 대우 제한	추가 양허	비고
A. 하수서비스 하수도처리 서비스 (CPC 9401#13)	1) Unbound 2) 없음 3) 서비스 공급자의 수는 25로 제한된다. 4) 전분야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전분야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13 CPC 9401하의 산업 폐수의 수집, 처리 서비스만 해당.
B. 폐기물처리 서비스 산업폐 기물 처리서비 스 (CPC 9402#14)	1) Unbound 2) 없음 3) 상업적 주재의 설립은 경제성 필요 검토에 따른다. 폐기물 수집과 운송 서비스 공급자들은 그들에게 작업을 승인해주는 각 지방 환경부서의 관할하에서 사업을 수행한다. 4) 전분야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전분야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14 CPC 9402하의 산업폐기물의 수집, 수송, 처리서비스만 해당.
D. 기타 배출가스의 정 화와 소음 저감 서비스 (9404*,9405*)#15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전분야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전분야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15 CPC 9404와 9405하의 건설서비스외의 서비스
환경검사와 평 가 서비스 (CPC 9406*, 9409*)#16	1) 없음 2) 없음 3) 상업적 주재의 설립은 경제성 필요 검토에 따른다. 4) 전분야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전분야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16 CPC 9406과 9409하의 환경영향평가만 해당.

<부록 4> 주요국 수평 양허 현황

○ 자료 : WTO Service Database CD (1999)

○ 공급형태 : 1)국경간 공급, 2)해외소비, 3)상업적 주재, 4)자연인의 주재

○ 뉴질랜드

부문/부부문	시장접근 제한	내국민 대우 제한	추가 양허	비고
뉴질랜드-특별 양허스케줄#1 이 스케줄에 포함되는 모든 부문		3) 1973년의 해외투자법(Overseas Investment Act 1973)에 따라 발생된 1985년의 해외투자규제(Overseas Investment Regulations)에 따라, “외국인(overseas person)”에 의한 다음의 투자에 대해서는 해외투자위원회(Overseas Investment Commission) 승인이 필요하다: #2 a) 양도액 또는 회사의 자산 가치가 1천만 \$NZ를 초과하는 경우의 지분의 25% 이상 또는 회사의 투표권의 획득 또는 통제; b) 뉴질랜드에 설립하는 새로운 사업의 준비를 위한 전체 비용이 1천만 \$NZ를 초과하는 경우; c) 어떤 사업의 자산을 획득할 때, 이 자산에 대한 지불 또는 지불해야 할 금액이 1천만 \$NZ를 초과하는 경우; d) 지분의 발행 또는 분담시에 25% 지분 한계를 이미 넘어섰거나 그 발행의 결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와 지불 또는 지불해야 할 금액이 1천만 \$NZ를 초과하는 경우;		#1 첨부 A.1 참조 #2 첨부 A.2 참조

부문/ 부부문	시장접근 제한	내국민 대우 제한	추가 양허	비고
	4) Unbound. 다음의 영역에 해당하는 상업적 주재를 통하여 뉴질랜드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고용되어있는 자연인의 입국과 체류에 대한 것으로써 다음의 영역에 해당하는 조치들은 제외. A. 초기 체류에서부터 최고 3년의 기간동안, 사내 전임자로서 간부와 고급경영자; 조직의 간부급 고용인이며, 뉴질랜드에 이전하기 전까지 최소한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고용되어왔고, 뉴질랜드에서의 조직 운영의 전부 혹은 주요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간부 혹은 고급관리자로서, 최고 상부의 이사진으로부터 일반적 관리와 원칙적인 지시만을 받는 자; B. 사내전임자로서, 초기 체류부터 최대 12개월의 기간동안, 전문가 그리고/또는 선임자;	지방의 부지획득을 위해서는 투자의 화폐가치와 무관하게 OIC 승인이 필요하다. 일부 등급의 토지 구매에 대해서는 LSP(Land Settlement Promotion)와 LAA(Land Acquisition Act)에 따른 승인이 또한 필요하다. 현재 국가 소유로 되어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Unbound. 4) Unbound. 시장 접근 란에 언급된 자연인의 영역과 관련된 조치들은 제외.		

부문/ 부부문	시장접근 제한	내국민 대우 제한	추가 양허	비고
	회사내의 상층부에서 특정한 또는 전문가적인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가 그리고/또는 선임자인 자연인; 여기에는 단기 전문가 개발 프로젝트 같은 것도 포함된다; 또는 다른 회원국 영역에 운영 수뇌부를 둔, 그리고 뉴질랜드 내에는 다른 상업적 주제를 하고 있지 않은 서비스 공급자의 뉴질랜드 내에서의 상업적 주제의 설립; C. 노동시장 검토에 따른 사내전임자로서의 전문가. 최대 3년의 체류기간동안; 무역, 기술 또는 전문성을 갖춘 자연인 전문가로서 뉴질랜드 내의 조직운영 또는 주요 부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 지원자의 경력, 자격, 이 지위에 대한 적합성 등을 통하여 전문성이 평가된다. D. 12개월중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서, 사내전임자로서의 설치기술자(installers)와 서비스제공자(servicers): 설치기술자(installers)와 서비스제공자(servicers)는 공급 회사에 의한 기계, 장비류의 설치와 서비스가 구입조건인 경우, 전기한 이들의 설치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인이다. E. 사업상 방문자로서의 서비스 판매자. 한기간 또는 어떤 역년(曆年) 동안에 총 3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동안: 서비스 판매자는 그 서비스 공급자가 뉴질랜드에 상업적 주제를 하고 있던 그렇지			

부문/ 부부문	시장접근 제한	내국민 대우 제한	추가 양허	비고
	않던 간에 상관없이,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를 대표하는 자연인으로, 서비스 판매를 위한 협상 목적 또는 그 서비스 공급자를 대신해 서비스 판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뉴질랜드 입국을 시도하는 자이다. 이때 그들은 일반 대중에 대해서는 직접 판매를 하지는 않는다. 노동/경영 분쟁의 경우는 Unbound.	1),2), 유통이나 제조 사업에 대 3),4) 한 획득, 설립, 또는 운영 과 관련된 마오리(Maori) 인 또는 기관에 대하여 더욱 우호적인 대우를 부 여하는 중앙과 하위중앙 수준에서 현재와 미래의 조치에 대한 Unbound.		

○ 노르웨이

부문/부부문	시장접근 제한	내국민 대우 제한	추가 양허	비고
모든 부문: 취득을 위한 설립-일반 허가절차		3) 노르웨이에 등록된 회사가 투표권의 3분의 1이상을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가 행사하거나, 의장과 이사회 다수가 외국인일 때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그러한 대상에 대한 특정 리스 계약 시 허가(concession)가 필요하다. 노르웨이에 있는 외국인과 외국회사는 빌딩, 토지 등의 부동산을 구입할 때 그 자산의 용도와는 무관하게 허가를 필요로 한다. 10년 이상의 부동산 리스는 허가가 필요하다. 만일 이 자산이 공산품 제조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그 리스의 기간과 상관없이 허가가 요구된다. 3),4) 노르웨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주거, 2차적인 주택 그리고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사업활동을 위하여 부동산을 구입 또는 리스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개인별 취득 목적에 제한된다. 허가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은 경우에만 부여될 수 있다. 미래의 활동과 그 회사와 사회 전체적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기초하여 취득이 결정된다. 취득을 통제하는 법령은 전통적으로 관대히 적용되어져 왔다. 이는 1/3 이상의 외국인 소유-투표권 지분과 관련-인 경우를 포함하는 대다수의 경우에 일련의 조건들을 부여하고 있다. 조건들은 대략적으로 표준화가 되어있다.		

부문/부부문	시장접근 제한	내국민 대우 제한	추가 양허	비고
모든 부문: 지 사와 대리점의 처우	3) 제한없음	두 개의 조건이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대부분의 경우에 조건으로서 요구되고 있다; 이사회와 과반수와 이사회장은 노르웨이 국민이어야 하며, 노르웨이 기업과 외국 소유주와의 거래는 OECD 관련원칙 (arm's length price)'에 기초해야한다. 3) EEA 회원국의 법에 따라 형성되고, 중앙 부서 또는 EEA 회원국 내에 있는 주요 사업부서, 등록된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는 제3국 기업의 자회사에 대한 처우가 제3국 기업에 의해 EEA 회원국 내에 설립되는 지사나 대리점으로 확장될 수는 없다. 그들이 EEA 회원국 하나의 경제에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보이지 않는한, EEA 회원국의 법에 따라 형성되고, EEA 회원국의 영역내에 등록된 사무실만을 보유하고 있는 제3국 기업의 자회사에 대한 우호적인 처우는 더 약하게 적용된다.		
모든 부문: 법 적실체의 형태 - 유한책임회 사, 재단	3) 제한없음	3) 이사진, 법인 총회와 대표 위원회 등 합자회사의 관리 책임자의 최소한 재단의 절반이 노르웨이 거주자여야 하고 최근 2년간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산업 자원부 장관이 이들 규정의 면제를 해줄 수 있다.		

부문/부부문	시장접근 제한	내국민 대우 제한	추가 양허	비고
모든 부문: 보조금(보조금의 정의에 대한 논의는 아직 남아 있다. GATS의 Article XV에 따른 협상을 통해 결정될 것이다.	1) Unbound 2) Unbound 3) 완전약속 4) 완전약속	1) Unbound 2) Unbound 3) 보조금의 적격성은 노르웨이 에 설립된 법인으로 제한된다. 연구 개발 보조금에 대해서는 Unbound 4) 자연인에 대한 보조금은 노르 웨이 시민으로 제한된다.		
모든 부문: 개인의 이동	4) Unbound. 일시적 체류에 대해서는 예외, 다음의 A, B 영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경제적 수요 심사 요건 없음: A. 그들이 소속된 기업이 서비스 공급자라는 조건으 로, 사내 전임자로서의 관 리자, 이사, 전문가 등. 일 시적 입국, 체류와 2년의 기간으로 제한되는 업무. 이사/경영간부-법인의 고 위층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그 기관을 직접 운영하고 이사회 또는 이 기업의 주 주들 또는 이에 준하는 자 들로부터 일반적 감독 또 는 원칙적인 지시를 받는 자로 다음의 업무도 포함 된다.: - 기관 또는 부서 또는 그 기관의 부속기관 등을 관 리.	4) Unbound. 시장 접근 항목에 언급된 자연인의 범주에 관련 된 조치는 예외.		

부문/부부문	시장접근 제한	내국민 대우 제한	추가 양허	비고
	- 다른 감독자 또는 전문적 경영진에 대한 지휘와 감독. - 고용과 해고 또는 고용과 해고에 대한 추천 또는 기타 인사문제에 대한 권한 보유. 전문가-법인 내에 근무하면서 그 기관의 서비스, 연구 장비, 기술 또는 운영에 정통한 지식을 보유한 자. 그러한 지식을 평가하는데는 그 기관에 대한 특수한 지식뿐 아니라, 특정한 기술 지식을 필요로 하는 작업 또는 거래에 인가된 전문 면허를 포함한 높은 수준의 관련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도 고려된다. B. 사업상 방문자. 일시적 입국, 체류 그리고 3개월의 기간으로 한정된 업무. 사업상 방문자- a) 서비스 공급자의 대리인으로 서비스 공급자를 대신하여 서비스 판매를 위한 계약 또는 서비스 판매 협상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인 입국을 원하는 자. 이들 대리인들은 그 자신이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일반 대중에 대하여 직접적인 마케팅을 할 수 없다. b) 위에서 정의된, 법인 내의 고위직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노르웨이에 서비스 공급자의 상업적 주재를 설치하는데 책임이 있는 자로서,			

부문/부부문	시장접근 제한	내국민 대우 제한	추가 양허	비고
회계 검토 서비스 (CPC 86212) 사업 세금 계획과 자문 서비스 (CPC 86301) 광고 서비스 (CPC 871) 경영 자문 서비스 (CPC 865) 기술 검사와 분석서 비스(CPC 8676)	다음과 같은 경우. - 대리인이 서비스 공급 또는 직접적인 판매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 서비스 공급자가 다른 대리인, 지사 또는 자사를 노르웨이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Unbound. 노르웨이에 주재 상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에 고용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인의 일시적 체류는 제외. 경제적 수요 심사는 필요치 않고, 시장접근은 다음의 조건에 따른다: - 작업 허가를 얻어야 한다. 작업 허가는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고도로 숙련된 작업자로 고려되는 자연인에게 발행되어야 한다. 노르웨이 체류기간동안, 이 자연인은 그 서비스를 수행하는 수취인에게 고용되어야 한다. 이 자연인의 능력이 서비스 수요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만일 명백하게 그러한 노동력이 항구적으로 필요하다면, 또는 최근 6개월 사이에 동일한 서비스 수요자에게 동종의 서비스 수행을 위한 허가가 발행되었었다면, 허가는 교부되지 않는다.			

부문/부부문	시장접근 제한	내국민 대우 제한	추가 양허	비고
여행 대리인과 여행 운영서비스(CPC 7471)	- 일시적 입국과 체류는 12개월의 기간중 3개월, 또는 이보다 적은 계약기간 내로 제한된다. - 양허는 계약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 활동에만 관련된다. 이것이 그러한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 입국, 체류, 임금, 근무여건과 사회 보장 보험 등과 관련된 모든 다른 요건들이 지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 서비스는 부문란 아래에 명시된 하위부문중 하나 중에서 공급되어야 하며, 하위부문에 언급된 추가적인 제한에 한정된다. Unbound. 여행 매니저에 대해서는 제외(최소 10명의 그룹 여행에서 특정 지역의 가이드 활동이 아닌, 동반자 기능을 하는 사람)			

○ 아르헨티나

부문/부부문	시장접근 제한	내국민 대우 제한	추가 양허	비고
이 스케줄에 포함되는 모든 서비스	3) 토지의 획득: 국경지역은 Unbound.(국경지역 150km. 해안지역 50km) 4) Unbound.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예외: 선임 경영자: 기업이나 조직에서 부서와 부속기관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사람. 그들은 다른 관리자, 전문가 또는 경영스텝을 통제, 관리한다. 그들은 고용과 해고의 권한과 이를 권고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승진, 휴가와 같은 기타 인사권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매일 매일의 활동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감독하는 일이 전문적인 일이 아니라면, 그리고 서비스 공급을 위한 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는 고용인이 아니라면, 일선의 감독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사 : 조직의 경영을 주로 지시하는 조직에 속한 사람. 그들은 의사결정시에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최고 이사진, 대표이사 또는 주주의 지시와 감독만을 받는다. 그들은 조직의 서비스 공급에 관련된 직접적인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는다.	4) Unbound. 시장 접근 항목에서 언급된 개인의 범주와 관련된 조치에 대해서는 예외.		

부문/부부문	시장접근 제한	내국민 대우 제한	추가 양허	비고
	전문가 : 고도의 전문 지식과 그 조직의 서비스, 기술 또는 관리에 대한 독점적인 지식을 보유한 사람으로 기업 또는 조직에 소속된 자. 독립적인 전문가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 미국

부문/부부문	시장접근 제한	내국민 대우 제한	추가 양허	비고
본 스케줄에 의 한 모든 부문				
이 스케줄의 목적을 위해서 “미 합중국”은 미합중국의 50개 주와 the District of Columbia를 포함한다.				
모든부문: 일시 적 진입과 자연 인의 거주#1	4) Unbound. 아래의 리스트에 속하 는 사람으로서 국제적으로 머물 거나 일시적 거주자와 관련된 기준은 예외로한다. 서비스 판매자- 미국 영토내에 적을 두지 않은 사람 그리고 미 국내에 위치한 사업장으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는자로서, 서비스 의 판매를 목적으로 서비스 공급 자를 대변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a) 그러한 판매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직접 만들어지지 않는다. b) 서비스 판매자는 서비스를 공급 하는 일에 종사하지 않는다. 이 러한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의 진 입은 90일로 제한한다. 미국내에 설립된 지사, 분사, 보 조회사를 통해 미국내에 서비스 를 공급하는 기업에 종사하는 사 람, 입사 허락 직후 1년 미만의 기간동안 미국외의 기업체의 고 용자로 근무했었던 사람, 그리고 다음중 하나에 속하는 법인체 내의 재산 양수인, 경영인, 이사 진, 전문가	4) Unbound		# 1 “일시적 입 국”이란 미국 이 민법 하의 영구 히 거주를 설립 하려는 의도가 없고 시민권에 관련된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입국을 의미한 다. 미국내 입국 과 일시적 체류 와 관련된 미국 의 양허는 노사 분쟁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부문/부부문	시장접근 제한	내국민 대우 제한	추가 양허	비고
	a) 경영자 - 기업이나 조직에서 부서와 부속기관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사람. 그들은 다른 관리자, 전문가 또는 경영 스텝을 통제, 관리한다. 그들은 고용과 해고의 권한과 이를 권고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승진, 휴가와 같은 기타 인사권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매일 매일의 활동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감독하는 일이 전문적인 일이 아니라면, 그리고 서비스 공급을 위한 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는 고용인이 아니라면, 일선의 감독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b) 이사 - 조직운동을 원칙적으로 관리하고, 조직의 목표와 정책을 수립하는 조직내 사람, 의사결정시 폭넓은 권리를 행사하고 단지 일 반적인 감독을 받거나 또는 더 높은 간부, 임원진, 사업체의 주주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사람. 경영간부는 조직의 서비스 또는 실제 서비스공급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지는 않는다. c) 전문가- 지속적으로 고급수준의 지식을 소유하고 조직의 서비스, 연구장비, 기술 또는 전문경영 등에 독점적 지식을 소유한 사람.(전문가에는 면허를 소지한 전문인이 포함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부문/부부문	시장접근 제한	내국민 대우 제한	추가 양허	비고
	다음에 언급한 사람들에 대한 입국은 3년으로 제한하는데 총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년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사업체 설립업무에 종사하는 개인 - Section II에서 설명된 법적 실체에 의해 전년도에 즉각적으로 고용된 사람으로서,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자, 실질적으로 경영직이나 관리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a), b), c)와 그 안에 명명된 사람의 고용을 지원하여 Section II에 나열된 법적 실체를 설립할 목적으로 미국내 영토에 들어온 사람. 해당자는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려는 사업체를 위한 물리적 근거를 입증해야 한다. 패션모델 및 기타 특수 직업- (i)차별된 가치와 능력을 가진 패션모델, (ii) 다음조건이 요구되면서 특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a) 고도로 전문화된 지식의 이론적이고 실질적인 적용 (b) 미국내에서 일자리를 얻으려는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특정분야의 학사 학위 또는 그이상의 전문성(또는 동등한) 획득. 위의 (ii)에 해당하는 인증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의 능력을 소유해야 한다. (a) 만일 미국 각 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일정 자격이 요구될 때,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면허 보유 (b) 요구수준의 자격을 갖추거나 그와 동등한 경력, 그리고 특수성과 관련하여 신뢰할만한 특수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 안목. 이 부분에 언급된 사람의 입국은 3년으로 제한한다.			

부문/부부문	시장접근 제한	내국민 대우 제한	추가 양허	비고
	특정직업 외국인과 그들의 고용주들은 기존 고용주에 의해 입증된 모든 노동조건 적용요구에 따라야 한다. 그러한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a) 지불되는 임금이 더 큰 경우 1) 비슷한 능력과 경험을 가진 피고용인이 사업장에서 고용주에 의해 개인에게 지불되는 실질임금, 또는 2) 고용범주에서 직업상의 구분에 의한 일반적인 임금; b) 비슷한 조건으로 고용된 사람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근무조건; c) 대상 직업에 영향을 주는 사업장에서 진행되는 노사분쟁과정에서 파업, 대량해고, 폐쇄 등이 없다; d) 고용주는 이전 6개월 내에, 대상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근무자들을 휴직, 또는 해임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지원한 근무기간이 남은 90일 기간 또는 지원에 의한 지속된 비자 신청을 전후로 90일동안 휴직시키거나 해임할수 없다; e) 고용주는 해당 특수 직업에서 충분한 미국 노동자를 보유하고 주기적으로 신입직원을 뽑아야한다. f) 지원할때에 고용장소에서 피고용인 또는 그들의 대변인에게 고용주에 의한 통지가 주어진다.			

부문/부부문	시장접근 제한	내국민 대우 제한	추가 양허	비고
모든부문:토지 의 취득	3) 완전약속	3) 연방정부는 미국 시민이 소유할 수 있는 토지의 최초크기를 제한한다. (소급 제한은 미국의 어떤 주법하에 형성된 외국소유회사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연방정부기금으로 개간된 토지의 획득과 사막지역의 개간은 개별 미국시민으로 제약된다. 비 미국시민의 토지 소유는 제한된다: 켄터키(단지 개인에게만 제한이 적용, 미국내에 만들어진 외국인 소유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남부케롤라이나(개인, 외국인 소유회사 모두 적용) 다음 주는 주 내에 거주하지 않는 비-미국시민에 의한 토지의 구입이 제한된다: Oklahoma, Florida, and Wyoming. 미시시피에서는 비-미국시민의 경우 거주 지역토지자산에 대해 5에이커 이상, 또한 산업지역에 대해서는 320 에이커 이상 구매할 수 없다. 비 미국시민은 다음지역에서 공공토지를 판매하거나 또는 구매할 수 없다: Hawaii, Idaho, Mississippi, Montana, and Oregon		

부문/부부문	시장접근 제한	내국민 대우 제한	추가 양허	비고
모든부문: 조세 부과	1) 완전약속	1),2), 연방정부수준에서 직접세와 관련하여: 3) 피고용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내에 조직, 형성된 트러스트와 미국내에서 조직, 형성되지 않은 트러스트와 그들의 수익자 사이에 차등 조세 대우가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수익자들 또는 트러스트의 소득에 대한 조세에 영향을 미치고, 트러스트의 기여도에 따른 납세자의 조세경감 활용가능성, 조세 집행 요구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규정은 소득 공제, 임금 등을 결정하는 외국인 피고용자의 소득 계획에 대한 다양한 규정을 포함한다. 미국의 국민, 거주민 또는 기업이 차별적이거나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받을 경우, 외국인, 외국거주민, 또는 외국 기업에 세율의 증가 또는 연방소득세원의 확대가 적용될 수 있다.(국제 수익 코드 (International Revenue Code) 891 또는 896 항목에 제시된 것과 같이) 직접세 외에 다른 조세와 관련하여 연방정부수준에서: exercise tax는 미국의 거주자 또는 시민, 실질적인 국내설립체(회사, 제휴회사, 실물자산 또는 신탁 등)에 의해 외국의 실체(제휴회사, 부동산 또는 트러스트)에 대한 자산 이전과 연결되어 부과될 수 있다.		

부문/부부문	시장접근 제한	내국민 대우 제한	추가 양허	비고
모든부문: 보조금	2) 완전약속 3) 완전약속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 1) Unbound 2) Unbound 3) 완전약속	exercise tax는 사적으로 설립된 외국 사업체가 미국에서 얻은 총 투자소득상에 부과될 수 있다. 4) 완전약속 1) Unbound 2) Unbound 3) 연방국제개인투자기관 보험과 대출보증은 외국인과 외국기업 그리고 미국에서 설립한 외국인 운영 기업체에서는 활용할 수 없다. Trade and Development Agency 의 제정은 다음 대상으로 한정된다. I. 1) 미국내에 영구 거주할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락된 비-미국시민 또는 미국시민권자인 개인 2) 중요한 사업장이 미국내에 있는 개인. II. 개인소유의 상업적 법인 또는 미국의 법제하에서 합법적으로 조직되고 사업장이 미국내에 위치한 회사 또는 공동회사, (1) 이러한 회사들은 개인적인 수익의 50 퍼센트 이상이 미국시민 소유이어야 한다. (2) 미국에서 이전 3년동안 동종의 서비스업을 시행해오고, 3년 이상 미국내에 합법적으로 조직되었거나 설립된 회사이어야 한다. 또한 미국내에서 정규직의 반 이상을 미국시민을 고용해야하고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실제능력을 보유해야한다.		

부문/부부문	시장접근 제한	내국민 대우 제한	추가 양허	비고
		미국내에서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특혜 또는 권리를 허락하는데 있어서 연방, 주, 지역수준의 기준에 대해 Unbound이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연방의 중소기업 차관 관리부 -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시민에 의해 100퍼센트 소유된 기업 그리고 기업의 임원진이 모두 미국시민인 경우로 대출을 제약한다. Maine - Maine의 퇴역군인관련 중소기업 대출보증프로그램은 적합한 거주 전역군인에게 지역 대출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 대출시 이를 보증해준다. 적합한 사업은 독립적으로 소유되고 Maine에서 운영되며, 또한 지원자는 베트남 참전자이어야 한다. Maine의 중소기업 대출보증프로그램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Maine에 거주하는 적격자에게 민간 대출자에 의한 대출금의 보증을 제공한다. Maryland-메릴랜드의 중소기업발전금융청은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사업가에게 직접적인 대출을 제공한다. 지원자는 미국시민이어야 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사람들에 의해 70퍼센트 소유된 기업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메릴랜드의 중소기업 담보대출보증 프로그램 지원자는 미국 시민이어야 하고, 만일 법적실체라면, 그것은 메릴랜드 내에 주요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부문/부부문	시장접근 제한	내국민 대우 제한	추가 양허	비고
		Minnesota-사회개발기관(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s)들은 임원진의 60퍼센트 이상이 미네소타내 주 소지를 가지고 그곳에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만 허가를 받는데 적합하게 된다. Oregon-오리건 법은 경제개발 협회(EDC)가 오리건 외 벌목업자에 의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소유된 사업체에 대해 ODBF 대출 우선권을 주도록 요구한다. Pennsylvania- 소수민족기업개발청은 소수민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체에게 장기간 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지원자는 펜실베이니아에 거주하는 흑인, 알류트토착민, 에스키모, 스페인계, 또는 미국인디언들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개발 보조금에 대해서는 Unbound.		
	4) Unbound. 수평양허부분에서 언급한 사항은 제외	4) 완전약속		